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教育學博士 學位論文

淸朝 멸망 후 滿洲族의 부흥 노력과 좌절, 1911~1937

2022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鄭 世 蓮

清朝 멸망 후 滿洲族의 부흥 노력과 좌절, 1911-1937

指導教授 柳 鏞 泰

이 논문을 教育學博士 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22年 5月

서울대학교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鄭 世 蓮

鄭世蓮의 博士 學位論文을 인준함
2022年 8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國文抄錄

청조의 멸망 이후 그 지배층이었던 만주족은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재규정할 필요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청조 건립 이래 자신들이 중심이 된 “八旗 旗人”이라는 이름의 종족 연합을 형성하여 사회의 근간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혁명으로 정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한인팔기와 일부 몽골팔기가 기인에서 벗어나면서 종족 연합 역시 균열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청말 근대 민족개념의 도입과 한족 중심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해 만주족은 배척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민족의 하위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만주족은 자신들의 부흥을 위해 정치적 종족 연합에서 벗어나 공화국 국민으로서 변모를 모색하게 되었다. 아울러 만주족은 만연한 排滿 정서를 극복하고 한족에게 동화되었다는 주장에 맞서 독자적 민족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했다. 이는 다른 민족과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였다. 이는 신국가 체제 하에서 공화국민으로의 적응, 민족 독자성 확보, 독자적 정권 수립 추구의 활동으로 그 범주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현실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만주족은 국체가 바뀌는 혁명상황에서도 스스로 遜位詔書를 공포해 평화적 정권 교체의 형식을 취하면서 패배자 집단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이양의 적법성 아래 동등한 국민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그 준거는 평화적인 국체변환의 대가로 획득한 『優待條件』이었다. 무력 충돌로 시작된 혁명은 혁명 세력과 청조 모두 내전을 회피하여 중국의 강역을 보존하고자 하는 점에 동의하면서 여러 논란 끝에 선통제의 퇴위에 합의하고 평화적 국체변환에 성공하였다. 이제 만주족은 『우대조건』을 근거로 체

제 내에서 각자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청 황실은 소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민국 내에서 존재하면서 소정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고, 만주족 역시 적극적으로 국민으로 변모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군벌 정부는 만주족의 이탈을 막기 위해 『우대조건』을 가급적 준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를 통한 만주족의 정치참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지연시켰다. 만주족은 이에 맞서 각종 단체를 결성하고 국회 내 만주족 또는 東三省을 단위로 하는 독자적 의석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간혹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종족 연합인 기인 체제를 활용하여 한족, 몽골족과 연합하면서 공동의 이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풍옥상 집권 이후 『우대조건』이 수정되고 국민당 정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를 國體變換의 조건 불이행이자 상호 신뢰의 배반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으로 독자적 행보에 나서게 되었다.

아울러 혁명의 기치로서 내걸었던 五族共和에 대한 집권세력의 인식 역시 변모하였다. 북양정부의 경우 오족공화를 명분상이라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손문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은 장훈의 복벽 시도 실패 이후 완전히 오족공화에서 벗어나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만주족은 한족에게 동화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민족적 독자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였다. 이에 만주족 단체들은 오족공화를 근거로 삼아 몽골족, 장족과 같은 대우를 획득하고자 활동하였다. 그러나 혈연과 공동의 지역 기반, 곧 집단 거주지를 주된 기준의 하나로 삼는 근대 민족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북양정부도 국민정부도 만주족에 대하여 몽·장과 같은 수준의 독자적 참정단위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오족공화의 또다른 구성원인 회족이 집단 거주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종교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만주족은 필요시 회족과 연대하면서 각자의 독자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동시에 청조 이래 지니고 있던 무력집단으로서의 특성을 신국가의 군인 혹은 경찰 조직 내에서 발

휘함으로써 국가에서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안정된 생계수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청말 개혁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신식 학문과 생산 기술 등을 연마하여 자립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비록 이들이 현실적인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한족의 성씨로 개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문의 족보 편찬을 통해 만주족의 계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지속되었다.

한편 국체변환 이후 관외에서 독자적 정권 수립을 희망하는 움직임 역시 나타났다. 혁명 직후 종사당이 일본 및 몽골과의 협력 하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만주는 만주족의 만주"를 주장하였다. 동삼성 지방 정권은 민국 체제 하에 속해 있었으나 관내 다른 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 토착 만주족이 상대적으로 다수 지방 권력에 진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역시 한편으로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는 9.18 사변 이후 동삼성의 빠른 이탈과 만주국 합류로 이어졌다. 여기에 소조정의 出宮 이후 천진으로 이주한 부의 역시 『우대조건』 회복 요구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계속되는 무시와 방기에 분노하여 만주국으로 합류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구심점과 명분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동삼성은 종래부터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대결 구도 하에 만주족, 한족, 일본인, 조선인이 서로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경쟁하던 곳이었다. 청조 존속 기간 동안 부재지주로서 토지를 장악하지 못했던 만주족의 자리는 서서히 한족과 일본인 및 조선인이 대체해 갔다. 만주족은 토착 세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 나갔으나, 일본의 침략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만주족은 일본과 협력하여 건설된 새로운 국가에서 왕도주의를 실현하는 오족협화의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滿係'라는 이름으로 만주족과 한족이 뒤섞이면서 만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성은 공식적인 수치에서 은폐되었다. 여기에 계속되는 민족간 경쟁에서 밀려난 만주족은 삶의 기반을

상실하고 점차 그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만 이들의 부흥 노력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첫째, 만주족이 청조의 입관 이래 관내 주방에 분산 거주하면서 민족의 독자적 거주지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던 점, 둘째, 민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소조정이 일반 만주족과 유리되었다는 점, 셋째, 동삼성이 지니는 독자성을 활용하여 새롭게 근거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노력이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는 민족들과의 경쟁 끝에 번번이 좌절되었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진 청조 멸망 이후 만주족의 역량과 적극성을 황실, 기인과 일반 민인, 종사당의 세 부류로 나누어 부각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만주족이 혁명 이후, 특히 우대조건의 파기 이후 독자적 민족으로서 스스로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음을 규명하였다. 부흥노력은 위에서 진술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만주족의 적극적인 활동과 이를 지속시킨 잠재적 역량은 오히려 중화민국 북경정부와 국민당 정부 집권 세력이 만주족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그 독자성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었다.

주요어 : 만주족, 팔기, 퇴위조서, 우대조건, 만주국
학 번 : 2014-31192

目次

Ⅰ. 序論 ····· 1

Ⅱ. 淸帝 遜位와 『優待條件』의 성립 ····· 14
1. 혁명에 대한 청조의 대응과 내부 논의 ····· 15
2. 내전 회피와 淸帝의 遜位 ····· 25
3. 『優待條件』의 성립과 그 의미 ····· 37

Ⅲ. 『優待條件』에 대한 만주족의 기대와 대응 ····· 41
1. 만주 小朝廷의 성립과 실상 ····· 41
2. 관내 만주족의 정치·사회적 권익 추구 ····· 54
3. 동삼성에서의 기득권과 정체성 계승 노력 ····· 78

Ⅳ. 민국 초 만주족의 부흥 구상과 시도 ····· 92
1. 경제 기반의 확보와 유지 ····· 92
2. 사회·문화적 일체감 계승을 위한 노력 ····· 117
3. 종사당의 독자정권 수립 도모 ····· 126

Ⅴ. 만주국 내의 민족 경쟁과 만주족의 곤경 ····· 141
1. 동삼성 확보를 위한 중일간 대립 ····· 142
2. 만주족 국가 부흥의 기대와 굴절 ····· 149
3. 만주족의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 난항 ····· 161

Ⅵ. 結論 ····· 177

참고문헌 ····· 182

Abstract ····· 200

Ⅰ. 序論

1621년 누르하치는 몽골인 齋薩에게 “나는 만주족이고 너는 몽골인이다(bi manju gurun jaisai si monggo gurun)”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소속을 명시하였다.[1] 이는 당시 “만주”가 지명 이외에 특정 부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635년 이후 여진족의 대외적 세력 확장 과정에서 홍타이지의 滿洲部는 가장 강력하고 대표성이 있는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아울러 주변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한인, 조선인 등을 八旗에 포함시켜 자신의 구성원으로 만들었다. 특히 이시기 차하르부(察哈爾)가 복속하여 팔기 중 몽골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팔기의 종족 구성원이 다양화된 것이었다. 따라서 홍타이지는 “우리에게 원래 만주, 하다, 여허, 후이파 등 구룬의 명칭이 있었다. … 이후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만주라는 본래 명칭으로 불러라. 주션이라 부르는 자는 죄를 묻겠다”[2]라고 ‘滿洲’를 확장된 범여진족 공동체의 공식 명칭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주도세력으로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드러내었다. 팔기제도에서도 만주팔기를 가장 우위에 두면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구성원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혈연과 출신 지역에 기반한 종족에 기반한 정체성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팔기제도 하에서 입관 전 팔기에 入旗한 자들은 모두 구만주로 규정되었고 입관 후 팔기에 입기한 자들은 신만주로 분류되었다. 이제 팔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만주족 공동체는 만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여진족과 구만주족, 신만주족으로 그 편제가 변화되었다. 이들은 “旗人”[3]으로 불리며 일반 “民人”

---

1) 趙誌強, 「滿洲族稱源自部落名稱——基於「滿文原檔」的考察」, 『紀念鄭天挺先生誕辰120周年暨第五屆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會議』, 南開大學, 2019年9月, 134쪽.

2) 關嘉祿, 佟永功 譯, 『天聰九年檔』(天聰9年(1635) 十月庚寅), 天津古籍出版社, 1987, 129쪽.

3) 기인은 팔기에 소속된 사람들로, 만주족=기인은 성립하지만 기인=만주족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팔기는 퉁구스계 만주인, 몽골인, 한인 외에 퉁구스계, 조선인, 무슬림, 러시아인 등 여러 에스닉 그룹이 편입된 군정·민정 일체의 사회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팔기체제 하에서

과 구별되었으며, 법률, 정치, 경제 등 다방면으로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중 구만주로 분류되는 집단은 과거 여진 출신이나 滿洲旗 소속에 한정하지 않고 입기 시기와 입기 후 공적에 따라 구분되었다. 따라서 입관 전 팔기에 소속된 다양한 종족 역시 넓은 의미의 "구만주족"에 포함되었다. 만주팔기 이외의 구만주족은 스스로 족보에 "구만주(佛滿洲, fe manju)"을 명기함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기인에 바탕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혈연보다 구성원의 소속감과 이해관계가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만주족은 종래의 종족성에 기반한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그 외연이 확장되면서 혈연보다는 정치적 연합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는 신만주가 기인 체제에서 배제되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청조의 성세가 지속되면서 만주팔기의 빈곤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1742년 건륭제가 팔기한군의 出旗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수의 신만주족을 만주족 공동체에서 배제하였지만, 구만주족은 '황제와 함께 입관한 자(從龍入關者)'로 구분하여 출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제 "기인"으로 불리던 만주족 공동체의 외연은 만주팔기와 구만주족으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정치적 공동체에 기반한 민족 의식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말 서구의 "민족"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동시에 반만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만주족 공동체에 대한 대외적 인식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당시 梁啓超는 1903년 블룬츨리의 정의에 따라 8대 특질(동일한 거주지, 혈통, 신체형상, 언어, 문자, 종교, 풍속, 생계)을 갖춘 집단이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他族과 구별하여 고유의 성질을 갖는 하나의 특수한 단체를 조성하였

는 민족보다 기/민의 소속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청말부터 북양정부 시기에는 만주족을 지칭하는 다양한 호칭이 등장한다. '滿族'은 만주족이 오족 중 하나임을 의식하고 드러내어야 할 때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旗人', '旗族'이 주로 쓰였다. 기족은 청말부터 북양정부시기에만 주로 사용된 용어로, 팔기에 의거하여 팔기만주·몽고·한군의 융합과 동족의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으나, 북양정부 이후 팔기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점차 소멸되었다. 본고는 '만주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만주기인, 몽골기인, 한군기인'처럼 민족명과 기인을 병기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을 때 이를 민족이라 한다고 하였다. 혁명파의 汪精衛는 1905년 민족이란 6대 특질(동일한 혈통, 언어문자, 거주지, 습관, 종교, 정신체질)을 갖춘 지속적인 인류단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논지에 개념적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현실의 "만주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정반대였다. 양계초는 8대 특질의 기준에 따라 보아도 만주족은 이미 한족에 동화되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혈통은 다르나 문화가 같아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8대 특질 중 거주지를 혈통보다 우선하면서 容滿君主立憲論을 펼쳤다. 반면 왕정위는 위의 6대 특질 중 혈통을 중시하여 만주족은 분명히 다른 민족이라고 구분하면서 排滿共和革命論을 주장하였다.[4] 이들은 이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만주족" 속에서 종족으로서의 "만주족"과 "한족"을 구분하여 만주족을 동화된 존재 또는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은 "五族共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지칭되면서 "滿族"이라는 독자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 독자성이 "민족"으로서의 특질에 기반하는지 혹은 혈통 위주의 "종족"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주족 외부의 시선이 엇갈렸다. 북양정부 이후 집권세력은 정치적인 이유로 대체적으로 만주족을 한인과 동화된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 민족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혁명세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중화민족" 혹은 "대민족" 내 하나의 구성원으로 간주하면서 그 민족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인은 만주족에 대해 한인과 다른 혈통과 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들어 이질적 존재로 구별하여 배척하고 차별하였다. 공동체 외부에서의 "만주족"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만주족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시 한번 그 성격을 규정하고 체제를 재편할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만주족을 근대 민족으로 지칭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 중국에서 통용되었던 근대 민족 개념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전술한 블룬츨리의 이론, 양계초, 장병

4) 유용태,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동북아역사논총』 23호, 2009, 42-43쪽.

린의 시각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인 1913년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에서 민족에 대해 언어, 지역,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로 표현되는 심리적 기질 등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발생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공동체[5]로 특정하였다. 손문 역시 혁명 이후 1924년 민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혈통, 생활, 언어, 종교, 풍속습관 등 5대 특질[6]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볼 때 동시기 만주족에게 근대 민족에 해당하는 성격이 뚜렷하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당시 이들의 현실을 요약하자면, "國語騎射"로 대표되는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는 청조의 성세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약화되어 갔다. 동삼성과 경사 일대에 다수의 만주팔기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주방팔기 체제 하에서 관내에 분산 거주하였다. 팔기병에 소속되지 못한 일반 기인의 경제적 기반 역시 약화되었다. 이에 청조는 平滿漢畛域을 통해 만한간의 통혼을 허용하거나 만주팔기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한인과의 구분과 경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배만 풍조가 만연하였고, 신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구만주족에 소속된 한인들이 자신의 본래 성씨와 민적을 회복하면서 이탈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종래 일부 학계의 시각처럼 만주족이 입관 이래 지속적인 漢化를 통해 인하여 그 민족적 특질과 정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 앤서니 스미스의 근대 민족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미스는 민족의 형성 시기와 관련하여 근대 민족(nation) 이전에 그 역사적 토대로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족류(ethnies, ethnic communities)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7] 즉, 민족은 단순하게 역사의 어느 특정 시기에 출현하는 것이

5) 이오씨프 쓰딸린, 신재길 역, 「맑스주의와 민족문제(상)」, 『정세와 노동』 130, 2017, 90, 94쪽.

6) 孫文, 「三民主義 : 民族主義」(1924), 『孫中山全集』 第九卷, 1986, 中華書局, 185~188쪽.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어느 한 사회 집단이 민족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민족을 “구성원들이 공유된 기억, 상징, 신화, 전통, 가치를 배양하고 역사적 영토나 고토에 거주하고 거기에 애착을 느끼며, 독특한 공공 문화를 창조 및 전파하고, 고유된 관습과 표준화된 법률을 준수하는, 이름과 자기인식을 지닌 인간공동체”[8]라고 정의하면서, 이들을 역사·사회적 집단이면서 동시에 운명의 공동체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근대 민족 개념을 파악할 때 ‘객관적 기준-주관적 의지’의 문제 역시 고려의 대상이다. 상술한 혁명 시기에 통용된 근대 민족의 특질은 전근대시기부터 점차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 수준은 근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요소들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근대민족은 전근대민족으로부터 발전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양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9] 만주족 역시 이미 청조라는 국가 건설을 통해 외면적인 민족 공동체를 성립시켰으며, 그 민족성이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잠시 약화되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앤서니 스미스의 민족론에 근거하여, 청대에 민족으로서 존재하였던 만주족이 신해혁명 이후 약화된 자신들의 민족성을 회복하고 시대에 맞게 변용하여 근대적 의미의 민족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했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권 계층이었던 만주족이 혁명 이후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소멸되지 않고 무사히 재건되기 위해서는 우선 만주팔기라는 혈연 및 구만주족이라는 소속감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조직하되, 차별을 피하기 위해 독자성과 특권의식을 너무 내세우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했을 것이다. 오족공화

---

7) 스미스는 족류와 민족의 개념정의를 구분하면서 족류를 ‘이름이 있는 주민의 한 단위로, 공동의 조상 신화와 공유되는 역사적 기억, 공유되는 문화의 요소들을 가지며, 역사적 영토와 결합되어 있고, 최소 그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유대의 수단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이는 상술한 민족의 개념과 이름붙이기, 자기 인식, 공유된 상징, 신화, 가치, 전통의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겹친다. 그러나 민족 개념 정의의 초점은 족류공동체에 비해 좀더 법률적·영토적·정치적 차원으로 이동한다고 그 차이를 설명하였다. 앤서니 스미스 著, 김인중 譯, 『족류-상징주의와 민족주의』, 아카넷, 2016, 75쪽.

8) 앤서니 스미스, 위의 책, 74쪽.

9) 유용태, 『환호 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2006, 399쪽.

의 구성원이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의 대가로 약속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 또한 존재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집단 거주지를 새롭게 개척하거나 기존에 만주족이 다수 거주하던 경사지역 혹은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종래의 거주권과 경제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언론과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유지하여야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만주족의 "민족 정체성" 재건 시도라고 간주하여, 신해혁명 이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만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그것이 어떠한 연유를 거쳐 좌절되었는지를 통시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만주족이 민국정부 내에서 "오족공화"의 주체로서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핀다. 아울러 이중 동삼성 만주족들이 관내와는 달리 기존 팔기체제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운영에 참여하였던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종사당을 중심으로 한 만몽독립운동은 동삼성에서 만주족 중심의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조 이래 보유하였던 자신들의 경제적·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였으나 신정부는 이를 억제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서 만주족이 대거 몰락하면서 민족성을 상실하여 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만주족이 "滿族"으로서 인정받았던 이유를 좀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정체성 유지와 독자적 행보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좌절한 데에는 만주족의 약화라는 내부적 요인보다는 중국 정부의 견제와 제국주의 일본의 진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신해혁명 당시 혁명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만주족의 기반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중국의 집권세력은 〈關於大淸皇帝辭位後優待之條件(이하 '우대조건')〉 등 정권교체 당시의 약속을 무시한 채

만주족에 대한 배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만주족은 “만주족의 국가”를 그 수립 명분으로 내세운 만주국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합류하였다. 오족공화와 유사한 “五族協和”의 정치이념 역시 만주족 등 소속 구성원의 주체성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듯한 의미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던 만주국 내에서 만주족이 입지를 확보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차별과 배제는 만주국 내에서 일상이 되었다. 일본은 “만주족의 국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만주족을 견제하고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조선인을 상대적으로 중용하고 만주족을 실권에서 배제하였다. 이에 만주족은 “滿洲國人” 속 ‘滿係’라는 이름으로 점차 매몰되어 갔던 것이다. 그러나 “배제” 혹은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실질적 힘과 잠재적 힘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따라서 만주족이 보유하고 있던 기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민족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체제적 요인을 간과하고 다분히 만주족의 무능 또는 무기력함에만 초점을 두어 이들의 몰락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는 당시 복잡한 국제관계와 단시간에 발생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특정한 주제를 시기별로 분절하여 분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는 연구의 심화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통시적인 시각에서 만주족의 대처와 변화를 조망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동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만주족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활동한 동아시아 민족들을 연관성이 결여된 개별 주체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신청사의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신청사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을 정복한 집단이 궁극적으로 ‘한화’되었다는 이론을 반박하고, 대신 비한족 정복왕조로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밝힘과 동시에 청 제국의 통치가 한족 왕조였던 명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려 하였다.

만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신청사 연구자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나, 한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만주족의 정체성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기존의 관점이 본래부터 분별 가능한 만주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족에 동화되거나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면, 신청사 연구자들은 만주족은 왕조가 흘러가면서 실질적으로 생겨난 것이었고, 실제 한족과 구분되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본 것이다. 대표적으로 마크 엘리엇(Mark C. Elliot)은 청조에 대해 만주족의 민족 주권을 유지한 진정한 민족주의 제국이었다고 간주하였다.[10] 반면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Pamela Kyle Crossley)는 만주족의 문화나 정체성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았고, 만주족의 민족 집단은 자신들의 국가가 성장하면서 그 정체성을 구성했다고 보았다.[11] 에드워드 로즈는 청대 말기 특히 20세기 신해혁명 전후 시기의 만주족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만주족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물론 문화적 차별성도 계속 유지했다고 주장하였다.[12] 샤오 단(Shao Dan)은 만주의 지역성 변화가 만주족의 민족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13]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의 현실 적응 과정에 대해서는 윤욱이 청말민초 滿洲親貴의 개혁논의를 정리하고, 혁명 이후 중국 동삼성에 소재한 吉林省 琿春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사회적 개혁, 토지소유와 개발을 둘러싼 만주족의 기득권 수호와 발전 노력 및 만주국 수립 이후 민족 갈등과 만주족의 약화 과정 등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명하고 있다.[14] 기존 훈춘의 만

---

10) Mark C. Ellio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이훈·김선민 역, 만주족의 청제국, 서울: 푸른역사, 2009).

11) Pamela Kyle Crossley, *The Manchus*, Wiley-Blckwell, 2002 ;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12) Edward J. M. Rhoads, *Manchus and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2000.

13) Shao Dan, *Remote Homeland, Recovered Borderland: Manchus, Manchoukuo, and Manchuria, 1907-1985*,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1.

14) 윤욱, 「젊은 滿洲親貴 集團의 정치적 지향과 좌절, 1900~1911」, 『동양사학연구』 118,

주족 공동체가 신해혁명 이후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전하고 민족의식을 계승하여 갔는가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본고에서 지향하는 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다만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훈춘 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어 동삼성의 전반적 상황을 비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국외에서는 대만학자 林志宏이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최근 만주국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15] 혁명 이후 만주족의 동향에 대해 시기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윤욱의 연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 성격을 "淸遺民"으로 규정하여 본고에서 목표로 하는 혁명 이후 만주족의 새로운 체제로의 능동적 적응 노력의 규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청조 멸망 이후 집권 세력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16] 이에 대응하는 만주족의 활동에 대해서는 만주족 출신 중국학자인 金啓孮의 저술[17]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중국학자 王慶祥이 만주국 시기 溥儀를 비롯한 만주족 황실인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8]

2012 ;「滿洲族의 孤城 琿春, 1911~1931: 琿春 滿洲族 엘리트의 鄕村支配의 지속과 변화」,『東洋史學硏究』132, 2015 ;「"二等公民" 擡頭 下의 琿春」,『동양사학연구』136, 2016 ;「中華民國 國民과 滿洲族 사이」,『역사학보』 234, 2017 ;「琿春 旗地의 소유와 운영, 1879-1931」,『동방학지』184, 2018 ;「琿春 滿洲族의 沒落, 1931~1949 - 朝鮮族의 起를 兼論 -」,『역사와 세계』59, 2019.

15) 林志宏,『民國乃敵國也 : 政治文化轉型下的淸遺民』, 台北 :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2009 ;〈王道樂土 - 淸遺民的情感抵制和參與"滿洲國"〉,『新史學』第18卷第3期, 2007 ;〈北伐期間地方社會的革命政治化〉,『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第36期, 2011 ;〈地方分權與「自治」——滿洲國的建立及日本支配〉, 黃自進、潘光哲主編,『近代中日關係史新論』(新北市 : 稻鄉出版社, 2017).

16) 이병인,「國民黨政權의 公民觀과 '民族傳統'」,『중국근현대사연구』35, 2007 ; 黃西武,「南京國民政府時期少數民族參加國家代議機構問題硏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 Shao Dan, "5. Historicizing the Manchus, Deterritorializing Manchuria", *Remote Homeland, Recovered Borderland*, University Hawaii Press, 2011.

17) 金啓孮,『金啓孮談北京的滿族』, 北京:中華書局, 2009 ;『梅圓集:金啓孮先生八十五周歲自選集』, 哈爾濱:哈爾濱出版社, 2003 ; 張士尊,「淸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 : 1644-1911」.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 嚴昌洪 外,「論民國時期的民族政策」『蘭州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40券 第1期, 2012.

18) 王慶祥,『毛澤東周恩來與溥儀』, 北京: 人民出版社, 1996 ;『溥儀與僞滿洲國』, 北京: 人民出版社, 2015 ;「溥儀與九一八事變」,『社會科學戰線』1996年 2期 ;「僞滿時期日僞的邊境政策」,『社

청말민초 동삼성의 建省 및 정치·경제적 변화 및 만주족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유지원, 구범진, 이지영 등이, 중국에서는 常書紅, 刁書仁 등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9] 이들의 연구는 청말 청조의 개혁이 서태후 사후 여러 이유로 지연되다 끝내 실패하였으며 청조의 근대국가화 및 만주족의 근대 국민으로의 변모는 사실상 어려웠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조의 멸망 이후 만주족이 기존의 특권층에서 벗어나 군인, 혹은 경찰 조직으로서 능동적으로 공화국 국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 점도 확인된다.[20] 따라서 청조의 제도적 개혁 실패와 만주족의 움직임을 별도의 분석 대상으로 상정하여 그 주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삼성 만주족의 교육에 관한 연구는 만주족을 중심에 두고 진행된 연구보다는 민국시기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변천 과정에서 동삼성 만주족 문제를 소략하게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1] 「盛京時報」 등을 중심으로 한 언론활동

會科學戰線』2004년 2기.

19) 유지원, 「淸代 吉林烏拉의 형성과 한족 移住에 따른 변화, 『동북아역사논총』 37호, 2012 ; 구범진, 「淸代 '滿洲'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동북아역사논총』 14호, 2006; 이지영, 「淸末 新政期(1907~1911) 吉林省의 旗制 개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常書紅, 『辛亥革命前後的滿族研究 : 以滿漢關系爲中心』,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 刁書仁, 『東北旗地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1994 ; 張士尊, 「淸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 : 1644-1911」.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 潘先林, 「略論南京臨時政府處理民族問題的政策及設想.」 『中國藏學』, 2008年 04期 ; 李國棟, 「民國時期的民族問題與民國政府的民族政策研究」, 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20) 김택경, 「民國時期 步軍統領衙門의 존속과 폐지 -북경 경찰기구 통합의 관점에서-」, 『중국사연구』 119, 2019 ; 「北洋政府시기 北京 경찰의 인원팽창과 그 함의」, 『동양사학연구』 119, 2019 ; 阿部由美子, 「辛亥革命後の淸室優待條件體制の成立と崩壞 : 20世紀前半の華北‧滿洲地域における滿洲族研究への新たな視座」, 『News letter』, No. 26, 2014.

21) 李勤璞, 「《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的翻譯頒行(上)」, 『滿語研究』 2014年 01期 ; 「《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的翻譯頒行(下)」, 『滿語研究』 2014年 02期 ; 吳智嘉, 「淸代滿文教學體制的變遷及滿文教科本的發展」, 『滿語研究』 2018年 01期 ; 林士鉉, 「《滿蒙漢合璧教科書》與淸末蒙古教育改革初探」, 『輔仁歷史學報』 32期, 2014 ; 馬佳樂, 「論民國時期東北小學教育的發展與特點」, 『現代交際』 2018年07期 ; 劉磊李慧娟, 「九一八事變前東北商人辦學活動研究綜述」, 『長春師範大學學報』, 2019年 01期 ; 齊紅深, 東北地方教育史 , 遼寧大學出版社, 1991; 金啓宗, 「解放前北京的滿族群衆團體和請願運動」 『辛亥革命後的北京滿族』, 北京出版社, 2001 ; 嚴昌洪 外, 「論民國時期的民族政策」, 『蘭州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40券 第1期, 2012 ; 黃倚蘭, 「近代廣東公共教育資源配置的曆史地理學分析(1840-1938年)」, 西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 任蓉蓉, 「僞滿洲國文教部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에 관한 연구[22]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문학계의 흐름 파악, 일본의 만주 진출 동향을 확인하는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동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족의 동향 및 이들이 형성한 여론에 대한 기사가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혁명 이후, 특히 일본의 동삼성 진출 이후 만주족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의 변동을 중심으로 허혜윤, 김희신, ㄱ書仁, 趙令志, 衣保中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말 이래 유민을 소집해 개간을 실시한 후 대량의 旗地가 民地로 轉化되었으며, 民人 가운데 대토지를 축적한 신흥부호가 성장한 반면 만주족의 旗戶는 몰락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23] 그러나 상술한 윤욱의 연구나 만주국 수립 과정에 참여한 상층 만주족처럼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한 경우도 김희신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24] 아울러 동삼성 개발을 둘러싼 민족간 갈등을 주제로 한 한국사 연구자들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각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 연구가 가지는 시각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25]

---

22) 趙偉·孫太雨, 「『盛京時報』教育新聞的文本解讀與價值分析」, 『甘肅理論學刊』 2015年 03期 ; 聞雨竹, 「清末民初東北地區報刊業研究──以『盛京時報』爲例」, 『蘭台世界』 2018年 06期 ; 張春曉, 「『盛京時報』新年獻詞對"國家"觀念的消解與構建」, 『傳播與版權』 2017年 09期 ; 舒暢王國棟, 「民國時期吉林禁煙與地方執政──『盛京時報』視野下的考察」,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0年 3期 ; 王翠榮, 「20世紀20年代東北新聞界對日本新聞侵略的抵制──以『東三省民報』與『盛京時報』筆戰爲中心」, 『江西社會科學』 2019年 11期 ; 王宇昕, 「日本殖民政策與"滿洲共同體"認同的制造──基於『盛京時報』的考察」,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2019年 1期.

23) 허혜윤, 「淸代 동삼성의 旗地 매매와 분쟁」, 『中央史論』 第37輯, 2013 ; 김희신, 「민국초기 토지소유권 증명과 驗契」, 『중국근현대사연구』 60, 2013 ; ㄱ書仁, 『東北旗地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1990 ; 趙令志, 『淸前期八旗土地制度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01 ; 衣保中, 『東北農業近代化研究』, 吉林: 吉林文史出版社, 1990 ; 江夏由樹, 土地利權をめぐる中國‧日本の官民關係-舊奉天の皇産をめぐって-. アジア經濟」38-1, 1997 ; Yoshiki Enatsu, "Chapter 2, Fengtian's Land System at the End of the Qing" in *Banner Legacy: The Rise of the Fengtian Local Elite at the End of the Qing*,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2004.

24) 김희신, 「만주국 수립 이전 봉천의 상업과 중국 상인의 동향」, 『중국근현대사연구』 60, 2013 ; 「중국 동북지역의 상업자본과 상점 네트워크 ― 만주국 수립이전 봉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근현대사연구』 62, 2014.

25) 손춘일, 『"滿洲國"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硏究』, 백산자료원, 1999 ; 정안기, 「1930년

만주국 건국 이후 만주족을 비롯한 동아시아 제민족의 연구에서는 한석정이 만주국 건국 과정 및 운영체제 전반과 사회상에 대한 연구를 선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26] 다만 연구의 중심이 정치사회적 측면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다. 만주국 건국 이후 북만주 지역의 개간을 둘러싼 조선인·한족·만주족의 동향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자 중 윤휘탁을 대표적 연구자로 들 수 있다.[27] 만주국의 건국이념 정립과 관료양성 과정에서 드러난 만주족과 관동군, 일본 본토 엘리트층의 시각 차이에 대한 연구[28], 만주국 통치 체제의 구성과 민족간 갈등에 대한 연구 역시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9] 한편 최근 기존의 "漢奸"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국 연구에서 벗어나, 만주국 내에서의 만주족의 역할과 경제적 측면에서 만주국 시기 동삼성의 개발을 조망하고자 하는 시각의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30]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만주족은 중국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데 필수

대 재만조선인, 이등국민론의 비판적 성찰: 교육정치사의 관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 2015 ; 金美花, 「滿州國崩壞後の延辺朝鮮族自治州の土地改革--和龍県のA村の聞き取り調査を中心に」, 『東アジア研究』 36. 2003 ; 「滿洲國期間島における朝鮮人の社會と教育の展開--延吉県楊城村の事例を中心に(1932-1936)」, 『東アジア研究』 41. 2005.

26)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1999(2007 개정) ; — ,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2008.

27) 윤휘탁, 『日帝下 滿洲國 硏究 : 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一潮閣, 1996 ; 『滿洲國 :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013.

28) 안지나,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연구』 18, 2014 ; 손승회, 「다치바나 시라키(橘樸: 1881~1945)와 滿洲國 建國 구상」, 『동아인문학』 28, 2014 ; 강해수, 「연구논문 01 : "도의"에서 "광의 왕도"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와 다치바나 시라키(橘樸)의 "왕도" 담론-」, 『일본공간』 13, 2013 ; 高承龍, 「僞滿洲國民族政策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 範立君, 「近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860-1931),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 劉峰, 「日本在僞滿統治中的"自治派"與"統制派"」, 『世界曆史』 2020年 01期.

29) 야마무로 신이치,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 2009 ; 景壯, 「僞滿洲國的勞動統制」, 『通化師範學院學報』 2019年 03期 ; 周藤吉之, 『清代滿洲土地政策の研究』, 東京: 河出書房, 1944 ; 広川佐保, 『蒙地奉上:「滿州國」の土地政策』, 東京: 汲古書院, 2005 ; 阿部由美子, 「辛亥革命後の清室優待條件體制の成立と崩壞 : 20世紀前半の華北‧滿洲地域における滿洲族研究への新たな視座」, 『News letter』, No. 26, 2014 ; 楊紅, 「滿州族の経済生活 : 愛新覚羅王族の後裔たる村の事例研究から」, 『名古屋大學人文科學研究』 Vol. 36, 2007 ; 江夏由樹, 「土地利權をめぐる中國‧日本の官民關係 ー 舊奉天の皇産をめぐって‧ー」, 『アジア經濟』38.1, 1997.

30) 高承龍, 「僞滿洲國民族政策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 範立君, 「近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860-1931)」,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적인 실마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의 만주족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다. 만주족은 혁명파에게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고, 중화민국 수립 이후 북양정부에게는 오족공화, 만주국에 있어서는 오족협화의 구성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해혁명 이후 관성개명과 일상 언어로서의 만주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한족과 구별이 어려웠다. 이는 다른 민족에 비해 연구가 희소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근현대 질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만주족의 제반 활동은 단순히 기득권을 상실해 가면서 무력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고 변화하여 주체적인 존재로 생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모두 당시 동아시아의 주요한 역사적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만주족을 둘러싼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족공화, 오족협화 등의 개념이 어떤 연유에서 출현하였는지의 문제를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만주족이 만주국의 일원으로 합류하기까지의 과정은 혁명사관이 만들어낸 '부패하고 무능하여 타도되어야 마땅했던 존재들', 혹은 중화민족주의 사관의 '한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재조명하여 민족사 전개의 동태적 과정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근현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주족의 정체성 재건 시도와 생존 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淸帝 遜位와 『優待條件』의 성립

만주 황실과 지식인들은 청조 멸망 직전까지 전개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정치·사회적 변화를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침잠하지는 않았다. 1908년 이후 청조는 諮議局과 資政院을 발족하여 헌정 실시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메이지 헌법의 영향을 받은 「欽定憲法大綱」을 공포하여 "君上大權"을 기조로 하는 전제적 입헌군주제로의 개혁을 명문화하였다. 입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군주전제의 강화에 있었으나 皇權의 제한, 公民의 기본권 확인, 헌정 체제 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 三權分立의 정권 조직 등의 내용 역시 함께 수록되었다.[1] 한편 자희태후 사망 이후 집권한 젊은 만주친귀 세력은 대개 지방자치를 기초로 한 점진적인 입헌을 선호했다.[2]

정치적 제도 변화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만주족은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과 융합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恒鈞 등이 창간한 『大同報』에 나타난 "五族共和", "五族合一" 등의 구호와, 『北京大同日報』의 '만·한 인민이 평등하고 만·한·몽·회·장이 합하여 하나의 대국민을 이룬다'는 주장에서 파악된다. 또 민족 문제와 입헌정치라는 의제를 결합하여, 민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한 불평등의 뿌리가 되는 반드시 정치를 개혁하고 군주입헌 정체를 실행하며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 이에 따라 만주족은 각종 단체를 수립하여 정치적 입지확보와 권익 보호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만주족 내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창기의 이후 청조의 권력층은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와중에

---

1) 신우철, 「근대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5, 2007, 284-285쪽.
2) 윤욱, 「젊은 滿洲親貴 集團의 정치적 지향과 좌절, 1900-1911」, 『동양사학연구』 제118집, 2012, 220-221쪽.
3) 烏澤聲, 「大同報序」; 恒鈞, 「中國之前途」, 『大同報』 第1號; 烏澤聲, 「論開國會之利」, 『大同報』 第3號.

1912년 1월 1일 南京에서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中華民國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청조 내부에는 내전 불사론도 있었고 실제 청조의 무력은 혁명파를 제압할 만큼 컸지만 결국 청조는 국체변환에 동조하면서 선통제의 遜位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댓가로 『우대조건』을 보장받았다. 이 장에서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혁명에 대한 청조의 대응과 내부 논의

신해혁명 당시 청조가 국체변환의 협상 조건으로 만주족의 원만한 동삼성 이주 및 오족공화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협조를 제시하였다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결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높았다. 혁명파 내부에서 장병린 등도 일찍이 만주족의 동북 퇴각론을 제기한 바 있었다. 오랜 봉금조치 때문에 일반 민중 역시 동삼성을 관내와 동일하게 중국의 강역으로 간주하기보다는 "域外之地"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이후 동삼성의 권력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장작림의 세력은 당시로는 미완이었고, 趙爾巽이 동삼성 총독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의 혁명 세력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반 정황상 혁명파와의 협상을 통해 권력을 이양하는 동시에 동삼성으로 이주한다면 그 과정에서 무력 소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삼성으로의 이전을 선불리 결정하기에는 몇 가지 제약 요소가 따랐다. 먼저 외부의 요인부터 살펴보자면, 청말부터 지속된 동삼성 이권을 둘러싼 외세의 대립은 청조가 내부의 위기를 피해 이전하더라도 그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09년 미국이 제안한 "Proposal for the neutralization of the railways in Manchuria"은 국제

자본신디케이트가 만주철도를 매입하고 이를 열강이 공동관리하자는 구상이 그 핵심이었다.[4] 그러나 그 본질은 남만주와 북만주를 각각의 세력권으로 확보하고 있던 일본과 러시아를 축출하고 달러외교를 통해 미국이 만주철도를 관할하려는데 있었다. 이는 미국의 집요한 만주침투에 대항하여 러일 양국간의 공동전선 구축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이를 문서화한 제2차 러일협약 체결로 귀결되었다.[5]

여기에 신해혁명으로 촉발된 국내의 위기는 동삼성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던 서구 열강 및 일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던 러시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무창기의 직후인 1911년 10월 21일 러시아 대리외교대신 Anatoly Neratov는 니콜라이 2세에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 도쿄 내각과 의견을 교환하여 중국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할 시기"라고 보고하였고 황제가 이에 찬성하였다.[6] 10월 23일 양국 대사는 "만일의 경우 1907년 협약에서 규정한 경계선을 토대로 만주를 분할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몽고 분할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한다"[7]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영, 미, 독 각국의 간섭으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영토 분할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청조는 일본과는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러시아는 줄곧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혁명 발발 이후 중국 내부의 소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자, 러시아는 우르가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몽골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후 11월 30일 이후 진행된 몽골의 독립 선언 및 신국가 수립 과정에서 러시아군대는 몽골 정부 수립을 보조하고 군 창설을 돕는 등 청조와 외몽골의 분리독립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다.[8] 여기에 주일 미국 대사 슈일러

---

4)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5, p.XII.
5)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1905-1910)」, 『역사문화연구』 31, 2008, 234쪽.
6) 張蓉初, 『紅檔雜志有關中國交涉史料選譯』, 三聯村店版, 337쪽.
7) 「本野駐俄大使與俄國總理大臣關於淸國時局問題之談話紀要(1911.10.23.)」, 『日本外交文書選譯: 關於辛亥革命』,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0, 105, 107쪽.

(M. Schuyler)는 본국에 송부한 보고서에서 남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의 군대가 외몽골로 신속하게 2만 명의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9] 이렇게 급변하는 내외 정세 속에서 청조가 자신들의 故土인 동삼성으로 섣불리 이전할 경우 자신들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울러 청조 내부의 정치적 대립과 경험 미숙 역시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황실의 거취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08년 순친왕 재풍은 자신의 동생 載濤를 1만 2천 명의 宮中禁衛軍을 관장하는 專司訓練禁衛軍大臣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독무가 지방의 육군지휘권에 참여해 왔던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에서 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한 軍諮處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를 관할하게 될 管理軍諮處事務大臣의 직위 역시 재도에게 부여하였다. 또 다른 동생인 載洵은 새로 건설할 해군을 책임질 籌辦海軍大臣으로 임명하였다. 이 역시 지방의 독무가 海軍兵艦指揮權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뒤이어 1909년 1월 순친왕은 자희태후의 유지를 빌어 원세개를 중앙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이후 북양육군의 6진은 모두 육군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순친왕은 어린 황제를 대신하여 사실상 청조의 육해군을 모두 통솔하는 全國陸海軍大元帥가 되었다. 1906년에 시작된 관제개혁을 통해 만주족이 병권을 만주족이 확보하였고, 선통제 시기에는 황실 인사들이 이를 전면적으로 장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기존에 권력을 장악하였던 경친왕 혁광 계열의 인사들은 배제되었다. 하지만 재도나 재순 등은 군사 경험이 일천한 인물들이었다. 이같은 청 황실의 군사개혁은 한족 독무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만주족이자 육군부대신이었던 鐵良 역시 이에 불만을 품고 1910년 사직하였다. 1909년 6월 직예총독에 임명된 단방 역시 석연치 않은 혐의로 파직되었다. 철량과 단방은 만주족 고관으로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족 고관들과

8) 석화정, 「러일 비밀협약과 러시아의 몽골 정책」, 『軍史』 92, 2014, 214쪽.
9) 최덕규, 「러일의 내몽골 분할협약연구(1912): 제3차 러일협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5, 155-156쪽.

서로 복잡한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서 청 제국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제는 그런 연결고리마저 끊어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병권을 장악하는 것은 근대국가 체제상으로는 당연한 일이며 하나의 과제였으나 청조는 현실적으로 그 과제를 풀어나갈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10]

이처럼 만주족 내부의 권력 투쟁과 실무 담당자들의 퇴진으로 인해 어지러운 상황 속에 청조가 신해혁명 발발 초기 제대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무창기의 발발 직후 순친왕은 육군대신 蔭昌의 지휘 아래 북양 6진의 군사 중 약 5만 명에 달하는 진압군을 파견하였다. 비록 호광총독 瑞澂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서둘러 퇴각하였지만, 盛宣懷 등이 "사실 무창 쪽은 조만간 평정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으나, 사천의 교통이 불편하여 진압에 난항을 겪은 것이 오히려 大局에 깊은 관계가 있었다"[11]고 판단할 만큼 당시 청조의 군사적 상황은 혁명군에 비해 불리하지 않았다. 혁명군은 물자 및 병력 보충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청조의 군대가 수적으로 우세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전으로 진행될 경우 객관적인 승산은 청조에게 있었다. 그러나 청조 지휘관, 특히 정책의 대계를 결정해야 할 만주족 지휘관의 군사적 역량은 이같은 유리한 조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음창 역시 혁명군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후방에 머물면서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였다. 이에 혁명군의 점령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동시에 다른 성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발적으로 혁명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변화하였다.

아울러 청말 조직된 신군의 만주족 장교 중 일본 유학과정에서 혁명 사상에 경도되었던 일부의 이탈 역시 내부 분열을 가속화하였다. 灤州兵諫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혁명군 진압을 위해 파견되더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

10) 조세현, 「淸末新政 시기 滿漢葛藤과 군주입헌론의 굴절 - 관제개혁에 따른 군주이미지의 변화에 주목하여」, 『동북아문화연구』 23, 2010, 42-44쪽.

11) 尚友倶樂部·廣瀨順晧·櫻井良樹編, 『伊集院彥吉關係文書 - 第1卷 辛亥革命期』, 芙蓉書房出版, 1996, 75쪽.

가담함으로써 청조의 대응을 지연시키고 주방팔기의 군사적 연결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였다.[12] 중앙에서 파견된 북양6진 주력부대의 미온적인 대응과 주방팔기군의 분열은 우세로 점쳐지던 군사적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더하여 황실 내부에서 혁명군에 대한 진압 방식과 원세개의 복귀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경친왕 혁광 일파와 순친왕 재풍 일파의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으며, 순친왕 일파 내에서도 재도와 재택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친왕, 나동, 단방 및 재도 일파는 군을 수습하고 사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원세개의 조기 복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택 일파는 원세개가 정계를 떠난 지 2년이 넘었다는 점을 들어 서징을 재신임할 것을 주장하였다. 재택이 서징의 처남이었던 것과, 이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융유태후가 원세개의 복귀를 반대하였던 것이 그 주된 이유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창 외에도 漢陽, 漢口 등이 잇따라 혁명군의 손에 넘어가면서 서징의 과오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에 재도 일파인 재순이 적극적으로 나서 순친왕에게 원세개가 아니면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없다고 설득하였다.[13] 이에 10월 14일 순친왕이 융유태후에게 유지를 내려줄 것을 청하여 허가를 받는 형태로 원세개의 호광총독 임명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14] 10월 18일 원세개는 이를 수용하였으나 「節略八條」의 승인 및 전군의 총지휘권을 요구하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15] 이에 10월 20일 융유태후가 재풍과의 회동 이후 「撥內帑振鄂饑難災民」을 통해 호북의 구휼을 위해 내탕금을 하사할 것을 공포하면서 “내무부가 적당한 인원을 파견하여 원세개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6] 황실이 내부 대립을 일단락하고 원세개의 복귀를

12) 唐向榮, 『灤縣文史資料 - 第7輯 辛亥灤州起義』,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河北省灤縣委員會, 1991, 42-53쪽.

13) 「吳筱孫來函」, 駱寶善·劉路生主編, 『袁世凱全集』 第十九卷, 河南大學出版社, 2013, 18쪽.

14) 「券四十 隨筆日記」, 宣統3年 陰曆 8月 24日, 愛新覺羅·載灃, 『醇親王載灃日記』, 群衆出版社, 2014, 414쪽.

15) 해당 문건의 원문은 현재 남아있지 않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청조의 군사적 지원 강화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丁健, 「辛亥革命時袁世凱出山問題的成因及真相考述」, 『北京檔案』 2019年 4期, 55쪽 ; 朱文亮, 「清末皇族內爭與袁世凱複出」, 『歷史研究』 2017年 5期, 104쪽 등 참고.

명확하게 승인한 것이다.

한편 당시 재도의 측근이었던 哈漢章의 발언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공사관의 문건에 따르면 하한장은 10월 18일 일본공사관 무관인 아오키 소장에게 원세개가 복귀 당시 「절략팔조」 이외에 내년 국회 개원, 책임내각 구성, 귀순 폭도 사면, 토벌군 총지휘권 위임이라는 4개조의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본 공사는 다른 경로로부터 비슷한 정보를 입수하여 청 정권에서 직접 획득한 정보이니 일단 신뢰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7] 기존 연구에서는 원세개가 「절략팔조」 이외에 입헌주의의 조기 확립과 내각의 권력 강화에 중점을 둔 6개조의 조건을 함께 제시하였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18] 이로 미루어 볼 때 원세개는 복귀 당시 정국의 수습을 위해 책임내각제를 내세워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국회의 개원과 혁명세력에 대한 사면조치를 통해 협상의 폭을 넓혀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벌군 총지휘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책임내각제의 총리대신 권한 확보를 통해 원세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의 재편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3일 청조에 의해 공포된 『십구신조』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19] 이는 灤州兵諫을 초래한 주역들인 張紹曾·盧永祥·藍天蔚·荀祥植·潘短槿 등의 청조 장교들이 10월 29일 연명으로 제출한 「政綱十二條」에 기반한 것이다.[20] 청조는 이를 즉시 전면 수용하여 헌법을 제정하라는 상유를 내렸다. 이에 資政院이 3일 동안 초안을 작성하고 청조가 11월 3일에 즉각 공포한 일종의 임시헌법이 바로 『십구신조』였다.

---

16) 「劵四十 隨筆日記」, 선통3년 음력 8월 29일, 愛新覺羅·載灃, 위의 책, 414쪽.
17) 「清國公使館附武官青木少将電報々告(電報第293號)」(明治四十四年十月十八日),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3050622200.
18) 朱文亮, 「清末皇族內爭與袁世凱複出」, 『歷史研究』 2017年 5期, 32-33쪽.
19) 『內閣官報』 宣統3年9月13日 第73號, 146-147쪽.
20) 「陸軍統制官張紹曾等奏陳請願意見政綱十二條折」,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 上 , 中華書局, 1979, 99-100쪽.

제1조 대청제국의 皇統은 만세불변이다.

제2조 황제의 신성함은 침범할 수 없다.

제3조 황제의 권한은 헌법 규정으로서 제한한다.

제4조 황제 계승 순서는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5조 헌법은 자정원이 기초하고 의결하며 황제가 이를 공포한다.

제6조 헌법 개정을 제안할 권리는 국회에 속한다.

제7조 상원의원은 국민이 법률이 정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 총리대신은 국회에서 공식으로 선출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기타 국무대신은 총리가 추천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황족은 총리대신이나 기타 국무대신 및 각성의 행정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9조 총리대신이 국회에서 탄핵된 때에는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각총리가 사직한다. 단 일단 내각이 해산한 다음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제10조 황제는 육해군을 직접 통솔하되, 다만 대내적으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가 의결한 특별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 11조 명령으로써 법률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긴급명령은 제외하나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와 법률이 위임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 국제조약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되지 아니하나, 다만 宣戰·講和의 경우 국회의 회기 내가 아닌 경우 국회의 추인에 따른다.

제13조 官制와 官規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4조 매년 예산의 出入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 역시 적용할 수 없다. 또 예산 내에서 규정된 세출은 예산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비상 재정 처분 역시 받을 수 없다.

제15조 황실 경비의 제정 및 증감은 국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6조 皇族大典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제17조 國務裁判機關은 兩院에서 조직한다.

제18조 국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황제가 이를 선포한다.

제19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각 조는 국회 개회 전에는 자정원에 적용된다.[21]

『십구신조』의 내용을 통해 청조가 그 개혁 방향을 영국의회를 모범으로 하여 『흠정헌법대강』과 유사하게 법률로서 황제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와 총리의 정치적 실권을 존중하며 황제는 통치하되 다스리지 않는 虛君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1조, 제2조에서 황제권의 신성성과 만세불변을 선언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미사여구였다. 3조에서부터 황제권이 헌법을 넘어설 수 없음을 천명하고, 이하의 조문에서 황제 궐위시 승계 순서, 인사권, 군사권, 예산 편성권 등을 의회의 동의 또는 결의 없이 황실이 독단적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제8조, 제15조와 제16조를 통해 황족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황실의 권한이 헌법을 넘어설 수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던 것 역시 만주족 내각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군주입헌정체 하에 의회내각제 정권조직이 병존하는 형식을 확립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말의 입헌과정에서 일본식 군주입헌체제의 경로를 모방하였던 것을 벗어나 영국식 의회제 헌법을 성립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것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22]

『십구신조』는 비록 전면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청조에 의해 정

21) 『內閣官報』, 宣統3年9月13日 第73號, 146-147쪽.
22) 高全喜, 『中國憲制史』 第一卷, City University of HK Press, 2022, 140-142쪽.

식으로 공포되어 법적 효력을 지녔으며, 의회와 황실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의하여 입헌에 입각한 정치 권력 재편의 의지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청조 황실 내각이 퇴위하고 공식적으로 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이 11월 1일이었고, 북경에 입성한 것은 11월 13일이었다. 시기상 『십구신조』가 입안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몇 가지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입안 및 공포 과정에서 사전에 원세개와의 교감이 없었다면, 정치체제의 변화와 권력의 이양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청조가 원세개 및 입헌파에게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다. 「정강12조」에서 제시된 국가 폭력의 민간 사용 억제(6조)[23]에 관련된 내용 및 원세개의 4개조 중 귀순 폭도 사면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청조의 붕괴 없이 혁명파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무장봉기의 주축인 강경 혁명파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원세개와의 사전 논의 하에 『십구신조』가 발표되었다면 이는 청조와 원세개 사이에 향후 정국 운영 타협안으로서 구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4개조처럼 원세개가 복귀 당시 책임내각제의 실행과 국회의 개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청조 역시 이미 국회 개원과 입헌군주제로의 이행을 이미 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여기에 그 바탕이 되는 「정강십이조」가 청조 장교 중 신해혁명에 가담한 이들의 의견이었고, 청조가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토대로 온건 혁명파와의 교섭에 활용하겠다는 의도 역시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실제 영국식 의회제도의 도입은 신정 실시 이래 온건 혁명파의 주축이 되는 입헌파가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경우 중 어떤 것을 상정하였든, 이는 남북화의 이전 체제 존속의 의지를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고, 원세개를 주축으로 하는 온건파

23) “六. 格殺勿論, 就地正法等律, 不得以命令列使. 又, 對於一般人民, 不得違法隨意逮捕監禁.”(「陸軍統制官張紹曾等奏陳請願意見政綱十二條折」, 故宮博物院明淸檔案部 編, 『淸末籌備立憲檔案史料』 上 , 中華書局, 1979, 99-100쪽.)

친청 내각 구성을 통해 난국을 타파하려고 하였음을 보여준다. 청조는 세간의 견해처럼 신해혁명 발발 이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원세개에게만 의지하다가 혁명의 격랑에 휩쓸려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헌법의 정식 제정을 통해 자신들을 방어하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내각이 중심이 되는 군주입헌제로의 완전한 전환 표명 및 원세개로의 권력 집중을 통한 정치적·군사적 안정은 혁명의 확산을 저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북양군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된 이후 전술한 것처럼 혁명군 내부에서도 화의론이 우세해졌으며 이에 양측이 남북의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의화 과정에서 『십구신조』가 혁명 세력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것처럼 남북의화 당시 혁명세력 내부에 온건 혁명파의 입지가 우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구신조』는 혁명세력에게 전면적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 근본적인 결함 중 하나는 개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조항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십구신조』는 국가권력의 운용에 중점을 두었을 뿐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강12조」에서 제시하였던 인민에 대한 무분별한 국가폭력의 횡포 방지와 관련된 내용 역시 모두 삭제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조의 인식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보다 국가와 사회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두었음을 보여준다.[24] 여기에 혁명 세력이 혁명 초기 "反滿" 또는 "排滿"의 기치를 내세워 한족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제약된 형태라도 황제가 여전히 군권을 비롯한 주요 권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십구신조』의 내용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세개는 혁명세력과의 교섭과정에서 청 황제의 퇴위를 조건으로 자신이 임시대총통을 보장받으며 일단 공화제에 찬동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청조가 기대하였던 왕조지배체제의 존속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정치권과 군권을 원세개에게 내어준 청조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24) 신우철, 「清末 立憲君主制 憲法 小考」, 『법사학연구』 44, 2011, 101쪽.

을 회피하고 “遜位(이하 퇴위)”를 통해 국체변환에 동조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2. 내전의 회피와 淸帝의 遜位

혁명을 전후한 시점에 반만 논조가 확산되면서 혁명파들 사이에 만주족을 동북 지역으로 구축하자는 논의 역시 다각도로 전개되었다. 이에 맞서 만주족 내부에서는 동삼성에 집결해 부흥의 근거지로 만들자거나 무력으로 혁명을 진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청조는 동삼성 귀환론에 대해서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내전은 열강의 간섭에 의한 중국의 瓜分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여 회피하면서 혁명세력과 타협을 모색하였다. 왜 그렇게 귀결되었는지 그 경위를 살펴보자.

양측이 타협에 이른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려면 먼저 혁명 세력의 입장과 정책을 검토한 다음 황실 내부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 청조의 실권을 장악한 채 청조가 혁명파와 타협하도록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袁世凱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청조 황실의 관련 문건을 개조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흔히 “驅除韃虜, 恢復中華”로 알려진 혁명파의 기조는 이 시기 어떻게 변화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래 원의 멸망 이후 몽골의 사례를 상기할 때, 한족이 정권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만주족의 귀향과 독자 정권 수립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혁명파의 주요 인물들은 20세기 초 청조의 위기가 전면화된 이후 만주족의 동삼성 귀환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용인하거나 혹은 회유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종래 원의 멸망 이후 몽골의 사례를 상기할 때 한족이 정권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만주족이 자신들의

발상지로 귀향하면서 독자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다. 이는 강경 혁명파[25]였던 章炳麟이 혁명 과정에서 발표한 일련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01년 「正仇滿論」을 통해 "만주족을 내쫓는 것은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동삼성을 자치지역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주족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살도록 하고, 자기 땅을 경작하게 하고, … 그들이 우리 한족의 땅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26]고 주장하였다. 이후 그는 1907년 「中華民國解」에서 "그동안 줄곧 내가 排滿을 외친 것은 우리 국가를 회복하고 우리 국가주권을 빼앗기 위함이므로 만약 적을 물리쳐 이 목표를 달성하고 滿洲之汗이 宛平으로 퇴각해 黃龍之府에 순종한다면 일본이나 태국과 동일시할 것이며 그 種人이 順化하여 귀순하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27]고 하였다. 이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인식주체가 그 입장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저항논리인 排滿論에서 지배논리인 容滿論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28]

그러나 혁명 세력이 만주족을 일시에 동북으로 귀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해혁명이 우발적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다. 당시 강경 혁명파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군사력의 규모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 합류한 온건 혁명파의 군사력과 자금력이 이들을 압도하였다. 온건 혁명파의 경우 기존의 체제를 급격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체제를 구성하기보다 종래 입헌군주제로의 전환 시기에 추구되었던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혁명의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혁명 초기에 우려되었던 대규모의 폭력 사태나 무력을 동원한 내전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주장의

25) 본고에서는 배만론과 의회 민주주의를 주장한 부류를 강경 혁명파, 기존 군주입헌파 중 혁명 세력에 가담하여 오족공화와 입헌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던 부류를 온건 혁명파로 나누어 서술한다.
26) 章炳麟, 「正仇滿論」, 『國民報』 1901.06.26.
27) 章炳麟, 「中華民國解」, 『民報』 15期, 1907.07., 『辛亥選集』 2卷 下冊, 737쪽.
28) 유용태, 앞의 논문, 51-52쪽.

차이로 인해 강경 혁명파가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실제로 연합을 유지한 것은 내전의 격화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르는 '과분'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의화단운동 이후 각국 열강의 군대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관내에 주둔하고 있었다. 중국인은 몇 차례의 전란을 거치며 이들의 군사력을 목격하고 그 강력함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이는 혁명파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혁명파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들이 일으킨 봉기로 인해 외세가 간섭하거나 공격할 빌미를 차단하는 것이 되었다. 내전이 확대될 경우 외세가 개입하여 중국의 강역이 과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급진적 혁명파 신문인 『民權報』의 논설에서는 중국이 이제 망국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면서 "(오늘날) 러시아인들이 伊犁 지방에 진출하고 영국인들이 西藏에 군대를 진주시켰으며 일본과 러시아가 공모해 東三省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 이리를 러시아에 빼앗기면 新疆省이 망하게 되고 新疆이 망하면 티베트가 망할 것이며 티베트가 망하면 몽골이 망하고 몽골이 망하면 滿洲가 …… 만주가 망하면 北直이 망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중국이 망하지 않겠는가"라고 과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다.[2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 장악보다는 청조의 강역 수호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혁명 발발 직후인 11월 15일 혁명 세력의 汪精衛와 원세개 내각의 學部副大臣 梁度가 조직한 國事共濟會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혁명 세력과 입헌 세력 모두 한·만·몽·회·장의 다섯 종족을 분리 독립시켜 각국의 영토보전주의와 충돌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간의 입장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군주·민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쌍방의 정전을 요구하며 국민의회를 발기하여 국민의 공의로 결정하되, 어떤 결정이 나든 양측은 모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선언문에 함께 수록된 簡章에서는 전

29) 民畏, 「論說; 瓜分之現象」, 『民權報』 1912.05.23.

국 영토 통일의 유지, 양당에 의한 정전 요구와 임시국민의회 조직에 의한 국체문제 해결 및 전국 전쟁의 위험 회피, 북경정부와 武昌軍政府에 대한 청원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청조의 번부가 열강에 과분될 위험성을 인지하고 양측의 평화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의회라는 중재기구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비록 국사공제회의 선언은 청조와 혁명파 양측의 외면과 불신을 받아 2주만에 해산되었지만, 직후 원세개가 전권대신으로 취임하면서 남북의화의 합의점으로 국민회의에 의한 정체 결정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30)

양측은 이제 남북의화를 통해 停戰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으로 국민회의를 통해 국가 정체성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건은 국민회의의 형식에 대해 이를 군주의 이름으로 소집하는 것에 반대하고 전국 軍民이 대표를 공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원세개 측이 이에 찬동하여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12월 29일경 국민회의의 장소와 대표 선출 방법을 놓고 마찰이 일어났다. 원세개는 합의안대로 진행된다면 자신이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이미 타결된 합의의 유효성을 부인했다. 이에 伍廷芳은 원세개가 직접 국민회의를 소집하여 정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였으나 이는 다시 혁명 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1월 29일 휴전이 임박하자 오정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국민회의를 통한 국가정체의 공론화 노력을 중단하는 대신 선통제를 퇴위시켜 공화정을 실현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기로 하였다.31)

하지만 혁명파는 이처럼 청조의 강역을 수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었으나, 그 상징이었던 청조 황제의 퇴위 이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조의 황제는 광대한 영토에서 다수의 민족을 통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족 출신 황제가 가질 수

30) 김형종, 「1911年의 汪精衛 - 楊度와의 國事共濟會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문화』 48, 2010, 30쪽.
31) 桑兵, 「辛亥國事共濟會與國民會議」, 『近代史研究』 2015年 第2期, 23-24쪽. 28-29쪽.

없었던 다민족 집단을 통합하는 “汗”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경 혁명파는 다민족의 共主라는 청조 황제의 역할이 소멸된 후 발생하게 될 영토와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32] 상술한 과분의 위기 속에서, 청조가 어떤 방식으로 소멸하건 간에 기존 청조 체제에 편입되었던 민족들 역시 동일하게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에 자발적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청조의 붕괴로 초래된 소수민족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민족 통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새로운 이념 및 권위를 창출해야 하였다. 이에 혁명파 내부에서 온건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조의 강역을 보존하기 위해 ‘중화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한족 이외의 민족을 동화시킬 것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오족공화를 천명하며 지역별·민족별 의석 안배를 통해 소수민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청조 황제가 가졌던 “다민족의 共主”로서의 권위는 쉽게 대체될 것이 아니었다. 이는 실제 외몽골 독립 과정에서의 일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12년 1월 후룬부이르 동몽골의 귀족들은 오이라트(額魯特)의 總管 셩푸(勝福), 첸바르구(陳巴爾虎)의 총관 처허짜(車和劄), 수오룬(索倫)의 총관 청더(成德)가 무력으로 중앙의 관원을 축출할 때에 독립을 선언하며 대몽골제국의 자치정부에 예속될 것을 선포했다. 그러나 동시에 “大淸帝國義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목표가 ‘공화에 반대’하는 데 있음을 표명하였다.[33] 이러한 일은 다른 민족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2년 1월 22일 손문은 황제가 퇴위할 경우 총통직을 원세개에게 이양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후 퇴위조건의 협상 과정에서 소조정을 존치시키고 청조 황제의 상징적 권위를 빌려 분열을 막는 대가로 지원금을 비롯한 특혜를 지급하는 사안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2) 楊念群, 「淸帝遜位與民國初年統治合法性的闕失——兼談淸末民初改制言論中傳統因素的作用」, 『近代史硏究』, 2012年 5期, 33-34쪽.

33) 吳啟訥, 「漢人이 주체가 되는 중화민국에 직면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56, 2012, 162쪽.

일반적인 혁명이 폭력을 통해 기존 정권을 소멸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예외적인 행태이다.

한편 이시기 원세개는 군비 조달을 명목으로 융유내후의 내탕금을 강제로 사용하였고, 동시에 황족들에게 군비를 기부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는 청조의 전반적인 재정 고갈을 초래하였다.[34] 자희태후가 생전에 사용하였던 정적 견제책으로 인해 분열된 황실인사 중에서 사태의 중심에 서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이나 정치적 역량을 가진 인물도 부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세개는 청조를 상대로 프랑스 혁명의 사례를 들며 선통제 이하 황실 구성원들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음을 논하기도 하였다. 실제 혁명을 전후한 시기 혁명운동가들이 만주족 관료들을 암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1907년 7월에 徐錫麟이 安慶에서 安徽巡撫 恩銘을 암살하고, 1911년 4월에는 溫生財가 광주에서 廣州將軍 孚琦를, 1911년 10월에 李培基가 광주에서 廣州將軍 鳳山을, 1912년 1월에는 彭家珍이 베이징에서 禁衛軍統領 良弼를 암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밖에 순친왕과 원세개를 암살하려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 원세개가 혁명 세력과의 협상을 통해 선통제를 퇴위시킨 것은 이러한 급진적 종족주의의 확산을 막고 안전을 도모하려던 것과도 관계가 있었다.[35]

> 이 협정은 옥좌를 구하는 것이며, 황제는 여전히 황제로 남는다. 황제가 치르는 희생은 政權일 뿐이다. 실제로 그것은 아무런 희생도 아니다. 왜냐하면 폐하는 아이에 불과하며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황제로서의 책무를 혼자의 힘으로 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치권을 포기한다면 황실은 허다한 곤란이나 고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황제가 성인이 될 때에는 혁명의 광기도 가라앉을 것이며, 황제는 공화국이라고 자칭하는 미친 조직에 일시적으로 맡겨놓

34) 애신각라 부의, 이충양 역, 『황제에서 시민으로』 상, 문학과 비평, 1988, 57쪽.
35) 장옥법, 「청말 혁명파의 혁명이론에 대한 견해 차이와 그 영향」, 『中國近現代史硏究』 52, 2011, 20쪽.

았던 권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공화국은 통치나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며, 백성도 공화국에 점점 염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황제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 그의 옥좌가 결코 빈 자리가 아니라는 것, 황제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백성의 요청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해 고래의 전례가 유지되고 능묘의 보호가 보장되며 폐하의 황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액의 연금이 지급될 것이다. 내무부는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전통적인 궁중 의식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 옥좌는 잃었던 권위를 회복하고, 몇 년 안에 천자가 다시 전면에 등장해 행복하고 번영된 중국에 군림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즐겁게 보게 될 것이다.[36]

원세개의 회유 중 "황제가 성인이 될 때에는 혁명의 광기도 가라앉을 것이며, 황제는 공화국이라고 자칭하는 미친 조직에 일시적으로 맡겨놓았던 권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발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은 원세개 본인이 남북의화의 주체로 국체변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다. 청조를 설득하기 위한 기만책이기도 하겠으나 잠시 물러나 훗날을 도모하라는 의도를 공공연히 표출함으로써 청조에게는 희망을, 원세개 자신은 또다른 보험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에 하나 혁명세력이 무너지고 국내외의 여론이 복벽에 우호적이라면 황제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주족 내부에서 위와 같은 정권 재탈환의 가능성에 동조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근거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이 예상되는 위험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궤변임을 간파하더라도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유리하였을 것이다.

청조 황실 내부도 두 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였다. 숙친왕 善耆를 비롯한

36) 레지널드 존스턴, 앞의 책, 146-148쪽 ; 이와 관련된 내용은 「12月 28日」, 『昭英日記』 上, 中華書局, 2018, 178-179쪽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일련의 황족은 자희태후 이후 추진되어 온 입헌군주제로의 조기 전환을 토대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반대의견을 내세운 경친왕 奕劻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일파는 원세개의 제안대로 혁명파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대파는 良弼, 溥偉, 載濤, 載澤, 鐵良 등의 만주족 왕공귀족 및 한족 유신들이 중심이 된 君主立憲維持會를 조직하고 「北京旗漢軍民公啓」를 발표하면서 이에 맞섰다.[37]

이에 대해 1월 20일, 남경임시정부는 정식으로 『淸帝退位優待條件』을 제시하였다.[38] 동시에 원세개는 남경임시정부와 청조 모두에게 천진에 하나의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곧 황실 종친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종사당의 일원들은 "南北竝立"案, 즉 남쪽을 혁명세력에게 내어주더라도 북쪽에는 입헌군주제 체제 하의 청조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안을 제출하여 이에 강경하게 맞섰다. 이들은 내전불사론을 주장하며 청조의 군사력이 충분하니 이를 활용하여 다시 무력으로 혁명군을 진압할 것을 주청하였다.[39] 동시에 원세개에 대한 암살 시도를 통해 황제의 퇴위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良弼이 암살되며 정치적으로 지대한 타격을 입고 그 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일부는 북경에서 이탈하였다. 원세개는 사건 직후 이는 퇴위가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강경파가 내전을 재개하여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혁명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40]

다만 이미 남북화의를 통해 청조의 종식과 황제의 퇴위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손문의 복귀 이후 『淸帝退位優待條件』이 발표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청조의 위신, 황제 퇴위 이후 권력의 향배, 청조 황실의 반발 등과 연계되어 있었다. 후술할 퇴위와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순친왕, 경친왕 등 황실 인사들은 "退位" 대신 "遜位"를 사용하기 원했다. "퇴위"는 현

37) 申鉉武·王銳波 編, 『中國政黨政團大觀』, 延邊大學出版社, 1988, 175쪽.
38) 「致伍廷芳電」(1912.1.20.), 『孫中山全集』 第2卷, 30쪽.
39) 「由國民會議進入淸帝自行退位」, 張國淦 編, 『辛亥革命史料』, 文海出版社, 1956, 297-304쪽.
40) 桑兵, 「政權鼎革與法統承繼──圍繞淸帝退位的南北相爭」, 『學術硏究』 2018年 1期, 113쪽.

재의 지위에서 단순히 물러남을 의미한다면, “손위”는 누군가에게 양위를 하기 위해 물러나는 것으로 적극적인 양보이자 禪讓에 가까운 의미를 가졌다. 이는 미덕의 체현이자 계승자에게 권력 기반의 합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41] 장건은 처음 이에 동의하지 않고 국민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원했으나 원세개는 ‘손위’에 찬성하였다. 양위의 계승자로서 청조의 체제를 온전히 물려받는 한편 공화의 수호자 역시 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귀국한 손문은 권력 양위의 대상이 원세개가 아니라 중화민국 정부여야 한다고 여겼다.[42] 따라서 문건에서 “退位”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원세개와 청조의 계승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세개 및 황실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혁명파 내에서도 논쟁의 불씨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퇴위를 둘러싼 협상에 내분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몽골 왕공 및 황실 인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퇴위를 “辭位” 혹은 “辭任”이라 표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청조 황제가 정치적 권력만을 이양할 뿐 명목상 여전히 최고 통치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문과의 갈등이 길어지자 원세개는 2월 10일 ‘손위’를 ‘辭政’으로 교체할 것을 주청하여 융유태후의 동의를 얻었다.[43] 이는 원세개가 다시 청조의 편에 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조성하였고, 혁명 세력은 결국 “손위”를 통한 원세개의 권력 계승에 동의하였다. 이에 청조는 2월 12일 융유태후의 「淸室遜位詔書(이하 “손위조서”)」 교지를 통해 “황제의 통치권을 전국으로 나누고, 공화입헌을 국체로 결정한다(特率皇帝將統治權公諸全國, 定爲共和立憲國體)”는 내용을 선포하였다.[44]

---

41) 桑兵, 「袁世凱《請速定大計折》與淸帝退位」, 『近代史硏究』 2017年 6期, 9쪽.
42) 桑兵, 위의 논문(2018), 112쪽.
43) 桑兵, 앞의 논문(2018), 125쪽.
44) 1912년 2월 12일 『臨時公報』에 발표될 당시 해당 조서는 「諭旨」로만 발표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표기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들도 편의적으로 “遜位詔書” 혹은 “退位詔書”를 혼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遜位詔書”로 표기하기로 한다.

원세개는 이제 청조의 협상대리인에서 최고 권력자로 그 정치적 입지가 변화하였다. 그는 전술한 대로 혁명파 및 청조 황실과의 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동시에 가급적 청조의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여 국체 변환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종래의 관료 체계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간에서 이들이 원래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기보다는 그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상대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상황을 왜곡하였다. 이는 「손위조서」에 기록될 문구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장건이 기초한 내용에 대해 원세개가 여러 차례 자의적으로 변용을 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장건이 1911년 11월 27일 「複內閣電」에서 제시한 초안은 다음과 같다.

> 前因民軍起事, 各省響應, 九夏沸騰, 生靈塗炭, 特命袁世凱爲全權大臣, 遣派專使與民軍代表討論大局, **議開國民會議,** 公決政體. **乃旬月以來**, 尚無確當辦法, 南北睽隔, 彼此相持, 商輟於途, 士露於野, 徒以政體一日不決, 故民生一日不安. **予惟全國人民心理**, **既已趨向共和, 大勢所趨, 關於時會, 人心如此,** 天命可知. 更何忍移帝位一姓之尊榮, 拂億兆國民之好惡？**予當即日率皇帝遜位, 所有從前皇帝統治國家政權,** 悉行完全讓與, **聽我國民合滿、漢, 蒙, 回, 藏五族, 共同組織民主立憲政治.** 其北京, 直隸, 山東, 河南, 東三省, 新疆, 以及伊犁, 內外蒙古, 青海, 前後藏等處, 應如何聯合一體, **著袁世凱以全權與民軍協商辦理, 務使全國一致洽於大同, 蔚成共和郅治, 予與皇帝有厚望焉.**[45]

한편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1912년 2월 12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손위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朕欽奉旨：隆裕皇太後懿旨：前因民軍起事, 各省響應. 九夏沸騰, 生靈塗炭, 特命袁世凱遣員與民軍代表討論大局, **議開國會**, 公決政體. 兩月以來, 尚無確當辦法. 南北

45) 「內閣複電」, 曹從坡·楊桐 編, 『張謇全集』 第1卷, 南京:江蘇古籍出版社, 1994, 191쪽.

> 暌隔, 彼此相持. 商輟於途, 士露於野. 徒以國體一日不決, 故民生一日不安. **今全國人民心理多傾向共和, 南中各省既倡議於前, 北方諸將亦主張於後. 人心所向,** 天命可知. 予亦何忍以一姓之尊榮, 拂兆民之好惡. **是用外觀大勢, 內審輿情, 特率皇帝將統治權公諸全國, 定爲共和立憲國體.** 近慰海內厭亂望治之心, 遠協古聖天下爲公之義. 袁世凱前經資政院選舉爲總理大臣, 當茲新舊代謝之際, 宜有南北統一之方. 即**由袁世凱以全權組織臨時共和政府, 與民軍協商統一辦法. 總期人民安堵, 海宇乂安, 仍合滿, 漢, 蒙, 回, 藏五族完全領土爲一大中華民國**. 予與皇帝得以退處寬閑, 優遊歲月, 長受國民之優禮, 親見郅治之告成, 豈不懿歟? 欽此.[46]

두 문건을 비교했을 때 먼저 원안의 "議開國民會議"가 "議開國會"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것과 같이 당시 혁명세력과 협상하고 있었던 국민회의 개최를 통한 정체 변경 결정 논의 관련 사항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仍合滿, 漢, 蒙, 回, 藏五族完全領土爲一大中華民國" 문구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문이 민주정체를 조직하는 주체로서의 오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오족의 완전한 영토=중화민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정치 주체로서의 각 민족은 사라지고 청조 영토 수호의 당위성만 남게 되었다. 오족은 "국민"으로 호칭되어 정치주권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기존처럼 국가에 예속된 존재로서 여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著袁世凱以全權與民軍協商辦理, 務使全國一致洽於大同, 蔚成共和郅治"가 "即由袁世凱以全權組織臨時共和政府, 與民軍協商統一辦法"으로 수정됨으로서 단순히 협상 과정에서의 전권이 아니라 國事의 전권이 모두 원세개에게 넘어간 것으로 처리되었다. 국체변환 과정에서 "임시공화정부"라고 하는 중간단계를 설정하여 원세개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아울러 이는 이후 정치에서 청조 황실이 배제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46) 「淸帝遜位詔書各種修改稿」(三)·(四), 駱寶善·劉路生 主編, 『袁世凱全集』 第19卷, 鄭州 : 河南大學出版社, 2013, 546쪽.

그러나 선통제의 퇴위는 “군주의 애민심”의 발로임을 명시함으로서 국체변환이 청조의 평화적 정권 양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는 수정되지 않았다. 「손위조서」의 “今全國人民心理多傾向共和, 南中各省既倡議於前, 北方諸將亦主張於後.”은 장건의 원문에 없던 “多”를 포함시키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지속되는 내전으로 인한 민중의 피해를 묵과할 수 없으며, 민심이 공화를 택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상 큰 변화는 없었다. 대의를 위해 폭력과 황실의 권력욕을 내려놓고 시대의 변화에 순종하겠다는 논리는 중국인에게 친숙한 것이었다. 이에 만주족 지배층을 향한 한족의 증오는 더이상 지속될 명분을 상실하였다. 반대로 만주족은 정권 포기의 대가로 대의명분을 얻고 공화의 주체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손위조서」의 내용 중 “통치권을 전국으로 나누고 … 나와 황제는 물러나 한가로이 휴식하면서 유유자적 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의 예를 길이 누리겠다(予與皇帝得以退處寬閑, 優遊歲月, 長受國民之優禮)”는 구절은 앞선 손위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장건의 원안에는 “손위”가 명기되어 있으나 발표문에서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退處寬閑”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2월 7일 원세개가 “辭政”을 논했던 것과 연관지어 보면, 만주 황실과 혁명 세력이 선통제의 퇴위 이후 그 위상을 “통치권만 내어준 채 여전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 존재”로서 규정하려고 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입헌을 政體로, 공화를 國體로 이해한다면 공화국 내에 황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견 모순에 가깝다. 이를 퇴위한 황제에게 일본의 천황제와 비슷한 상징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47] 다른 시각에서 중국의 왕조 전통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는다면, “帝”의 기능은 상실되고 “皇”으로서의 우대만이 남는 것은 역대 왕조의 上皇이 흔히 겪은 상황이었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니 청조 황실 혹은 혁명 세력 역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상술한 원세개의 언급대로 선통제의

47) 全俊豪, 『淸末民初國體問題之討論(1906-1916)』, 東海大學 碩士論文, 2018, 22-24쪽.

재기를 위한 포석이든, 혹은 古來의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이든 결과적으로 청조 황실은 자신들의 발상지로 귀환하지 않고 자금성에 체류하는 것을 택하였다.

3. 『優待條件』의 성립과 그 의미

1912년 2월 12일 선통제의 퇴위 당시 반포된 『關於大淸皇帝辭位後優待之條件(이하 "『우대조건』")』에는 퇴위한 황실 및 만주족에 대한 정책의 기본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甲. 關於大淸皇帝辭位之後優待之條件", "乙. 關於淸皇族待遇之條件", "丙. 關於滿·蒙·回·藏各族待遇之條件"의 총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甲. 關於大淸皇帝辭位之後優待之條件

이제 대청황제가 "공화정체"에 찬성하였으므로, 중화민국은 대청황제의 퇴위 이후 우대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대청 황제는 퇴위 후에도 그 존호가 존속되며 폐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황제는 중화민국이 외국의 군주에 대해 관행적으로 대우하는 예로써 대우를 받는다.

제2조. 대청 황제는 퇴위 후 중화민국으로부터 연금 400만 냥을 받는다.

제3조. 대청 황제는 퇴위 후 잠시 동안 궁정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별궁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제7조. 대청 황제 퇴위 후 그의 사유재산은 중화민국이 보장하고 보호한다.

제8조. 퇴위 시에 조직되어 있던 금위군은 중화민국 육군부의 군사적 지배 아래에 둔다. 기존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급료도 종전대로 지급한다.[48]

이를 통해 선통제에 대한 연금 지급 및 자금성 거주, 황실 사유재산의 보장, 금위군의 유지 등을 보장하였다. 아울러 부속 문서인 「關於淸皇族待遇之條件」에서는 황족의 대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청조의 왕공세작은 예전처럼 유지된다.

제2조. 청조의 황족은 중화민국에 대해 국민과 동등하게 국가의 公權과 私權을 지닌다.

제3조. 청조 황족의 私産은 모두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왕공과 귀족들은 칭호 세습을 포함한 존호 유지를 보장받게 되었다. 병역 면제를 제외한 公私의 권리 역시 공화국의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보유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사유재산은 계속 소유가 허락되며 적절히 보호받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원칙"에 불과한 조항들이었다. 그러나 청조 황실과 만주족은 해당 조건의 진정성 및 명문화, 세부 조항 협상 및 영구 보장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한편 혁명세력은 원세개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대가로 헌법의 제정과 국회의 조직을 관철함으로서 자신들이 목표한 '헌법의 정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혁명을 완성할 것을 기대하였다. 실제 혁명 직후 제정된 『中華民國臨時約法』에서는 제12조에 인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4조에서는 인민의 선거를 통해 국회가 조직되고 국회는 중화민국의 헌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 1912년 8월에는 『中華民國國會組織法』, 『衆議院議員選擧法』, 『參議院

48) 『臨時公報』 第一號, 民國元年2月13日, 3-5쪽.

議員選擧法』 등이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혁명세력의 목표였던 "憲政"이 제도적으로 확립될 것이었다. 아울러 국민당은 1912년 12월부터 실시된 선거에서 국민당은 衆議院 269석(정원 596석), 參議院 123석(정원 274석)을 차지하여 양원 모두 과반 가까이 장악할 수 있었다.[49]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손문이 "후에 총통이 공화, 남북통일에 찬성하여 우리의 의견이 같아졌다. 남방의 인사들만은 오히려 眞意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民國은 거짓 공화라고 보았지만, 나는 그것이 결단코 그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 民國을 다스리고자 하면 신사상, 구경륜, 구수단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안 되니 총통이 적당하다. 그러므로 내가 袁項城을 추대한 것은 결코 오류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총통이 帝制의 뜻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나 이런 생각은 살펴보건대 그러하지 않다"[50]라는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원세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아울러 정당정치의 실현을 전제하면서 "우리 동맹회가 본래 주장하는 바에 세 가지 주의가 있으니 하나는 민족주의요, 둘은 민권주의요, 셋은 민생주의이다. 지금 민족, 민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 民生 문제는 아직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중국은 반드시 우선 이 점에 대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상황을 낙관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민생 관련 사안의 해결을 위해 철로 건설과 외자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데 집중하였다.[51]

그러나 이후 정국은 손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반만혁명론으로 시작된 신해혁명은 민족감정에 호소함으로서 신해혁명 성공의 기본적인 동력은 확보하였으나 동시에 혁명운동의 목표를 단순히 청조의 타도와 공화제의 수립이라는 차원에만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

49) 謝彬, 『民國政黨史』, 中華書局, 2007, 53쪽.
50) 「在上海國民黨歡迎會的演說」(1912.10.06.), 『孫中山全集』 第五卷, 中華書局, 1985, 390-391쪽.
51) 「在國民黨成立大會上的演說」(1912.8.25.), 『孫中山全集』 第二卷, 中華書局, 1981, 408쪽.

때문에 혁명이 성공한 이후 혁명세력에 의한 권력장악이나 그에 따른 새로운 권력구조의 창출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막연하거나 애매한 인식만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는 혁명파가 구체적인 민주공화제의 실현 방안에 대해 원론 수준 이상의 내용을 전개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52] 반면 원세개는 청조의 행정기관 및 관료를 대부분 장악하고 빠르게 국정을 주도하여 나가는 동시에 송교인의 암살 및 의회 해산을 통해 혁명파를 견제하였다.

52) 김형종, 「淸末 革命派의 '反滿'革命論과 '五族共和'論」, 『중국근현대사연구』 12, 2001, 19-20쪽.

Ⅲ. 『優待條件』에 대한 만주족의 기대와 대응

신해혁명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이양은 북양정부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시되었다. 원세개는 신해혁명이 지니는 禪讓性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자신에 대한 권력이양의 정통성 보장과 중화민국이 청조의 판도를 계승하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1] 즉 북양정부는 『우대조건』의 이행이 민국의 신용에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황실 일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대조건』 및 후속 조치를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후 손문을 비롯한 급진 혁명파가 무력 봉기를 통해 청조의 퇴위를 이끌어낸 것을 자신들의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한편 만주족에게 『우대조건』은 정권 이양의 대가로 획득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이는 황실 뿐만이 아니라 만주족 및 종족연합으로서의 기인에 소속된 이들에게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작용하였다. 이를 준거로 만주족은 체제 내에서 각자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청 황실은 소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민국 내에서 존재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고, 만주족 역시 적극적으로 국민으로 변모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대조건』에 대한 집권 세력의 시각과 정책도 변모하였다. 만주족은 이에 대해 『우대조건』의 준행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만주 小朝廷의 성립과 실상

원세개가 이끄는 북양정부는 『우대조건』 제1조에서 존호의 존속과 외국 군

1) 「前淸隆裕皇太後追悼錄」, 『震旦』 1913年 第2期, 250쪽.

주에 준하는 대우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금성의 外朝는 중화민국 정부가 관리하였으나 內朝는 여전히 청조 황실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퇴위 직후 구성된 遜淸皇室小朝廷(이하 '소조정')은 내조에서 계속해서 기능하였다. 선통제는 上諭를 반포하고 선통 연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북양정부는 1914년 12월 「優待條件善後辦法七條(이하 '선후7조')」[2]를 체결하여 소조정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하였다. 1조에서 "청조 황실은 중화민국 국가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며, 『우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폐지한다"고 선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아울러 소조정은 내무부(5조), 護軍·愼刑司(6조) 등의 기구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이중 호군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소조정이 엄연히 독자적인 군사력 및 경찰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에 소속된 만주족은 안정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충성도가 높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한편 愼刑司를 통해 소속원의 경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 이는 자칫 악용될 경우 황실 인사에 의한 반란 모의 등을 경범죄로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였다.

이에 1915년 2월 26일 북양정부는 「護軍執行淸廷員警章程」, 「改組護軍辦法」, 「淸皇室當差人役犯罪處罰章程」 등을 추가로 제정하였다.[3] 「護軍執行淸廷員警章程」 제1조에서는 "호군관리처를 설치하여 (민국) 內務部에 소속시키고 淸廷員警을 傳任하여 稽査와 保衛를 완전히 책임진다"고 규정하였다. 제2조는 "護軍管理處에는 장관 2인을 두고, 都護使 및 都護副使를 充任하여 소속 인원을 감독·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조정을 보위하는 호군은 민국 정부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淸皇室當差人役犯罪處罰章程」은 청 황실에 소속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규정을 제정하여 소조정이 독단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법규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북양정부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4] 따라서 실

2) 『湖南政報』 第十冊, 1915.2.10.
3) 商務印書館編譯所編, 『中華民國法令大全補編』, 發行處 不詳, 1917, 212쪽.

제로 청조가 주어진 기능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신정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묵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소조정은 宗人府를 운영하면서 왕공세작의 작위 승계에 관련된 독자적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국정부는 소조정의 요구에 따라 작위 계승자를 승인하여야 했고 거부권은 없었다. 아울러 왕공 작위의 혁파권 역시 선통제가 보유하고 있었기에, 종사당을 결성하고 반정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종사당의 왕공들에 대해 제제조치를 가할 수 없었다. 이들 기구는 1924년 馮玉祥이 북경을 점령하고 선통제가 자금성에서 추방되기 이전까지 일반 행정 기능을 제외한 의례와 재정, 사법 기능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섭정으로 임명된 보국공 愛新覺羅 溥儁과 葉赫那拉 那桐이 이를 관장하면서 소조정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였다.[5]

북양정부의 이러한 황실에 대한 예우는 융유태후의 장례식과 선통제의 결혼식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대중에게 표면화되었다. 특히 국체변환 직후인 1913년 거행된 융유태후의 장례식은 평화적 정권 교체의 상징이자 오족공화의 증거로 널리 선전되었다.[6] 제례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황제의 권위와 소조정의 독자적 행보가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다는 것과, 전통적 제왕학 수업 이외에 레지널드 존스턴(Reginald F. Johnston)과 같은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군주로서의 덕목을 함양하고자 하였던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대화된 서구 학문과 교양에 능한” 황제의 이미지는 정권 이양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북양정부의 대외 선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황제의 존재가 부각된다면 오히려 북양정부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내외적 여론이 선통제에게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통제 및 황실의 주요 인사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

4) 俞鹿年, 『中國官制大辭典』, 中華書局, 2020, 526쪽.

5) 劉平·孫昉, 「溥儀小朝廷的政治史研究」,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15年 3期, 98-99쪽.

6) “清太後薨逝, 後宮即稱瑜貴皇太妃爲皇太後. 因瑜妃爲同治帝之妃, 而宣統帝系兼祧兩廟, 故隆裕薨後, 故瑜妃稱爲皇太後, 蓋當然有此資格. 惟清帝目前僅頒穿孝諭旨一道, 至奉瑜妃爲皇太後之旨, 刻尚未降雲.”(「清太後崩禦詳記」, 『盛京時報』, 1913.2.28.)

것은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하였다.

여기에 선통제가 상징적인 “皇”으로서의 기능과 권위만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외세가 이를 이용하여 황실과의 직접 결탁을 통해 북양정부를 전복시키고 복벽을 실현하여 중국 내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할 개연성이 충분하였다. 실제 북양정부의 위기가 발생할 시 일본에서 간혹 이러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던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후술할 종사당의 활동 역시 북양정부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1912년 국체변환 당시 이에 반대하던 숙친왕 등 일부 황실 일원들은 동삼성에서 종사당을 설립하여 일본과 연합하여 滿蒙獨立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들이 실제 군대를 양성하고 일본 및 중국 내 서구열강의 조계에서 지속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만주족에 의한 체제 위협에 대한 우려는 배가되었을 것이다.[7]

이에 청조 황실은 동북으로의 귀환 대신 자금성 내의 소조정에 머무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연소한 선통제와 경험이 부족한 황실 인사들은 “유예된 퇴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 이는 선통제의 성장을 기다리면서 혁명파가 몰락할 것을 바라는 훗날에 대한 기약일 수도 있었다. 혹은 현실을 타개할 방법이 없던 만주 황실이 위기에 대한 유예를 통해 당장의 곤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도 모른다. 당초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후 청조 황실은 서서히 분열되어 갔다. 협상을 좌우했던 경친왕은 天津으로 이주하여 一身의 안위를 추구하였다.[8] 융유태후는 국체변환 직후인 1913년 2월 사망하였다. 선통제의 상징성과 정통성은 중국 내에서 상당 기간 유효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황제 자신이 너무 연소하였다. 소조정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전무하였고, 따라서 북양정부의 군벌 또는 혁명파와 효과적인 교섭을 진행하기도 어려웠다. 이는 청조 황실의

7) 「徵求八旗生計之意見」, 『盛京時報』 1912.4.5.
8) 「我父慶親王載振事略」,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天津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天津文史資料選輯』 第44輯, 天津人民出版社, 1988년 7월, 205쪽.

정치적 입지 축소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해혁명 당시 혁명세력 내에 소조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민족간 갈등 및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통해 외세에 의한 영토의 과분을 막고자 하였던 목적 때문에 혁명 당시에는 후자의 논지가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그 간극이 청조의 몰락과 신정부의 수립을 계기로 순식간에 좁혀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중화민국이 "오족공화"를 국시로 제시한 이후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고 봉합된 것처럼 보였던 혁명파 내부의 견해차는 1917년 장훈의 복벽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북양정부의 중심이었던 원세개 사망 이후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던 1917년 7월 1일, 장훈이 돌연 선통제의 복벽을 추진하여 12일 만에 진압되었다. 그 배경에는 북경에 거주하던 순친왕 등 황실 세력 및 청조 유신들과 복벽 이후 군주입헌제 실시 등에 대해 합의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벽이 급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9] 공식적으로 이는 신국가 체제에 대한 분명한 반란으로 규정되었으나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 康有爲, 徐世昌 등 연루된 인원의 상당수가 청조의 유신 또는 군벌이었고, 그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고려해야 했다. 또한 당시 중국의 혼란 상태를 고려하여 더 이상의 소요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혁명"과 "공화"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일반 민중들에게 황제가 신변의 변동 없이 어딘가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곧 국가의 존망을 뒤흔들 만한 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10] 루쉰이 『아Q정전』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일반 민중은 혁명의 목적과 국체변환 등의 본질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소조정이 단순히 북양정권이 획득한 "정권의 트로피"로 간주되었다

9) 阿部由美子, 「張勲復辟と滿蒙王公の反応」, 『滿族史研究』 6, 2007, 50-51쪽.
10) 이종민, 『흩어진 모래』, 산지니, 2013, 146-147쪽.

면 이들은 복벽 실패 당시 내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수천년 동안 존재하였던 군주에 대한 “충” 관념은 쉽사리 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군벌 중에 민국의 총통과 소조정의 섭정왕을 모두 겸하고자 했던 사례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벌세력이 충성을 바칠 대상이었던 원세개는 사망하였고, 변경된 정치체제는 군벌과 민중 모두에게 생소하였다. 이에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정권을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 충성의 대가로 자신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줄 절대적 존재가 필요했다. 이에 분열된 군벌은 베이징 입성과 동시에 소조정에 대한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자신들의 유교적 덕망과 정통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서세창이 복벽사건 직후인 1918년 총통 당선 후에 만주족 왕공 및 청조의 유신들과 회동하면서 자신을 “어린 황제의 섭정”이라고 칭하였던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11] 혁명세력은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와 입헌 및 국회를 기반으로 하는 政體를 변환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군주를 대체할 새로운 “正統”의 창조에는 실패하였다. 혹은 입헌공화에 걸맞게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법통을 세워 국가의 수반인 총통이 교체되더라도 정권의 합법성을 유지하여야 했으나 전술한 것처럼 이 역시 불가능하였다. 이에 구체제의 정통을 상징하는 황제와 소조정이 여전히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족공화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소조정에 대한 ‘예우’는 계속 유지되었다. 실제 혁명세력과 북양정권 모두에서 『우대조건』을 폐지하고 선통제를 평민으로 강등시키자는 논의가 전개되기도 했으나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12] 復辟 당시 謹太妃·瑜太妃를 비롯한 소조정의 인사들은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13] 연소한 황제가 비록 장훈에게 동의하였다고 하나 그 사리판단이 올바르지 않았을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바였다. 심지어 『성경시보』는 선통제가 복벽 사태에 휩쓸리면서 그 여파로 열병에 걸렸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14] 이

11) 阿部由美子, 앞의 논문(2007), 59쪽.
12)「清室派員懇請不廢優待條件」,『盛京時報』1917. 7. 18 ;「廢止清室優待條件芻言」,『盛京時報』1917.7.28-29.
13)「清室憤恨張曛」,『盛京時報』1917.7.4.

렇게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함과 동시에 7월 19일 소조정은 복벽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15] 이에 북양정권은 '황제는 자주적 행위자가 아니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황실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소조정은 황제의 결백과 "오족공화"의 실현 등을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기존 『우대조건』에 따른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선통제는 청조 유신들의 협조 하에 서세창에게 360만 원에 해당하는 애국공채를 지급하였고, 오패부 등에게 거액의 자금과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우호적인 군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손문을 중심으로 한 급진 혁명파는 장훈의 복벽 직후 새롭게 남방정부를 구성하고 호법전쟁을 일으켰다.[16] 이들은 공화체제의 전복 시도에 참여한 선통제를 반역자로 규정하고 『우대조건』의 폐기와 선통제의 처형을 요구하였다.[17]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체변환과 정권 이양의 정당성을 담보해 준 "오족공화"에 대한 급진 혁명파의 논조는 혁명 전후 국가의 안정을 위해 오족의 평등을 논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한족 중심의 종족주의성을 강하게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 3월 6일 손문이 발표한 「在中國國民黨本部特設駐粵辦事處的演說」에서는 "중국은 영토가 드넓고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독립국에 불과하다. 광복 이후 세습적 관료, 완고한 舊黨과 復辟을 주장하는 宗社黨이 하나로 합쳐 오족공화를 만들어냈다. 근본적인 잘못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오족의 인구수를 말하자면 티베트인은 400만-500만 명에 불과하다. 몽골인은 100만 명을 넘지 못한다. 만주족은 겨우 수백만 명에 불과하다. 회족은 많지만 그 대부분이 한인이다. 지리적인 형세에 대해서 논하자면 만주는 일본인의 세력 기반에 있으며, 몽골은 러시아의 세력범위에 들어가 있고, 티베트는 영국의 품 안에 있다. 그들 전체가 자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

14) 「宣統帝熱病就疾」, 『盛京時報』 1917.7.24.
15) 「淸室否認復辟上諭」, 『盛京時報』 1917.7.19.
16) 「廣東省議會北伐論議」, 『盛京時報』 1917.7.18.
17) 「孫文近日之主張」, 『盛京時報』 1917.7.12.

하다. 우리 한족이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된다. … 만, 몽, 회, 장을 우리 한족에 동화시켜 하나의 커다란 민족주의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 오늘날 민족주의를 말하자면 오족을 함께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족의 민족주의를 논해야 한다. … 한족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동화시켜 … 한족을 중화민족으로 고쳐서 완전한 민족국가를 조직한다"[18]고 주장하였다. 손문은 이를 통해 기존의 오족공화는 혁명의 명분이 아니라 구세력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소수민족의 인구가 적고 그 근거지가 외세에 점령당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五族이 평등한 공화체제의 성립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이는 외세의 세력이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자칫 오족공화론이 오히려 주변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19]

따라서 손문은 이후 五族共和의 개념보다는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 개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해 나갔다. 이러한 생각은 1924년 발표된 「三民主義」에서도 "중국의 민족에 대해 논하자면, 총인구는 4억 명으로, 그 가운데 불과 수백만 명에 불과한 蒙族, 백여만 명의 滿族, 수백만 명의 藏族, 수십만 명의 回族이 혼재되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총규모는 1,000만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자면 4억 명의 중국인은 거의 漢族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동일한 혈통, 같은 언어·문자, 동일한 종교, 같은 풍속과 습관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로 하나의 민족이다"로 표출되었다.[20] 비록 호법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들의 주장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혁명세력과 청조 황실과의 거리감은 한층 더해졌을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과 "중화민족" 개념은 이후에도 국민당 정부에게로 오롯이 계

---

18) 「在中國國民黨本部特設駐奧辨事處的演說」, 『孫中山全集』 第五卷, 中華書局, 1981, 472-481쪽.
19) 王柯 著, 김정희 譯, 『민족과 국가: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2007, 304-305쪽.
20) 「三民主義」, 『孫中山全集』 第9卷, 中華書局, 1981, 267쪽. 1921년과 1924년의 발표 내용에서 몽골인과 만주족의 인구수를 언급한 내용 중 수치상으로 변동이 있다. 이것이 의도적 변화인지 단순한 오류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승되었다. 1924년 1월 「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宣言」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난 이후 만주족에 의한 전제는 이미 사라졌다. 따라서 국내의 여러 민족은 평등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당의 민족주의가 바라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국민당은 향후 민족주의의 요구를 관철하고 국내 각 민족을 설득하여 국민혁명 운동 중에 공통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1] 이어 「國民政府建國大綱」에서는 “국내의 약소민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자치를 자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삽입하였다.[22] 이는 민족 간에 동등한 입장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한족을 위주로 통일된 국가 내부에서의 자유를 의미하였다. 손문 사후 1926년 1월에 발표된 「中國國民黨第二次全國代表大會宣言」에서는 아예 자치권·자결권과 관련한 언급은 사라지고 일반적인 의미의 민족혁명 운동만 언급되었다. 이어 1926년 3월 「中國國民黨第三次全國代表大會宣言」에서도 “중국 영내의 민족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삼민주의 아래 일치단결하는 것만이 외래 제국주의 세력의 야욕을 완전히 물리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단일한 공동체 결성을 강조하고 있다.[23] 이 논조는 후술할 남경 정부의 기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장훈의 복벽이 초래한 오족공화의 균열은 만주족 및 기타 민족들의 문제와 결합되어 한족 중심주의를 격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29년 3월 발표된 「對於政治報告之決議案」에서는 “민족주의에 있어서는 한, 만, 몽, 회, 장 인민이 밀접하게 단결하여 하나의 강고하고 힘있는 국족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쟁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명시하였다.[24] 이는 1936년 5월 5일 공표된 『中華民國憲法草案』에 포함됨으로서 정권의 기조가 되었다. 신해혁명 이후 명분으로나마 언급되던 오족공화의 이념은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던 것이다.

---

21) 「中國國民黨第一次全國代表大會宣言」, 위의 책, 114-118쪽.
22) 「國民政府建國大綱」, 위의 책, 127쪽.
23) 「中國國民黨第二次全國代表大會宣言」, 『政治周報』 第六·七期合刊, 1926年 4月, 2쪽.
24) 「中國國民黨第三次全國代表大會對於政治報告之決議案」, 中央民衆運動指導委員會編, 『地方自治方案彙編』, 發行處 不詳, 1935, 14쪽.

혁명 세력이 이렇게 입장을 전환하는 가운데 군벌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소조정의 지위도 위태롭게 되었다. 결국 1924년 11월 풍옥상의 베이징 입성과 더불어 『修正淸室之優待條件(이하 "수정우대조건")』이 반포되면서 선통제의 존호 폐지 및 出宮이 결정되었다.

대청 황제는 공화국과 그것을 구성하는 다섯 민족의 정신에 진심으로 공감을 표하고자 하며, 공화국의 여러 제도를 더 이상 위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주 황실 우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금일부터 선통제는 황제의 존호를 영구히 폐지한다. 이후에는 법률상 공화국 시민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향유하기로 한다.

제2조. 이 조건으로 수정한 이후부터 공화국 정부는 청조 황실에 해마다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북경의 빈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장 설립에 200만 달러를 지출한다. 만주 기인 출신의 빈민은 고용을 우선한다.

제3조. 청조 황실은 원 '우대조건'의 제3조에 따라 금일 자금성을 떠나야 한다. 이후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공화국 정부가 계속 지기로 한다.

제4조. 청조 황실의 종묘나 황릉에서 거행되어 온 제례는 영구히 유지되며, 공화국은 종묘와 황릉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경비병을 파견키로 한다.

제5조. 청조 황실의 사유재산은 황실에 귀속되며 황실이 전적으로 향유한다. 공화국 정부는 그 재산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단, 모든 공공 재산은 공화국 정부에 귀속키로 한다.[25]

이는 소조정의 붕괴와 팔기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대조건』 및

25) 「修正淸室優待條件」, 『政府公報』 第3097號(民國13年11月6日), 4694-4695쪽.

후속 조치에 의해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였던 만주족의 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 그러나 풍옥상 역시 원세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세의 간섭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황실과 다른 군벌 세력의 연합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우대조건』을 일방적으로 단번에 폐지할 수는 없었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지나칠 경우, 청조 유신들과 만주족들의 대규모 반발을 초래하여 민중 폭동 등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명목상 '수정'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황실의 추방과 감시' 전략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풍옥상의 의도와는 달리 부의는 천진의 일본 조계로 거주지를 옮겨 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 및 감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이제 황제 칭호를 상실한 부의는 천진에서 祖業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대와 관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부의 및 측근들은 청 황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장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량은 1924년 4월 10일 "文化故物과 자선교육을 구실로 하되, 토론을 준비하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대중의 여론을 돌리고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한 후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사람들의 조력을 얻고 외부의 모욕을 방어함으로써 무형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26] 이는 청조 황실의 위신과 세력 회복을 위한 여론 형성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었다. 鄭孝胥 역시 "그러므로 지금 황제가 중흥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군대의 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聖德이 中外에서 명성을 떨치게 할 것이니 반드시 군주의 날을 바라는 이들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충고하였다.[27]

부의는 이에 따라 우선 활발히 외부와 접촉하였다. 1925년 8월에는 영국, 일본, 미국의 총영사 및 사령관들과 회동하였으며, 1926년 10월에는 캐나다 총독으로 임명된 윌링던(Lord Willingdon)과 회동하는 등 국제무대에 끊임없

26) 「淸室復辟陰謀之暴露」, 『盛京時報』, 1925.8.7.
27) 『鄭孝胥日記』, 1927.6.23., 中華書局, 2149쪽.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The North-China Daily News*,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등의 서구 신문 역시 부의와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그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었다.[28]

아울러 부의는 私財를 활용하여 민간에 대한 구제를 위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서 민중의 호의적인 여론과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부는 대부분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청조 황실에 대한 여론을 개선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25년 5·30 사건이 발발하였을 때에 북경에 거주하고 있던 순친왕 재풍에게 연락하여 황가의 園林인 頤和園을 20일 동안 일반에게 공개하되, 兩角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그 일부를 상해 상공회의소에 보내어 민중의 구제에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29] 아울러 1931년 황하, 장강, 회하 유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발하여 피해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섰을 때 부의는 자신이 5만 元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천진 소재 일본 조계의 건물 한 채와 진주 172개를 수재 복구에 사용하도록 기부하였다.[30] 소조정이 폐지되기 전 부의의 민중 구제 활동이 북경에 죽 공장을 설립하고 기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팔기제도 하에 속했던 이들을 향한 것에 비해 이제 그 대상이 넓어졌던 것이다. 이는 만주족만을 대상으로 한 구제활동이 자칫 반란 선동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촉발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의도에서건 기부와 구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하기를 희망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

28) 대표적인 기사는 다음과 같다. WORD has reached Shanghai from Tientsin to the effect that Mr. Henry Pu Yi,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927.2.19. ; THE "Eastern Times" publishes a telegram reporting that the Tientsin District Court has awarded judgment in favour of the plaintiff in the case of "Mr. Henry Pu YI"(Hsuan-tung, the boy Emperor) v. the Hsin Nieh Bank for the recovery of $90,0000 which, plaintiff alleged, he had deposited in that institution., *The North-China Daily News,* 1929.10.22.

29) 「溥儀亦關心滬案」, 『大公報』, 1925.6.27.

30) 「濟助武漢大水災民湘·鄂·蘇等八省」, 『盛京時報』, 1931.9.26.

그러나 부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정부 집권 이후 만주족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와 억압 정책은 그대로 이어졌다. 국민당 정부는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기치 아래 풍옥상 정권의 『수정우대조건』을 계승하고 존중함을 발표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 청 황실과 만주족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방치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이들은 원세개 및 군벌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청조 황실과의 접촉 경로를 복원하거나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후술할 부의의 만주국 가담 직전에 직접 협상에 나섰던 高友唐은 南京國家政府監督委員會 소속이었으나 장개석과 긴밀한 관계는 아니었다. 부의와의 관계 역시 천진에 체류할 당시 몇 번 연회에 참석하여 안면을 익혔던 정도였다. 장학량, 宋子文 등이 별도로 부의 및 황실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던 상황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경미한 인연을 지닌 인물을 협상에 내보낼 정도로 장개석 정부의 만주족 황실에 대한 친밀도와 장악력이 매우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무관심은 1928년 7월에 발생한 東陵盜掘事件 및 후속 대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국민당 제6군단 제12군 軍長 孫殿英이 청조 역대 황제들의 무덤인 동릉을 도굴하여 청조의 유물을 대량으로 탈취하였다. 이는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국민당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와 처벌만으로 마무리지었다. 청 황실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다. 부의를 비롯한 청조 인사들은 이에 대해 격렬히 항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고 흐지부지되었다.[31] 뒤이어 1931년 행정원이 청조 皇陵의 관리를 北平文化委員會에 담당시키고자 하였다. 부의는 이 소식을 접하고 청조 황릉은 公民 祖瑩으로서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 영구히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공론화하였다.[32] 그러나 장개석 정부는 호한민과의 분쟁 등 국민당 내부의 균열, 전술한 수해 등 다른 중요 현안

31) 애신각라 부의, 앞의 책, 282-288쪽.
32) 袁公瑜, 「溥儀「捐款濟貧」行爲與「還政於淸」意念之連繫(1923~1931)」, 『淸雲學報』 第三十卷 第二期, 中華民國99年 4月, 132쪽.

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결국 부의의 주장은 또다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동릉 도굴 사건 이후 벌어진 기타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부의의 행동 전략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기존에 민생문제 등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며 민감한 정치 상황에는 방관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던 것에서 벗어나, 곤경에 처한 만주족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의 힘을 의지하여 국가체제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1931년 이후 이들이 만주국 수립에 가담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관내 만주족의 정치·사회적 권익 추구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 만주족의 인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청말이래 八旗生計會 등 만주족 단체들의 성명문에서는 "팔백만 팔기인"으로 기술하였고, 손문은 1920년대 각종 연설문에서 "수백만의 만주족" 또는 "백수십만여 만주족"이라는 엇갈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淸朝續文獻通考』에 기록된 八旗戶의 수에 근거한다면, 1911년 당시 북경, 산해관, 성도 등 24개 지역의 팔기는 368,548호에 2,301,110명으로 추산된다. 1908년 奉天咨議局의 조사에 따르면 봉천성 2,309,318명, 길림성 391,522명, 흑룡강성 252,73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를 합산하면 청말 만주족의 총 인구는 대략 5,260,686명 정도이며 그 절반 가까운 수가 동삼성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3]

한편 로즈(E. J. M. Rhoads)의 추산에 따르자면, 청말 팔기 병력은 경사에 13만의 장교와 사병, 약 2만의 包衣가 있었고 지방 주방팔기의 병력은 약 11

33) 王堯 主編, 『滿·錫伯·赫哲·鄂溫克·鄂倫春·朝鮮族文化志』, 上海人民出版社, 1998, 4쪽.

만 정도였다. 이를 합하면 대략 30만 정도가 팔기군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청말 남성기인 중에 기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략 10%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남성 인구 300만, 여성 인구 300만으로, 청말 만주족 공동체의 구성원은 최소 약 600만 명으로 추정된다.[34] 이외에 비기병 기인의 수까지 합친다면 만주족 단체가 주장한 800만 명이 가장 근접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계산을 적용하면 당시 북경 일대에 거주하던 만주족은 최소 1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정치를 근거로 하자면 전체 인구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소수의 인구로 지배민족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다. 이는 만주족은 혁명 초기 도처에서 각종 탄압과 박해의 대상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혁명파 수뇌부의 만주족에 대한 용만론과는 달리 혁명 이후 민중들의 일상에서는 반만주의가 만연하였다. 만주족에 대한 잔인한 처사는 단순히 혁명군 개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무차별적 과잉행동이 아니었다. 1911년 혁명 당시 湖北軍政府都督 黎元洪의 이름으로 발표된 첫 번째 규정에서는 "만주족을 숨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발표에서 "할양 지역을 지키는 자는 포상하고", "교회를 지키는 자는 포상하고", "외국인을 다치게 하는 자는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서술하였다.[35] 혁명전쟁에 휘말린 외국인은 지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 반면, 만주족은 최악의 외부인이자 적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만주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이민족 정부를 향한 오래된 반감이 더해져 혁명 초기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몰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오족공화"가 공식적으로 명시되기 이전 나타났던 만주족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은 혁명 지도부와 일반 민중 사이에 나타난 이같은 인식의 괴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중화민국 성립 이후 공식적으

---

34) E. J. M. Rhoads, 『*Manchus & Han :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27-34.

35) Shao Dan, 『*Remote homeland, recovered borderland : Manchus, Manchoukuo, and Manchuria, 1907-1985*』,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1, pp.63-64.

로는 민족의 평등이 선포되었으나, 몇백 년간 지속된 지배-피지배, 특권층-평민층 관계로 얽히며 형성된 반감은 쉽게 사그라질 것이 아니었다. 과도기임을 증명하듯 『民報』를 비롯한 각종 신문에는 "五族共和", "하나의 중화민족"과 "반만정서"에 관한 글이 동시에 실렸다.36) 이에 북양정부는 민족간 갈등과 배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국 직후인 1912년 4월 13일 「泯除五族畛域令」에서 "현재 국체가 이미 개정되었고, 오족이 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였으니 반드시 경계를 모두 제거해야 하고, 情誼가 날로 화합하여야 한다 …… 바라기는 五大族 신사와 遺老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끈기 있게 견지하며, 본보기가 되고 널리 추천하여,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함께 옛 견해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돈독하게 하여 연합을 실천하여 우리 다섯 민족 서로간의 親愛가 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을 독려하였다.37) 뒤이어 5월 24일 「禁止排滿書籍令」에서 "중화민국은 다섯 민족의 공동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마땅히 감정의 연결을 통해 서로 협동과 통일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만정서를 버릴 것을 호소하였다.38)

전술한 바와 같이 「손위조서」에서는 "모든 시기가 지나면 인민과 나라 안은 안정될 것이고 여전히 滿·漢·蒙·回·藏 5족의 모든 영토는 하나의 大中華民國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제 "오족공화"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의 융합책이자 구호로서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혁명 초기에 발표된 문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손문이 1912년 1월 1일 임시대총통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臨時大總統就職宣言書」에서 "국가의 근본은 인민에게 있다. 漢·滿·蒙·回·藏 등의 諸地를 합쳐 一國으로 하고, 漢·滿·蒙·回·藏 등의 諸族을 합하여 一人으로 하니, 이를 민족통일이라고 한다"고 명시하였다.39) 뒤이어 발표된 1월 5일 「臨時大總統宣告各友邦書」에서는 "滿人이 民國의

36) 레지널드 존스턴, 앞의 책, 615-616쪽.
37) 民初時期文獻編輯小組 編輯, 『中華民國建國文獻:民初時期文獻』 第一輯, 國史館, 1997, 11쪽.
38) 「禁止排滿書籍令」, 위의 책, 17쪽.
39) 「臨時大總統就職宣言書」, 『孫中山全集』 第二卷, 中華書局, 1982, 2쪽.

법적 권한(法權) 내에서 安居樂業하는 것에 관해, 民國은 당연히 차별없이 평등하게 대하며 이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특별히 명시하였다.[40] 신해혁명 당시 혁명세력의 외교 및 교섭 업무를 담당했던 오정방 역시 "군민이 기의를 일으킨 목적은 漢·滿·蒙·回·藏을 단합시켜 하나의 커다란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인의 사리사욕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滿·蒙·回·藏과 함께 봉건적인 노예로서 느꼈던 고통을 벗어나 공화국 속의 같은 형제가 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는 만주족에게도 이익이 된다. … 국민에게는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장래의 대총통에 대해서도 漢·滿·蒙·回·藏의 각 인민은 모두 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인 권리에서도 우열은 결코 없다"고 호소하며 이탈을 방지하려고 하였다.[41] 이어 남경 임시정부 參議院이 1912년 3월 10일 작성한 「中華民國臨時約法」에서도 "중화민국 인민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종족·계급·종교의 구분이 없다"고 명시하였다.[42] 이러한 기조는 이후 원세개가 이끄는 북양정부 내에서도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청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혁명 세력의 현실적 타협책이자, 적절한 대비 없이 국체변환을 맞이하게 된 청조 혹은 이를 계승할 원세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해관계가 맞닿은 지점이었다. 이후 "오족공화"는 만주족이 북양정권과 혁명 세력 및 국민당 정부를 상대로 평화적 국체변환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한편 청조의 비폭력적인 정권 교체 대가로 체결된 『우대조건』, 『保護旗人公私財産文』 등 그 처우에 관한 여러 조약들은 이후 만주족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청원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수차례 활용되었다. 만주족은 이를 배경으로 하여 청이 멸망한 후에도 근대적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康有爲, 孫文 등 유력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내 만주족은 이를

40) 「臨時大總統宣告各友邦書」, 『孫中山全集』 第二卷, 中華書局, 1982, 10쪽.
41) 「復內外蒙古王公電(1912.1.14)」, 『中國近代人物文集-伍廷芳集』, 中華書局, 1993, 441쪽.
42) 「中華民國臨時約法」, 中國史學會 主編, 『辛亥革命』 第八卷, 上海人民出版社, 2000, 23쪽.

토대로 “국민으로의 전환”, “생계와 관련된 약속 이행” 및 “동등한 권리 보장”을 추구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를 정치적 권리의 확보와 사회적 지위의 보장 도모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치적 권리의 확보

신해혁명 당시 혁명세력 내에서는 “五族共和”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손문을 비롯한 급진 혁명파는 일찍이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구상하였고, 張騫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 혁명파는 청말부터 제기된 “五族共存論” 등을 계승하였다. 이렇게 정치적 구호와 이념으로서의 “오족공화”를 둘러싼 해석이 일치되지 못하는 동안, 북양정부는 만주족을 견제하여 그 정치·경제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통치력과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술한 “三化” 정책 중 “化整爲零”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몽·장족의 경우 혁명 직후인 1912년 전담부서로 國務院 소속의 蒙藏事務局[43]이 설립되었다. 이는 다시 1914년 總統部 소속의 蒙藏院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민족에 대한 제반 처리 규정이 구체화되었다.[44] 몽·장족의 경우 주로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기존에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 크지 않았던 데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비교적 강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계의 필요성이 낮았다. 다만 전술한 외몽골의 경우처럼 청말부터 지속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중국의 강토로부터 분리될 위험성이 상존하였고, 신해혁명 직후 이들 지역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독립을 막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했다. 이는 원세개가 “현재 정치체제

43) 종래 청조는 몽장족에 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1638년 理藩院을 설치한 바 있다. 이것이 1906년 관제개혁을 통해 理藩部로 개칭되었는데, 蒙藏事務局과 蒙藏院은 모두 이를 계승하였다. 趙雲田, 「清朝的理藩院」, 『北京觀察』, 2013年 第5期, 73쪽 ; 유용태, 「중화민족론과 동북 지정학, ‘동북공정’의 논리 근거」, 『환호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2006, 197쪽.

44) 陳端雲, 『現代中國政府』, 吉林文史出版社, 1988, 30, 34쪽.

는 개혁을 이루어 5대 민족으로 구성된 공화를 성취하고 하나로 평등해졌다. 본 대총통은 굳은 결의로 서약한다. 모든 낡은 악폐를 변혁시키고 몽·장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민중의 기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겠다"[45]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천명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주족에 대해서는 1912년 7월 內務部 부속의 籌判八旗生計處를 설치하여 생계문제 해결을 전담하게 한 것을 제외하면 민족문제를 처리할 총괄적인 사무기구나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자금성 내에 위치한 소조정이 이미 만주족을 대표하는 정치적 기구로서의 정통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소조정이 융유태후 사후 정치적 의결기구 혹은 정책기구의 성격이 약화되어 종인부의 관리 등 의례적인 것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당시 소조정의 정점에 있던 선통제가 연소하여 정무를 제대로 돌볼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이를 대체할 정치적 역량을 지닌 황실 인사 역시 부재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오히려 만주족에 대한 전담기구의 부재는 만주족에 대한 정치 배제와 점진적 해체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실제 혁명 직후인 1912년 3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정부 요직에 만주족이 한 명도 등용되지 않아 五族平等主義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원세개가 직접 만주족 한 명을 국무대신으로 임명할 것을 지시하였다.[46] 만주족 내에 혁명 당시 국체변환과 원세개에게 우호적이었던 경친왕, 재도와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 조치는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 만주족 정권의 영향력이 신정부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 배제이거나, 무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청조 황실에 대한 거리두기를 통해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그들이 내세운 "오족공화"의 이

45) 「中國大事記-勸諭蒙藏令(1912.3.25.)」, 『東方雜志』 第8卷 第11號, 6-7쪽.
46) 「民政府組織添用滿員」, 『盛京時報』 1912.3.23.

념에는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다. 기존 집권세력이었던 만주족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및 각종 정치적 대립으로 혼란했던 당시 상황 하에서 이들에 대한 특별 대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종래의 시각 역시 타당하다. 그러나 중화민국 건국 당시 "五族共和"의 주체로 지목되었던 한족 이외의 민족 중 유달리 만주족에게만 정무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정치 일선에서의 "의도적 배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우대조건』 및 후속 조치에서는 만주족이 한족, 혹은 공화국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원론적인 조항만 삽입되어 있을 뿐, 정치적 권리의 보장 방법 및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북양정부는 만주족에게 별도의 선거권과 특별 의석 할당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만주족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하고 견제하고자 하였다. 실제 북양정부는 출범 직후 몽·장족에게는 의회 구성시 특별 의석을 할당하였으나 만주족에 대해서는 '거주지가 흩어져 있고 한족과 이미 동화되어 별도의 의석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만주족 인사들이 여러 차례 특별 선거권과 의석 할당을 요구하였으나[47] 쉽게 관철되지 못하였다. 융유태후 역시 1912년 4월 의회 내 만주족 의석수 할당을 위해 베이징에 거주하는 王公·貝勒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에 원 총통이 승인하였던 바와 같이 황실 일원에 대한 별도의 의석수를 양원 의회에 할당할 것을 요청'할 것이 결정되었고, 대표들을 선출하여 이를 원세개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원세개는 황실 내 종사당 가담자 색출, 국내외 종사당 해산 및 황실 각부서의 정리를 선결과제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융유태후는 황실 역시 종사당의 폭동을 걱정하고 있고, 황제의 復位에 반대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48] 숙친왕 등 종사당 관련 인사를 소환하여 해산을 종용하였다.[49]

즉, 청 황실은 혁명 직후 연소한 선통제를 전면에 내세워 통치권에 간섭하

47) 「八旗議爭議員權」, 『盛京時報』 1912.3.29 ; 「八旗淸選議員之上書」, 『盛京時報』 1912.4.20.
48) 「淸太後又召會議之述聞」, 『盛京時報』 1912.4.3.
49) 「宗社黨諭令自行解散」, 『盛京時報』 1912.3.16. ; 「淸太後深明大義」, 『盛京時報』 1912.4.17.

기보다는 북양정부 체제 하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북양정부는 종사당과 황실의 연계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이들의 해산을 선결과제로 내세우면서 만주족에게 안정된 정치적 입지를 부여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다.[50] 만주족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채택하기에는 이들이 신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북양정부는 "만주족 정치 참여의 의도된 지연"을 통해 이들이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도태되어 자연스럽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의심할 수 있겠다.

이에 관내 만주족은 滿族同進會를 중심으로 북양정부가 정치자원 배분 과정에서 평등성을 결여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북양정부는 민족별 할당제를 통한 선거 방식을 거부하고 지역주의를 채택하였으나, 화교의 사례처럼 예외적인 특권을 보장하는 등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에 만주족은 비폭력적인 정권 교체 대가로 체결된『우대조건』및 제반 규정을 활용하여 청원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내 만주족은 이를 토대로 "국민으로의 전환", "동등한 권리 보장" 등을 추구하였다.

이에 더해 만주족은 지식인과 황실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화국 국민으로의 편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오족공화"의 이념 아래 성립된 공화정체 하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1912년 2월 21일『臨時公報』에「八旗全體上袁大總統函」을 발표하여 "대청황제가 이미 퇴위하였으므로 … 우리 旗人은 衆志를 모아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데 힘쓸 것이니, 곧 民生의 행복, 동양의 화평이 모두 이에 달려 있기 때문이며, 비단 팔기 일부분의 慶幸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51]라고 공화정체의 수용에 찬동하였다.

아울러 만족동진회가 1912년 6월 八旗軍警界에게 "지금은 五族共和의 시대

---

50)「內廷會議宗社黨事」,『盛京時報』1912.4.5.

51) "大淸皇帝業經遜位, 統一政府尚未成立. ……我公俯從衆志, 力任其難, 則民生幸福東亞和平, 胥基於此, 固不僅八旗一部分之所慶幸也. 惟希鑒察. 八旗全體同叩."『臨時公報』, 1912.2.21.

이다. 우리 旗人 또한 五族 속의 一族으로, 우리 중국의 존망에는 旗人들 또한 책임을 진다. …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과 兵行政에 종사하는 것은 같지 않다. 여기에는 국가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니, 누구라도 회피할 수 없다"[52]고 논한 것은 이들이 언제든 반체제 세력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내부에서 단속하려고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五族共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五族"의 일원으로서 신중국을 유지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만주족은 각종 단체를 구성하고 그 宗志에 "공화의 행복을 함께 누린다"고 명기하였다. 이들은 북경과 동삼성을 중심으로 『우대조건』 및 부속조약에 명기된 만주족의 특권에 대한 지속적 보호와 생계문제의 해결 및 공화국민으로서의 권익 추구를 모색하였다. 이들 단체의 일차적 목표는 대부분의 만주족이 당면한 생계문제의 해결이었다. 생계유지의 문제는 만주족에게는 당장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가 걸린 민감한 문제였으므로 청조의 멸망으로 이산된 만주족을 규합할 구실이 되었으며, 혼란한 시기에 대규모 소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양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였다.

이중 1912년 4월 황실 종친 和碩睿親王 魁斌, 熙彥이 주도하여 설립한 滿族同進會는 북양정부와의 협조를 기조로 하여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들은 북양정부를 상대로 만주족의 정치적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53] 이는 이들이 "공화가 성립하고 오족이 동등하여졌으나 만주족은 북경 내외의 각 성으로 분거하여 단체의 세력이 결여되고 흩어졌다. 지금 건국 초기에 애국정신을 제창하고 국가를 경외하며 … 만주족은 비록 선량하나 아직 의식이 융합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만주족은 필히 정치에 참여하여야 하며, 하물며 팔기의 생계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무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만족동진회를 창립하여 만주족이 공화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정부와 공모하여 최선의 정책을 실행한다"고 장정에서 밝힌 것에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북양정부는 1912년 『中

52) 戴迎華 著, 『淸末民初旗民生存狀態硏究』, 人民出版社, 2010, 126쪽.
53) 「滿族同進會勸八旗父老子弟書」, 『盛京時報』 1912.5.3.

華民國國會組織法』을 통해 지역별 대표제를 기본으로 채택하되, 몽골·티베트·青海 등지에 대해서는 별도 의석 배당 등을 약속하였으나 만주족은 제외하였다. 사실상 만주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만족동진회는 만주족의 참정권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특별 의석수를 할당받아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만족동진회는 청원서를 통해 "만주족 기인이 지방의회에서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상 선출될 가망이 없고, 선출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므로 민족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만주족에게 참의원의 특별 의석수를 배정하는 것이 비록 法理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情理에는 부합하다"며 華僑와 동일한 참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54] 아울러 만주족 기인에게 의석수를 배정하는 것이 滿漢의 융합에도 유익하며 충돌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들은 만주족 기인의 참의원 특별 의석수의 쟁취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활동의 중심점을 두었다.[55]

원세개는 만주족의 정치참여 요청에 한때 동조하기도 하였다. 원세개는 "五大民族이 모두 선거와 피선거 자격이 있다. 각 성·몽장 등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하도록 명시되었으나 만주족이 제외된 것은 대동정신에 반한다"며 만주족 역시 『임시약법』에 따라 참의원 5명을 선출하도록 했다.[56] 그러나 북양정부는 "화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선거구역이 없기 때문에 特設變通하는 것이다. 만주족 기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이 있고, 『약법』에 따라 당연히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이후 선거는 어떤 의원이든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람을 경계로 삼을 수 없다. 북방의 기인은 특히 다수를 차지하고 지식이 발달하였으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염려되지 않는다. 漢籍으로 개적한 기인 역시 선거와 무관하다. 이에 공적인 결의를 거

54) 「滿族同進會會長熙彥等爲請國會議員特設旗人專額致臨時大總統袁世凱呈」,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北洋政府檔案·國會』 第一冊, 中國檔案出版社, 2010.
55) 「滿族同進會會員文溥等請願書」, 『申報』 1912.8.6.
56) 「滿人之選舉參議員」, 『順天時報』 1912.4.11.

쳐 기인에 별도로 의석을 배정하지 않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57]고 주장하였다. 선거법상 의원명수의 분배는 지역균형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만주족에게 특별 의원 수를 배당하는 것은 선거법의 정신 및 관련 법률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12년 4월 6일자 『中國日報』와 『國權新聞』의 기사는 만주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기사에서 작성자는 의회에 의석을 배정해 달라는 만주족의 청원은 탐욕스러움의 표시이며 그들이 특권을 누렸던 습관을 드러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만주" 등 동삼성을 지칭하는 옛 개념은 이미 새로운 행정구역 하에 흡수되어 편제되었기 때문에 몽골과 티베트처럼 특별 의석 할당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삼성을 근거로 공화국을 파괴하고 청을 회복하려는 음모를 꾸민 종사당을 비난하면서 만주족을 천성적으로 위험하다고 간주하고, 이들이 경찰과 공안 직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르렀다.[58]

이에 대해 만족동진회는 7월 10일 "해외 화교들은 참정권이 있지만 국내 기인들은 선거구가 있어도 사실상 기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을 선출하지 못한다. 정부는 오족평등 운운하나 이 일에 대해서는 도리어 인색하며 청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격렬히 항의하였다. 이에 9월 10일 이후 참의원에서 기인 의석 특별설치에 대한 안건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북양정부는 "중화민국은 원래 다섯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특별히 우대를 할 이유가 없다. 우대조건은 황실에 관련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지 만주족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요구에 맞섰던 것이다.[59]

그러나 만족동진회는 회족과의 연대 등을 통해 의석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갔다. 1915년 10월 8일 북양정부 참정원

57) 「國務院呈大總統國務院會議議決旗人不設國會議員專額說帖」, 『順天時報』 1912.6.29.
58)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北洋政府內務部檔案」, 『經濟檔案函目彙編』 第一冊, 1987.
59) 「蒙藏優待條件之否決」, 『大公報』 1914.4.30.

이 통과시킨 『國民代表大會組織法』에서 국민대표회의대표선거 구역선거에 '滿蒙漢八旗' 의석 24인이 추가되었다.[60] 그러나 구성원의 면모를 보면 모두 팔기왕공 출신으로 구성되어 일반 민중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만주족만의 독자 계열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만족동진회를 중심으로 한 만주족의 노력이 의석 확보를 통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닌다. 이후 1918년 6월 2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된 中華民國第二屆國會參議院議員 중 특별행정구 의석으로 第五部 滿洲王公 2석을 할당받았다. 회족 역시 第六部 回部王公 1석을 할당받음으로서 오족공화의 이념이 의석 배정으로 비로소 표면화된 것이다. 당시 참의원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毓朗, 溥緖이었으며, 參議院議員候補當選人은 榮泉, 載振이었다.[61] 이들은 모두 滿州王公 중 정치 유경험자였다. 이 단계에서도 동삼성은 몽골의 사례와 비교할 때 "만주"로서의 지역적 독자성을 동일하게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간 만주족이 정치에서 꾸준히 배제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민족적 혹은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세력임을 인정받아 의회에 입성하였다는 것에는 충분히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구성된 속칭 安福國會는 기존 국회와 정당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표류하였다. 이후 안직전쟁이 발발하여 曹錕과 吳佩孚가 北洋政府를 장악하면서 1920년 8월 안복국회는 해산되었으며, 만주족이 단독 단위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조 황실 종친들은 참의원의 의원수 특별 배정 쟁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21년 1월, 예친왕 등은 국무원에 "만주족에게 의원직의 특별 의석 5-6석을 할당하여, 북경에 거주하는 종친과 팔기 수만 명에게 정치를 이해시키자"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비준을 얻었다. 이들이 이렇게 참의원의 특별 의석 배정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자 하였던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사

60) 「中央國民代表特別選舉之發表」, 『盛京時報』 1915.12.15.
61) 「參議院議員中央選舉會第五部選舉監督內務總長榜示」, 中華民國七年六月二十日, 『政府公報』 第865號, 1918.6.21. ; 「中央選擧會之怪象」, 『申報』 1918.6.24.

회적 신분 변화 후 정치적 발언권이 상실된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시 만주족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62] 이에 만주족이 '오족공화'의 일원으로 자신을 낮추고,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변화를 수용하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특권층 만주기인'에서 '일반 국민'으로의 변환은 쉽게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1911년 선통제의 퇴위 이후 정치적으로는 명목상 "五族共和"의 주체로 포용되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그간의 갈등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몇백 년간 지속된 지배-피지배, 특권층-평민층 관계로 얽히며 형성된 반감은 쉽게 사그라질 것이 아니었다. 만주족 역시 표면상으로는 전시대의 특권의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우대조건』및 부속 조항에서 명시된 상층부 만주족의 특권 및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이는 국체변환의 대가이므로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신국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축소 또는 억압할 필요가 있었던 한족은 계속해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원세개 사후 소조정과 만주족을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자 상층부 만주족은 헌법에『우대조건』의 항구적인 보장을 명문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신해혁명 당시 체결된『우대조건』및 이하 부속문서에는 향후 정권의 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정권 자체가 교체되어도 이를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전술한 것처럼 만주족은 북양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내각 구성과 함께 헌법에 이를 명문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급변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는 무산되어 버렸다.

이후 군벌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1924년 선통제의 출궁과『수정우대조건』의 반포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상층부 만주족의 심리적 불안을

62) 戴迎華, 앞의 책, 130쪽.

가져왔다. 전술한 대로 『수정우대조건』 제2조에서는 “공화국 정부는 청조 황실에 해마다 50만 元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북경의 빈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장 설립에 200만 元을 지출한다. 만주 기인 출신의 빈민은 고용을 우선한다”고 극히 제한적인 구제책을 명시하였다. 이는 명목상으로나마 보장되던 특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것을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만주족의 정치적 활동이 지향하는 바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종래의 활동은 『우대조건』에 명시된 특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포괄적 특별대우 조항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여 만주족의 이익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았다. 이제는 『우대조건』의 정당성 자체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대우라도 획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황실 출궁 직후 滿族同進會와 滿蒙協進會, 旗族互助急進會 등이 상주한 「滿族同進會滿蒙協進會旗族互助急進會公呈請維持元年優待條件以昭天信而服天下事潮自辛亥革命海上議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원문에서 이들은 『우대조건』은 별도의 특권적인 조치가 아니라 정권 양위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며, 만주족의 생계대책 마련 및 정치적 권리 보장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63] 이외에도 「蒙回藏四族幸甚謹呈」를 통해 우대조건의 폐지에 대한 다른 민족들의 우려 역시 제기되었다. 이들 역시 비록 명목상일 뿐이라도 하더라도 『우대조건』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64] 그러나 풍옥상 정권은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묵살하였다.

이에 만주족은 북벌이 완성되고 국민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우대조건』의 부활과 선통제의 자금성 복귀를 주장하였다. 근거는 손문이 1924년 공포한 “『우대조건』은 정권 양위의 대가이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전보 내용이었다. 동시에 「關於滿蒙回藏各族待遇之條件」과 오족공화의 취지에 따라

63) 「滿族同進會滿蒙協進會旗族互助急進會公呈請維持元年優待條件以昭天信而服天下事潮自辛亥革命海上議和」, 『各省士民維持優待淸室條件函稿』, 正誼書社 鉛印本, 1924, 2-4쪽.
64) 「蒙回藏四族幸甚謹呈」, 위의 책, 4-5쪽.

만주족에게도 학비 면제와 고용의 안정 보장 등 등 몽·장족 및 다른 소수민족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65]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만주족은 이미 한족에 동화되었으므로 별도의 특별 조치를 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를 계속하여 피력함으로써 만주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66] 이에 만주족은 1928년 국민당 정부 고위 관리이자 이후 北平政治分會委員으로 재임한 蔣作賓이 북평에 도착하였을 때 그를 방문하여 아동의 취학 문제, 취업 및 생계문제의 해결, 민족 차별 및 모욕 금지 등의 요구를 담은 奏呈文을 전달하였다. 장작빈은 장차 만주족이 제출한 요구를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만주족과 한족이 이미 동화되었다는 의식을 무의식중에 피력하면서, 이는 다른 민족과의 연관성 하에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이 접견 역시 아무런 결과를 획득하지 못하였다.[67] 이같은 반응은 청조와 관련된 구시대의 제도에 대해 청산을 요구하는 당시의 여론을 볼 때 불가피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 屠孝實과 같은 일부 지식인들은 反淸同盟, 反滿洲同盟 등을 결성하여 청조 황실과 만주족을 봉건잔재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할 것을 격렬하게 요구하였다.[68] 국민당 정부가 북벌을 완수한 이후, 명목상의 잔재라 하더라도 만주족에 대한 우대와 보장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여 '진정한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는 여론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

관내와 관외로 분리되어 집합적 거주지를 획득하지 못하였던 만주족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이미 『우대조건』에서 약속되었던 각종 생계보전 대책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일반 만주족들의 생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

65) 中國第一歷史檔案館, 「溥儀出宮後圖謀恢復優待條件史料」, 『歷史檔案』 2000年 1期, 69-70쪽.
66) Edward J. M. Rhoads, *Manchus & Han :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p.267.
67) 金啓宗, 『梅園集: 金啟孮先生八十五周歲自選集』, 哈爾濱出版社, 2003, 134-138쪽.
68) 레지널드 존스턴 저, 앞의 책, 615-619쪽.

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정우대조건』으로의 변모는 이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만주족을 대상으로 한 국영 공장, 학교 역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만주족의 재교육과 자력갱생의 공식적인 기회도 축소되었다. 여기에 민족적 차별 등이 더해져 改籍을 통해 만주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만주족의 사회적 입지 역시 이전 시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2) 사회적 지위의 보장 도모

전술한 단체들이 황족 중심으로 결성되어 정치적 권리의 확보에 주력한 반면, 민간의 주도로 결성된 단체들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자구능력 배양을 통한 생계의 도모와 실업의 진흥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지위의 확보였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殷炳繼를 회장으로 하는 籌備八旗生計會로, 이들은 1912년 손문이 북경에 왔을 때 대규모 환영회를 개최하여 만주족과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손문은 이 환영회에서 "정치개혁에서는 五族이 一家이니, 종족을 나눌 수 없다. 현재 旗民의 생계가 곤란하므로 이를 마땅히 도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위대한 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69] 손문의 담화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책적인 만주족의 생계 도모를 강조하고 있으나, 주요한 것은 각 만주족 스스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民立報』 기자의 묘사에 근거하면, 당일 "旗民이 우뢰와 같이 박수를 쳤는데, 대다수는 (손문) 선생에 대해 오래된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이다."[70] 이는 당시 만주족의 생계 문제에 대한 자구책 마련 시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69) 「在北京八旗生計會等歡迎會的演說(1912.9.6)」, 『孫中山全集』 第二卷, 中華書局, 1981, 450쪽.
70) 中華民國史事紀要編輯委員會 編, 『中華民國史事紀要』 下冊, 國史館, 1973, 237쪽.

아울러 만주팔기는 청조 이래 '군인'으로 생활해 온 강점을 살려 민국 국민으로서도 그 업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청말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만주족은 군인으로서 무능하다는 선입견이 발생하였지만 실제로 혁명 이후 이들 중 다수가 신군과 경찰 등으로 그대로 임용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청말에 창설된 신군 중 민국시기까지 존속했던 제1진(이후 제1사)와 금위군(이후 제16사)은 만주족 위주로 편성된 정예부대였다. 이중 제1사는 신해혁명 이후 해산되었으나 제2혁명 발발에 즈음하여 북양정부가 그 소속 병력을 다시 소집하였다. 이에 이들은 張家口에 주둔하면서 대몽골전에 동원되거나 남경으로 파견되어 제2혁명을 진압하였다.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만주족 역시 국체변환 이후에도 여전히 군인이라는 의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1913년 예친왕이 대표로 상주한 팔기관병의 육군 지원서에서는 "우리들 만주족은 동일한 국민으로서 오래도록 군적을 유지하여 국가를 전제로 방위에 힘쓰는 것을 천직으로 해왔습니다. 국가의 위기(외몽골 독립과 제2혁명)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슬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행복을 누리는 국가의 분자로서 이 시국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보답하여 적을 맞아 싸우고자 합니다"[71]라고 진술하면서 신군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자격으로써 군에 복무하고자 함을 청원하였다. 위 내용에서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 있다. 또 생활고 때문에 군인이 되어 안정된 수입을 얻고 싶은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자신들의 본분이 군인이라는 의식과 대대로 국가를 방어해 왔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고, 때문에 한인에게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존재'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에 국가의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살려 능력과 위치를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아울러 「선후7조」에서 소조정이 확보한 호군 편성 및 운영권은 이들의 생계

71) 「查核退兵」, 『群強報』 1913.7.27.

유지 및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발휘하는 또다른 기회로 작용하였다. 호군은 종래 鋒護軍을 그 기반으로 재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청대에 자금성 등 황성의 방위를 담당하던 최정예 부대로 각 기에서 만주족, 몽골족 출신 12,000여 명을 선발하였으며, 일반 기영 소속 기인에 비해 급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았다. 선통제 퇴위 이후 이들 역시 존폐와 실업의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봉호군 중 700명, 內務府三旗護軍 중 300명을 선발하고 工程隊, 差遣隊 등을 더하여 1,200명 규모의 護軍警察隊를 조직하였다.[72] 아울러 이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경사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초빙하여 警察講堂을 설립하고 경찰 업무와 관련된 학과를 교육하였다.[73] 이는 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 맞추어 호군의 조직 및 운영을 근대화하여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호군경찰대의 운영을 위해 일반 호군의 운영비를 삭감하면서 榮禧와 같은 기존 호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74] 이는 종래 기인으로서의 연대의식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충돌한 것이었다.

이처럼 만주족의 내면에는 변화된 사회에 대한 자구책 마련의 고충이 상존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술한 八旗軍警界에 대한 만족동진회의 연설에서 만주족이 신해혁명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를 추구하는 문제에 대해 "合情合理"를 내세우며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황태후께서 辭職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우리들은 旗籍에 예속된 몸이라 황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혁명사업을 실행할 수 없었다. 이 또한 旗人의 고충 중 하나이다"라고 자신들을 변호하였던 것이다. 즉, 만주족은 혁명 이전에는 "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반역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혁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제 혁명이 실현된 후 적극적으로 "공화"와 "국민"을 추구하고자 하였지만 전술한 것처럼 의회 진출을 통한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

72) 「調取巡警」, 『群強報』, 1913.10.25.
73) 「添設警察講堂」, 『群強報』, 1913.11.8.
74) 「猛醒歌」, 『群強報』, 1913.11.19-21.

이 아닌 보통의 만주족에게 이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에 가까웠다. 이는 동일한 연설에서 “비록 옛 국가를 밝게 비추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자조한 것에서도 드러난다.[75] 표면적으로는 五族共和 사상을 옹호하며 민족의 단결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실제로 만주족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추락한 후 모종의 自卑心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만주족은 특권의 상징이었던 “팔기” 혹은 “기인”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각종 문건에서 “滿人”, “滿族”, “旗族”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이는 ‘오족공화’의 일원으로 자신을 낮추고,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변화를 수용하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특권층 만주기인”에서 “일반 국민”으로의 변환은 쉽게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1911년 선통제의 퇴위 이후 정치적으로는 명목상 ‘五族共和’의 주체로 포용되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그간의 갈등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몇백 년간 지속된 지배-피지배, 특권층-평민층 관계로 얽히며 형성된 반감은 쉽게 사그라질 것이 아니었다. 만주족 역시 표면상으로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우대조건』 및 부속 조항에서 명시된 상층부 만주족의 특권 및 권리보장은 국체변환의 대가이므로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신국가 체제의 안정을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축소 또는 억압할 필요가 있었던 한족은 계속해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전술한『우대조건』의 부속조항인「滿蒙回蔵各族待遇條件」에서는 정치적 권리보다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 주로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 滿·蒙·回·蔵 各族에 대한 우대조건

이제 滿·蒙·回·蔵의 각 민족이 공화에 찬동하였으므로, 중화민국은 다음과 같

75) 戴迎華, 앞의 책, 127-128쪽.

이 우대한다.

제1조 한인과 더불어 평등하다.

제2조 원래 보유하고 있던 私産은 보호된다.

제3조 왕공의 세습 작위는 모두 예전과 같이 한다.

제4조 왕공 중 생계에 곤란을 겪는 자에 대해서는 그 생계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팔기의 생계를 먼저 강구하되, 강구책이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팔기의 俸餉은 모두 예전과 같이 지급한다.

제6조 종래 營業에 따른 거주의 제한은 일률적으로 해제하고, 각 州縣에 모두 자유롭게 입적한다.

제7조 滿·蒙·回·蔵의 원래 종교에 대해서는 모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76]

이에 따라 팔기에 소속된 만주족의 경우 생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전의 급료를 그대로 지급받게 되었다.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입적의 자유 역시 허용되었다. 아울러 2조에 명시된 기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保護旗人公私財産文(이하 '보호재산문')」[77]을 반포하여 공식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였다. "만몽회장의 우대조건에 관련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먼저 팔기의 생계를 도모한다"는 취지가 총통령으로 반포된 것은 「우대조건」 이후 기

76) 「淸室優待條件」, 『臨時公報』, 民國元年 2月 13日 ; 「飭令宣布優待蒙回藏條件文」, 「臨時大總統令」, 『政府公報』, 民國元年 11月 24日.

77) "臨時大總統令: 據民族大同會會員劉揆一·吳景濂等呈稱, 民國肇建, 五族一家, 旗人公私財産宜設法保護等語, 上年軍興之際, 各省旗人公私財産間被沒收, 現在五族共和已無畛域之分, 查關於滿蒙回藏待遇條件, 內載明保護其原有私産, 又載先籌八旗生計.

我中華民國人民一律平等, 方念八旗生計之艱難, 豈有復沒其財産之理? 除近來迭據京外旗人呈報私産被收者已分別飭查外, 亟再行通令聲明, 凡八旗人民私有財産統應按照待遇條件, 仍爲該本人所保有其公有財産, 應由地方官及公正士紳淸查經理, 以備籌畫八旗生計之用.

倘有藉端沒收侵害者, 准由該本人或有關係人按法提起訴訟, 地方官吏應卽分別查覆發還, 切實保護, 以示廓然大公之至意."(「保護旗人公私財産文」(1912.6.3.), 『袁大總統文牘類編』, 會文堂新記書局, 1934, 172쪽).

인의 권리 보장이 원세개에 의해 다시 한번 정당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팔기인민의 사유재산은 우대조건에 따라 통괄하나, 해당 본인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경우 마땅히 지방관 및 공정한 신사가 淸査經理하여 팔기의 생계를 도모하는 데 사용한다"는 진술은 이후 소유권이 불분명한 旗産·旗地 등을 몰수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만주족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신해혁명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일상에 만연하고 있었다. 만주족이 한족 친지의 추천 혹은 보증 없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었다. 때로 만주족은 기존의 직업과 관련된 면허를 신청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본래 대대로 行醫 가문이었던 崇泰는 신해혁명 이후 정부에 행의 면허를 신청했으나 만주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내무부에 종래의 旗籍 포기와 民籍으로의 개적을 신청하여 京兆房山縣民籍을 부여받았다. 원래 성이었던 과르자씨(科爾佳氏) 역시 한족의 성씨인 "李"로 바꾸고 이름도 "承陰"으로 개명하고서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만주족 사람들이 잇달아 한족식 성씨로 자신의 성을 바꾸었다. 『政府公報』에 따르면 북경에서 개적을 신청한 대부분의 만주족들은 경기 이외의 동삼성 大興·宛平, 또는 하남성, 산동성 등에 소속된 현으로 민적을 신청하였다. 개적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업 지원서에 본적이나 주소를 적을 때에 "~營"에 해당되는 내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冠姓의 경우 성을 고를 때 자신들의 출신지 혹은 원래의 성과 발음이 비슷한 것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외에 趙·關·寶·傅·胡·賀·馬·東·科·麻·劉·倭·甘·那 등도 주로 사용되었다.[78]

하지만 신해혁명으로 일어난 정권의 교체 과정이 비교적 평화로웠다는 점에서, 신정부 초기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더라도 기존 집권세력이었던 상층 만주족은 그 기반을 비교적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북양정부 출범 당시

78) 「銓敍局彙編直隸等省旗員入籍加姓表」, 『政府公報』 1912年 第34號, 10-13쪽.

상황을 보면, 만주족들이 각성 駐防과 旗營에 대부분 그대로 존재하면서 실질적인 군사력을 점유하고 있었다. 步軍統領衙門의 경우 북경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기존의 조직이 북양정부의 신설 경찰조직과 병존하였으며, 만주족에 대한 행정기능 역시 일부 담당하였다.[79] 이는 청말 설립된 이래 다수 만주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아울러 보군통령아문이 보유한 사회 질서 유지 능력은 만주족 이외의 집단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지를 획득하고 있었다.[80] 따라서 이를 일거에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북경의 경우 旗兵, 금위병에 의한 폭력 소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81]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무력집단이 조직력을 발휘하여 반역 집단으로 변모할 경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었다. 아울러 비록 정치적 권력은 일시에 상실하였지만, 상층 만주족의 경우 「우대조건」 및 「보호재산문」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배층으로서의 역량과 누대로 축적된 자산 및 토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82] 실제 皇莊과 왕공의 토지가 집중되어 있던 직예성의 경우 북양정부가 신속하게 소유권을 장악하려고 도모하였으나, 기존 소작권의 박탈을 우려한 한인 소작인들의 반발로 인해 그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83]

이에 더하여 급작스럽게 집권하게 된 북양정부의 입장에서는 상술한 것처럼 선통제를 비호하고 만주족을 평화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필요가 있었다. 이는 서구 열강이 중국의 정권 교체로 인한 혼란 수습 및 재산권의 보호, 자위권 발동의 명분을 들어 서구 열강이 중국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 소요를 통

---

79) 김택경, 「민국시기(民國時期) 보군통령아문(步軍統領衙門)의 존속과 폐지 -북경 경찰기구 통합의 관점에서-」, 『중국사연구』 119, 2019, 196-199쪽.
80) 趙書, 『北京城區滿族生活瑣記』, 『北京文史資料』 第55輯, 北京出版社, 2001.
81) 「旗兵與五族聯合會」, 『盛京時報』 1912.4.6 ; 「滿回之小衝突」, 『盛京時報』 1912.4.20.
82) 「釋禁旗人並發還財産之呈請」, 『盛京時報』 1912.4.11.
83) 「直督皇室莊根地畝偲照舊代爲催徵」, 『歷史檔案』 1983年 2期, 25쪽.

해 만주족을 청산하기보다는 기존에 내세운 여러 “조건”들에 대한 이행과 만주족에 대한 회유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양정부가 “化整爲零”, “化旗爲民” 등의 정책을 통해 만주족을 국민으로 연착륙시키거나 혹은 견제하고자 하였다는 견해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84] 이중 “化整爲零”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만주족 통치체제에 대한 정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양정부는 만주족의 집단 거주지를 해체하고 만주족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절강성 杭州, 成都와 靖口의 경우 旗城 해체를 위해 소속 만주족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이들이 거주할 주택을 일부 건설하여 만주족에게 제공하고 이들을 이주시켰다. 이는 혁명 세력의 기영 부지 토지 개발 계획과도 관계가 있었다. 이에 만주족은 종래의 거주지를 상실하고 도심에서 벗어나 뿔뿔이 흩어졌다. 자본도, 기술도, 생계 수단도 보유하지 못했던 만주족에게 일시적으로 은을 지급하고 생계를 도모한 것은 이들의 자립에 효과가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주족에게 특별 의석 배정 불가를 주장하며 의회가 주장한 “만주족이 본토 내에 분산하여 거주한 것이 오래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만주족의 재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주족 생활 기반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化旗爲民”을 조명하자면, 혁명 이후 각 지방 정권은 해당 지역을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중앙정부에서도 권력 수반의 교체가 잦았고, 그에 따라 만주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역시 급변하였다. 특히 원세개 사망 후 군벌간의 항쟁이 격화되면서 『우대조건』 및 「보호재산문」 등에 명시된 우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지역별 대책도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였다. 형주의 경우 북양정부가 만주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팔기군을 해산

84) 潘洪鋼, 「辛亥革命後駐防旗人族群社會生活及變遷」, 『社會科學戰線』, 2021年 第1期, 158-161쪽.

하기도 하였다. 한편 만주족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존의 공장에 대해 정부는 만주족의 근무권을 인정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 회사는 경영이 부실하거나 혹은 약속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금난에 처해 조기에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해당 공장의 운영이 원활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토착가문이나 성 정부가 이를 빼앗기도 하였다. 항주성 정부는 만주족이 운영하던 기업인 胡慶餘堂을 몰수하여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일관된 기준 없이 직업을 상실하고 생계난에 내몰린 만주족의 경우 빈곤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여기에 『우대조건』에서 명시한 보조금의 지급이 거의 실행되지 않았고 만주족의 정착을 위한 취업교육도 대부분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만주족의 상당수는 인력거꾼, 기녀, 걸인 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만주족은 청조의 '특권층'에서 '가난'과 '비숙련노동'을 상징하는 집단인 "下層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졌다.[85]

한편 신해혁명 이후 찾아온 물가 상승 역시 만주족의 생계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양정부 초기 계속되는 전란과 정권 변화에 따른 혼란은 물가의 불안정을 야기하였다. 약속된 기향의 지급이 불안정한 상황과 맞물려 이는 갑작스러운 혁명으로 인해 대안으로서의 생계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던 만주족의 경제적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만주족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 빈곤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물가의 불안정은 비단 만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일반 빈민에 비해서는 불안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나마 고정된 수입원과 직업을 갖출 수 있었던 만주족에 대해 외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당시 만주족에 대한 호칭으로 "국록 갉아 먹는 놈(窮吃俸祿的)" 등이 사용되었던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의 악화는 만주족에 대한 또다른 차별과 갈등을 초래하였던 것이다.[86]

---

85) 김수진, 「라오서의 『正紅旗下에 나타난 滿洲族旗人 의식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20, 2007, 358-359쪽.

3. 동삼성에서의 기득권과 정체성 계승 노력

만주족의 발상지였던 동삼성의 경우 청조의 입관 이후부터 관내와 분리된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다. 신성성과 중요도를 의미하는 "封禁地"로서 지정됨과 동시에 변경지대로서의 특성까지 함께 결합되어 동삼성에 본적을 둔 대규모 만주기인 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관내 만주족들이 旗民分離의 원칙에 따라 滿城 안에 거주했던 것과는 달리, 일찍이 한인과의 雜居를 통해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소작인으로서 한족을 고용하는 등 사회경제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지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관내에 비해 심하지 않아 관내 왕공의 토지 또는 황실 소유의 皇莊를 제외하면 토지에 대한 장악력 역시 높은 편이었다. 여기에 金梁을 비롯한 청조 관료들이 동삼성에 만주족의 생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한 것 역시 전술한 대내외적 위기에서 동삼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청말 건성개제 이후 한족이 대거 유입된 이후에도 만주족이 자신들의 생활기반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청말 만주족의 생계곤란 문제와 체제의 위기로 인해 그 해결방안 마련에 분주할 때에도 관내 만주족의 동삼성 이주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실 생계곤란 문제는 청조의 "三代盛世" 시기를 전후한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바 있다. 청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팔기를 비롯한 관내 만주족의 동삼성 이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된 경우는 드물었다. 경사팔기는 동북으로의 이주를 기피하였고, 설사 이주하더라도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에 청조 역시 강제이주를 통한 생계곤란 해소 방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청말 건성개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동삼성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었다.

---

86) 金啓孮, 『北京郊區的滿族』, 內蒙古大學出版社, 1989, 74쪽.

그렇다면 관내 만주족은 왜 동삼성으로의 이주를 기피하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조의 입관 이후 동삼성이 부여받은 상징적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추론하고자 한다. 전술한 대로 입관 이후 동삼성은 만주족의 발상지로 추앙받으며 "성지"이자 "봉금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황제를 비롯한 청조 황실은 盛京에 위치한 태조의 묘소인 영릉에 참배하는 행사 이외에는 동삼성을 방문하는 일이 드물었다. 황제의 여름별장인 避暑山莊 역시 直隷省에 위치하였다. 현실의 황제가 위치한 곳은 베이징이었고, 그들의 발상지에 대한 인식과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동삼성은 "성지"인 동시에 "유배지"이기도 하였다. 청조 초기부터 만주기인이 중죄를 저지른 경우 가족과 함께 동삼성으로 유배되었다.[87] 청조는 자신의 정통성이 깃든 지역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였겠지만, 입관 이후 동삼성의 이미지는 그같은 의도와는 달리 "황량한 미개발지 혹은 낙후지"로 각인되어갔다. 자연히 관내 만주족에게 동삼성으로의 귀향은 곧 실패를 의미하였다. 생계곤란으로 이주한 소수의 만주족은 현지 만주족 및 한족 소작인과의 갈등을 빈번하게 겪어야 했다. 동삼성으로 이주한 만주족들이 개간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 다른 민족에 비해 소유권 등 각종 특혜를 획득하는 데는 유리하였다. 그러나 만주족으로서 기적에 등재되었다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기향마저 포기하고 낯선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간에 나설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아울러 중원으로 이주한 만주족과 동삼성에 자리잡은 만주족 간의 상호 교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뜸해졌다. 중원 만주족에게 동삼성은 "本鄉"이 아닌 "邊境"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고, 이 심리적 거리감은 결국 만주족 스스로 동삼성을 멀리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반면 동삼성에 본적을 둔 만주족은 동삼성이 개방되고 한인들이 대거 이주해 온 이후에도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87)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사총』 72, 2011, 299쪽.

하고 활용하여 사회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삼성의 혁명세력은 “반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청조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애국주의를 고양시키는 동시에 동삼성에 직접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주변 열강들에 대한 반제국주의를 조장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실제 1912년 2월 『盛京時報』에 발표된 「楊德鄰勸告奉天同胞書」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楊德鄰은 혁명이 발생한 것은 만주족에 대한 적개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조가 너무 부패하여 일부 현명한 만주족 역시 이를 전복시키는데 동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88]

한편 팔기도통을 중심으로 한 만주의 기인들이 혁명에 맞서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을 조직하려 한다[89]는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후, 「覆北京軍界泣告北五省及滿蒙藏書」가 『盛京時報』를 통해 발표되었다. 해당 문건에서 혁명세력은 만주족에 대한 인종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혁명은 북부에 대한 남부의 전쟁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5개 민족이 모두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평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만주족은 그들의 특권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훗날 『손위조서』에서 명시된 퇴위의 이유와 유사한 것이었다. 한편 해당 문건에서는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국의 국제적 위협을 상기시키고 만약 혁명세력과 청조 사이의 내전이 장기화될 경우 국경지대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동시에 만주족에게는 국경의 방비를 희생하면서 혁명세력과 싸우지 말라고 호소했다.[90]

혁명세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이손은 혁명세력이 내전을 일으키면서 외세의 침략 위험을 간과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이 풍랑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조정은 그들을 진정시킬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경고하면서 혁명세력의 군사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만-한간의 적대감으로 국가를 분열시키지 말고 중국이 영토 분할과 외국에 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고통

88) 「楊德鄰勸告奉天同胞書」, 『盛京時報』 1912.2.13.
89) 「八旗都統回議主戰」, 『盛京時報』 1912.1.17.
90) 「覆北京軍界泣告北五省及滿蒙藏書」, 『盛京時報』 1912.1.20.

받고 있다는 굴욕을 잊지 말라고 충고했다. 동시에 혼란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奉天保安公會와 奉天國民保安分會를 창설하였다. 두 협회의 장정 제1조에는 각각 "만, 한, 회, 몽골 등지의 주민과 다른 지역과 국가의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91]

외국의 침략에 대한 조이손의 우려는 동삼성의 다른 청조 관리들과 만주족들에게 공유되었다. 흑룡강성에서는 만주족에 대한 한족들의 반감이 확산되자 녹영 등 주방의 관계자들이 회동하여 만한의 적대감 속에서 외세의 굴욕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만한간에 벌어지는 어떤 형태의 상호 학살도 단지 상호 파괴만을 초래할 뿐이며, 그 결과 외세만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아울러 자국 내에는 인종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한의 적개심을 부채질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지 않고 쇠퇴를 앞당길 뿐이라고 규정하였다.[92]

동삼성의 관리들과 만주족은 지역의 안정, 외세의 침략 위협, 또는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우려로 인해 청 조정과 혁명 세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전략은 위기 속에서 동삼성을 온전히 지켜내도록 일조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혁명 세력은 종래부터 만주를 산해관으로 분리된 "외부"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동삼성의 이러한 독자적 행보가 겹쳐지면서 이는 1911년 이후 만주족의 의도와 혁명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북경과 천진의 언론은 동삼성에 대해 청조를 지지하고 공화국을 반대한다고 비난하며 의혹을 조장했다. 의혹의 이유는 첫째, 종사당에 가담한 인원들이 일본의 지원에 기반하여 여순과 대련 일대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것, 둘째, 동삼성의 군부가 다른 지방의 혁명군과 접촉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동삼성의 정치지도자들은 신

91) 「奉天保安公會初章」, 「奉天國民保安分會章程」, 故宮博物院明淸檔案部編, 『淸代檔案史料叢編』 第八卷, 中華書局, 2004, 15-17쪽.
92) 「八旗組織勤王軍」, 『盛京時報』 1912.1.24.

정부의 정책을 따르기는커녕 현상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었다.

만주족에 대한 그러한 의심은 단순히 소문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청조는 동삼성 팔기가 지닌 군사력이 청조를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93] 청조 통치자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관내의 혁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끌어낼 수 있는 인재의 원천으로 보았다. 조이손은 봉천 주재 기병국에 군사 행동을 위해 강력한 기병들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袁金鎧와 같은 일부 동삼성의 기인은 공화국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만약 선통제가 동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황족 중에서 임시 황제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지어 일부 장교들은 회동을 통해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병력을 모집하려고 하였다.[94] 그들은 혁명세력이 이미 청조와 체결하였던 수많은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관내에서 반만주족 폭력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동삼성을 통치하게 된다면 역시 만주족을 탄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에 봉천의 기병들과 장교들이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진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95] 선통제의 퇴위 직전인 1912년 2월 3일에 회람된 전보에서는 청조 황실 및 원세개에게 동삼성을 공화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본질적으로 자치적인 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동삼성에 특별체제가 마련된다면 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지 않다면 반란이 일어나 영토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96] 이는 동삼성이 다른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공화국에 동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혁명세력 및 북양정부에게 동삼성은 만주족 복벽세력이 생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책임자였던

---

93)『大淸實錄宣統政紀』卷 69, 5020면.

94)「八旗都統回議主戰」,『盛京時報』 1912.1.17. ; 故宮博物院明淸檔案部編,『淸代檔案史料叢編』八卷, 中華書局, 2004, 208, 287, 289-291, 292, 294-295.

95)「八旗組織勤王軍」,『盛京時報』1912.1.24.

96)「東三省全體人民反對共和之要電」,『盛京時報』1917.2.5.

조이손 또한 동삼성이 전략적,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토착 거주민의 사고 역시 관내와는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1912년 3월 조이손은 원세개에게 보낸 전보에서 지역 평화와 영토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7가지 특별대우 항목을 제시하였다.

1. 대청 황제에 대한 동삼성 인민의 존경과 친밀함은 영원히 제한되지 않는다.

2. 동삼성 인민은 대청황제가 금위군을 선발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全備한다.

3. 대청황제는 3년에 한 번씩 동삼성을 순행한다.

4. 남북 정부의 통일 이전에, 그리고 다른 국가가 정식으로 승인하기 이전에, 동삼성에게 이를 승인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제도 및 규정에 개혁과 변화가 있을 경우, 3년 동안에는 동삼성에게 이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6. 3년 동안 동삼성의 총독 이하 관리들에 대해 중앙이 임의대로 교체할 수 없다.

7. 3년 동안 동삼성의 賦稅와 군대를 다른 곳으로 조달하거나 징발하여 사용할 수 없다.[97]

조이손은 해당 전보의 말미에 “이상 7조에 대해 협상하여 승인한다면, 군민의 憤激이 평안을 얻어 혹은 위기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세개는 동삼성의 관료들은 공식적인 직함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지를 유지할 것이며, 행정 및 군사 시스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98] 하지만 동삼성의 특수한 사정상 기존의 구조와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남방 혁명정부 내에서 동삼성이 비록

97) 「東三省總督趙爾巽致袁世凱電稿」, 宣統三年十二月二十日,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編, 『清代檔案史料叢編』 第八卷, 中華書局, 2004, 158-159쪽.
98)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編, 『清代檔案史料叢編』 第八卷, 中華書局, 2004, 255쪽.

반혁명적이지는 않지만 그 성격이 친청 세력에 가깝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추세를 잠재우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원세개가 조이손에게 보낸 비밀 전보에서는 혁명세력이 봉천성의 공화국 인정 거부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봉천성에 사람을 보내 조사 중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99] 동삼성 만주족에 대한 혁명파의 의심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혁명 초기 동삼성의 만주족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관내 만주족과 같은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기적을 이탈하거나 만주족의 신분을 숨기고 생활하기도 하였다. 신분을 변경한 만주족은 기영을 떠나 한인 거주지로 이주하여 이들과 섞여서 생활하여야 했다. 그러나 동삼성 만주족의 상당수는 다른 도시와 달리 만성으로 구분된 지역이나 기영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 팔기와 민간인을 분리하는 물리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상 생활 중에 일어나는 빈번한 접촉은 만주족과 한인 사이에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친밀감을 조성하였다. 한편, 사회적 접촉의 증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그들”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을 상기시켰다. 다행히 봉천의 만주족은 전술한 것처럼 직접적인 농업 생산 혹은 산업 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생산과 생활 방식에서 오는 동질감 때문에 개명 여부와 상관 없이 혁명 이후 한족과 크게 마찰을 빚지는 않았다.[100]

한편 동삼성 상층부 만주족의 경우 생계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내의 만주족보다 훨씬 더 강경한 태도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만주족 聯甲과 常鎭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奉天八旗生計總會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봉천성 관리 및 군인 출신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8월 23일부터 5일간 『盛京時報』를 통해 협회의 목적과 규정을 설명하는 서한을 공개적으로 게재하였다. 이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라는 『우대조건』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비난하고, 기지 국유화 결의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들은 “벌이 쏠 때에는 독이 있

99) 上同.
100) 定宜莊, 『最後的記憶——十六位旗人婦女的口述曆史』,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9, 129쪽.

다"고 하면서 생활고에 내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였다. 아울러 만주족의 기지 및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만주족'이 '국민'으로 가져야 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행동을 옹호했다.[101]

한편 봉천성의 일부 만주족은 상술한 신문광고에 앞서 봉천성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1912년 6월 기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손문의 명령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티베트 폭동이 인종차별을 초래했다는 것을 주지하도록 하였고, 만일 봉천성 기인의 재산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성의회는 이를 여러 차례 기각하였다. 기지의 국유화가 결의된 이후 奉天八旗生計總會 소속 회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서 의회 활동을 방해하였다. 의장의 중재 노력은 무산되었고, 경비원과 경찰 모두 이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군인들을 파견하여 만주족의 폭동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102] 이러한 실력행사는 만약 차별이 계속된다면 심지어 반란을 획책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위협을 가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14년 재정회의가 군인들의 급료를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계획한 이후 吉林旗族籌劃生計會가 북양정부 국무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반란 위협을 내포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 청원서에는 기병의 급료가 삭감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1. 길림은 동부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주둔지에 주둔했던 기병들과 사정이 다르다. 그들은 오로지 군인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었다. 기병과 그 가족들은 오로지 연간 수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2.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五族一家"의 방침이 천명되었다. … 총통은 팔기의

101) 「奉天八旗生計總會草章」, 『盛京時報』 1912.8.23-28.
102) Shao Dan, *Ibid.* pp.97-98.

생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팔기 보조금을 평소와 같이 분배하라고 지시했다. 도시 안팎에 있는 기인들은 월급이 절반 정도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만약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3. 젊고 건강한 팔기는 도적이 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총통이 기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면 기인들은 감히 반항하지 못할 것이다.[103]

상술한 동삼성 만주족의 직접적인 행동은 1910년대 북경 등 관내에 거주하던 만주족에 대한 기록에서는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자성이 강하였다. 이들은 생존의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 공화국 정부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독자성을 바탕으로 동삼성에서는 장작림의 지배 하에서도 상당기간 만주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체제가 존속될 수 있었다. 1911년 설립된 이래 만주족이 향촌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방의회는 1914년 3월을 기점으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동삼성에서 민국 초기 팔기의 사무를 담당하였던 值年旗·都統·副都統 등의 직위와 기구는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봉천에는 八旗辦公處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며 그 직무는 상층부 만주족이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행정 기능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변혁을 꾀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우선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팔기판공처에 대해 “보수적인 노년층 인사들로 가득차 있고 … 이들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얽매어 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오직 官長의 눈치만 살펴 부당함을 논할 뿐”이라고 묘사한 서술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겠다.[104] 그러나 만주족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관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관내 만주족에 비해서는 유리한 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

103) 中國第二歷史檔案館, 『吉林旗族生計會請仍照支旗餉以維旗丁生計有關文件』, 內務部檔案, 1001號, 案卷號 1948.

104) 章福榮, 「旗族存亡一大問題」, 『旗族』 1913年 8月, 2쪽.

이에 관내와 마찬가지로 각종 만주족 단체가 결성되어 자신들의 앞날을 도모하였다. 旗族生計會, 旗人生計總會 등 여러 단체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기인생계문제 해결 계획과 자치능력 증강을 논의하였다. 기족생계회는 張文凱 등이 발족하여 팔기 생계 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이들은 만주기인 등 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1924년 「全區墾務總辦呈內務部財政部農商部酌擬淸理各旗群牧廠劃一辦法以淸懸案而安民業文」에서 상주한 것처럼 기인 생계를 기획하는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생활상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였다.[105] 특히 이들은 다방면으로 성금을 모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회원들을 조직해 공조하고 중앙정부에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경비 부족과 외압, 기존 왕장의 租主인 왕공 가문의 악습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치"를 논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관내에서는 상술한 "국민"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되 동삼성 등지로 이주하여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만주족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발생하였다. 1912년 북경의 금위군, 육군 제1진, 滿蒙旗人 거주지 등에 八旗生計會 명의로 "중화민국은 이미 성립하였는데 팔기 8백만 인의 생계유지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동부 몽고는 토지가 풍요롭고 농경을 개간하기 좋으며 혹 공업을 일으켜 부요케 하여 훗날의 생계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둔전병 1천 명이 방어군으로 편성되어 土匪의 침략으로부터 안녕을 지킬 수 있다. 뜻을 같이하는 지사들은 3일 이내에 본회에 그 이름을 알려주면 기밀계획을 보내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이 비밀리에 배포되었다.[106] 뒤를 이어 전국 각지 만주족 대표가 만주족의 생계유지수단 확보를 위해 봉천, 길림, 열하 등의 開荒地를 만주족에게 개방하여 이주를 허락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결의가 발생

105) 「全區墾務總辦呈內務部財政部農商部酌擬淸理各旗群牧廠劃一辦法以淸懸案而安民業文」, 察哈爾全區墾務總局編輯, 『墾政輯覽』, 1917, 5-9쪽.
106) 「旗兵與五族聯合會」, 『盛京時報』 1912.4.6.

하였다.[107] 전술한 만족동진회의 종지에서도 역시 “자치능력의 배양”을 명문화였다. 황실 종친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또다른 단체인 宗族生計維持會의 종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동삼성 만주족 단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에는 당시 만주족이 세력을 결집하여 자신들의 발상지인 동삼성 혹은 동몽골, 열하 등지로 이주하여 집단 거주지를 확보하고, 이후 몽·장족과 마찬가지로 신국가 내에서 만주족의 부분적인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혁명 초기 장작림은 아직 동삼성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동삼성 내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만주족의 세력기반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대규모 집단 이주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만주족이 동삼성에 대해 “자신들의 발상지이자 피난처”로의 만주를 인식하고 형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동삼성으로 이주한 만주족의 수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었을까. 민국시기 동삼성으로 이주한 인구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민국 초년의 대규모 冠姓·改名·改籍으로 인해 만·한간의 구분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실시된 각종 조사자료를 엮어 출간한 『滿族社會歷史調査』에서 1920-30년대 요녕성 만주족의 인구가 급증하였고,[108] 비슷한 시기 산동성의 만주족 인구가 유출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산동성 만주족의 일부가 요녕성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09] 이는 1940년에 실시된 『康德七年滿洲國臨時國勢調査報告』에서 만주족의 인구를 2,677,288명으로 조사한 결과로도 뒷받침된다.[110] 앞에서 1911년 당시 동삼성의 만주족 인구를 대략 150만으로 추정하였으므로 30년 동안 약 1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는 “闖關東”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만

107) 「籌備八旗生計之進行」, 『盛京時報』 1912.5.8.
108) 「遙寧省瀋陽市滿堂縣滿族調査報告」, 『滿族社會歷史調査』, 遼寧人民出版社, 1985, 20-21쪽.
109) 「山東省益都縣滿族調査報告」, 위의 책, 201쪽.
110) 滿洲國國務院總務廳臨時國勢調査事務局 編, 『康德七年滿洲國臨時國勢調査報告』,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43, 7쪽.

큼 동삼성으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장작림 정권 역시 招民開荒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난민이 올 때마다 수용소 내에서 본적을 파악한다. 친척이나 지인을 찾으면 그 거주 장소를 알려주고 경로를 안내해 주고, 여비를 참작해 보내준다. 예정이 없는 사람은, 각 현에 적절한 안배를 명령하여, 명년 봄에 얼음이 풀리면 각지에 나누어 황무지를 개척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11] 전술한 것처럼 일찍이 만주족은 동삼성 지역의 선주민으로서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흑룡강성 三家子村처럼 청조 수립 이후 외부에서 이주해온 만주족에 의해 개척된 주거지도 존재하였으므로 만주족 출신 이주민은 이에 배정되었을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112]

아울러 청말 각종 개혁조치의 실시와 함께 신식 교육을 이수한 1만 4천여 명의 만주족들은 중국 전역에서 군사, 교육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기존에 新軍·팔기병·순경 등으로 임용되었던 만주족의 경우 북양정부의 고용 승계 보장으로 인해 그 업을 유지하면서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113] 장작림 집권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다. 기존 기병조직 중 일부는 장작림의 산하부대로 편제되거나 다른 지역 군벌의 사병조직으로 흡수되기도 하였다. 특히 동삼성은 장작림의 지원 아래 東北大學, 東北講武堂 등 일찍부터 대규모 교육기관이 발달하였다. 만주족과의 관계도 장작림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한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왕공귀족, 혹은 만주족 지식인들이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잦았다.

한편 군벌내전을 거치며 동삼성의 지배자로 성장한 장작림은 청조 황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배척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다. 熙洽, 吉興, 劉德權 등의 만주왕공 혹은 만주팔기 출신과 張景惠, 원금개 등의 청조 유신 혹은 한군기인 역시 필요한 경우 능력에 따라 등용하였다. 이중 희흡은 황족 출신으로 열렬한 복벽론자였으며, 吉興, 劉德權과 더불어 일본 육군사관

111) 薑曄, 「民國時期東北移民潮形成原因述論」, 『大連近代史研究』 2011年 第1期, 69쪽.
112) 牟敏瑤, 「三家子村滿族文化演變曆程概說」, 『滿語研究』 2020年 第2期, 120-121쪽.
113) Edward J. M. Rhoads, *Ibid.* p.267.

학교인 振武學校에 유학한 경험이 있어 일본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들은 곧 속칭 '滿洲舊派'를 형성하면서 동삼성 권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114] 한편 동삼성 내 일반 만주족에 대한 처우도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차별이 심하지 않았다. 특히 길림성은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동삼성에 비해 만주족의 거주비율이 높았다. 이런 제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동삼성의 원거주 만주족의 세력은 비교적 건재하였고 동삼성으로의 이주도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청말부터 존재하였던 러시아의 위협 이외에 북양정권 집권 이후 활발해진 일본의 개입과 및 조선인의 유입으로 인해 점차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러나 장작림 사후 집권한 장학량의 경우 아버지와는 달리 '易幟'를 통해 국민당 정부의 노선에 동조하였고, 동삼성의 독자성과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던 만주구파와의 사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한 직후부터였다. 동삼성은 일본 관동군과의 협력 하에 차례로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선포하고 독립세력임을 공식화하였다. 이중에는 희흡이 임시 성장으로 재직하던 길림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곧 일본이 만주에 독자적 정권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수반으로 부의 등 청조 황실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부의는 여전히 천진의 일본 조계에 머무르고 있었고, 도이하라 겐지(土肥原賢二)가 비밀리에 부의를 접견하여 의사를 타진하던 상황이었다.[115] 부의가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여 만주 정권의 수반으로 취임한다면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인한 영토의 상실이 아니라 자칫 중국의 내란으로 인한 청조의 부활 또는 만주족이 주도하는 독립국 건설이라는 국제적 명분과 위상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또한 일본과 청조 황실세력·몽골 왕공 출신들이 이 지역에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만몽독립"을 주장하고 있었고, 당시 관동군이 실질적으

114) 浜口裕子, 「日露戦争直後の中國人留學生 - 振武學校8期生東北出身者の動向を中心として - 」, 『政治 · 経済 · 法律研究』23, 2020, 14-17쪽.
115) 李在全, 「九一八事變後國民政府爭取溥儀考實」, 『社會科學輯刊』 2021年 2期, 173-174쪽.

로 몽고 침략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접 지역에 위치한 몽골과 연합하여 독자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동삼성 만주족은 이를 바탕으로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에 지역자치론 혹은 독자주의를 표명하며 자신들의 독자적 행보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구체적으로 표면화되었고, 결국 만주국 수립과정에서 동삼성 지역이 무장투쟁 등 커다란 저항 없이 신국가 수립에 합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Ⅳ. 민국 초 만주족의 부흥 구상과 시도

전술하였듯이 북양정부는 선통제 퇴위 당시 건륭제 이래 公産化된 기지·관공서 부속 토지 등의 경우, 혁명 당시 '일괄 몰수하여 旗人의 생계 유지에 충당한다'는 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이러한 공약이 이후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해당 토지들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혹은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였는지 정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刁書仁, 趙令志, 衣保中 등의 연구에서는 민국 정부가 유민을 소집해 개간을 실시한 후 대량의 旗地가 民地로 轉化되었으며, 民人 가운데 대토지를 축적한 신흥부호가 성장한 반면 旗戶는 몰락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윤욱은 훈춘의 경우를 분석한 일련의 논문에서 성경 등지와 달리 만주국 건국 이전까지 현지 만주족이 기존의 기득권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으며, 토지에 있어서도 공산 이외의 사유재산의 변동이 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만주족의 토지소유 변동에 대하여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 분석한다면 상황을 비교·분석하면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아울러 만주족의 고토인 동삼성에 대해 청조는 팔기병 및 가솔이 직접 경작하게 하는 寓兵於農 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이곳에서는 기지가 비교적 장기간 旗人들의 생계 방편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부재지주가 아닌 토착지주로서의 만주족이 관여한 기지가 청조 멸망 이후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관내와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 기반의 확보와 유지

청조는 기본적으로 만주족을 중심으로 동삼성 일대를 경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만주의 未堡地도 장래 만주기인의 경작지 확보를 위해 官地로써 留保시켰고, 동삼성의 봉금조치를 유지하면서 한족의 진출을 막았다. 청조의 기지는 旗署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으며, 경영 방식에 따라 官莊과 八旗官兵(旗丁)의 粉地(일반 旗地)로 분류될 수 있다. 관장은 기지 안에 설치된 토지로써 소유 주체에 따라 官地와 私有地로 구분되었다. 그중 동삼성의 관지로는 盛京戶部·禮部·工部의 管莊 및 吉林·黑龍江의 관장이 있었다. 그리고 기지 가운데 사유지에는 청조황실의 私産인 內務府官莊(이하 '皇莊')과 盛京지구 王公·貴族의 관장인 王公莊園이 존재하였다.[1] 그밖에 황제·귀족·官莊에 속했던 山場·園場·牧販地·蒼塘 등의 방대한 園有地가 각지에 산재해 있었는데, 이는 주로 황실·귀족들에게 인삼·담비가죽·토산품 등을 진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팔기 관병의 封綠地인 份地에는 八旗宗田 등이 있었고 촌락마다 村落共有地·血族共有地 등이 있었다. 이들 토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었으며 청조의 중요한 사적 경제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官莊·莊園·宗田은 淸室·王公·旗人등 특수한 신분에 대해 領有가 허가된 世襲地였다. 따라서 1650년 순치제는 '旗民不得交産'의 원칙을 제정하여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본래 청조의 만주 경영 원칙은 기본적으로 만주족을 중심으로 한 기인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기지를 보호하는 한편, 기인에게는 官兵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대신 여가를 이용한 領地 경작을 봉해 생계를 꾸려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동삼성 일대에 황장을 집중적으로 지정하여 사사로운 매매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황실 등 고위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2] 그러나 일부 만주족은 노동력의 부족 및 농경 기술의 미숙 등의 원인으로 직접 농경을 기피하고 漢人과 소작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동시에 家僕이나 소작인 가운데 유력, 즉 莊頭에게 토지의 경영 관리를 맡기고 자신들은 소작료를 받아서 생활하였다. 특히 황실 및 왕공 등 고위층의 경우 경기 및 동삼성에 대규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

1) 楊餘練·王革生 外, 『淸代東北史』, 遼寧敎育出版社, 1991, 348쪽.
2) 윤휘탁, 「변지에서 내지로 - 중국인 이민과 만주(국)」, 『중국사연구』 16, 2001, 61쪽.

지만 그중 대다수가 家奴에게 경작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만주의 각 기지는 장두의 관리 하에 한인 소작인 혹은 奴僕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력을 보충할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었다.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流民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며 당시 유민의 대다수는 한족이었다. 따라서 청조 중기 이래로 기존 禁令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동삼성 진출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청조는 이렇게 늘어난 노동력 및 기지 경영 관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두로 임명된 자의 장남이 대대로 그 직을 계승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경우를 제외하면 장두는 자신의 가문이 관리하는 기지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이 큰 관리권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일반 기지에 대해서는 장두가 조세를 징수하여 도통아문에 납부하면 도통아문은 이를 각 業主에게 轉交하였다. 장두가 각 기지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두는 기지의 지조 징수와 상납 사이에 일정한 차액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장두는 기지에 설정된 '二地主' 또는 '一田兩主'로서 칭해지기도 하였다.[3)]

이러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기지는 점차 만주족과 괴리되고 한족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청말 기인의 생계난이 더해지면서 청조는 1905년 旗民不得交産 원칙을 철폐하여 사실상 토지의 매각을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이미 상당한 면적의 旗地·官莊이 典·押·當의 형식으로 한족에게 사실상 매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제 기지의 거래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淸末 招民放荒 과정에서 한족의 관료·상인·고리대업자 등이 토지에 투자하거나 불하를 받아 대량의 토지를 획득함으로써 농촌 사회에서 한족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갔다.

여기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신해혁명의 처리 과정에서 만주족에게 특권으로 부여된 기지 및 기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역시 그 해결방안이 준비되지

3) 賴惠敏, 『淸代的皇權與世家』,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10, 121-122쪽.

않은 문제였다. 초기에는 만주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과 약탈이 발생한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혁명 세력의 안정과 더불어 각 지역별로 만주족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하되, 기영 및 만주족의 공사건물 및 기타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매각하는 것을 대강의 원칙으로 삼았다. 비록 정치적으로 통일된 체제와 방법은 아니더라도 만주족의 경제적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형주의 경우 빈곤한 만주족에 대해 수개월치 기향을 지급하여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이들의 자발적 투항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해혁명 발생 당시 통일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만주족이 몰수당한 토지와 재산도 존재하였다. 각 지역별로 사정이 각기 달라 국체변환 이후 이를 일괄적으로 반환할 수도 없었다. 이에 주방기인을 중심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성도 등지에서는 기영의 반환과 생계유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만주족의 목소리가 확산되기도 하였다.[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해혁명 직후부터 직예성 등 경기지역과 동삼성 등에서는 "대청황제가 이미 퇴위했으니 기지의 莊頭도 동시에 소멸할 것이다", "기지는 이미 중화민국에 귀속되어 錢糧이 징수된다. 한 토지에서 두 개의 조를 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기조의 交納을 거부하고 기지의 회수를 요구하는 전호의 목소리가 커졌다.[5] 특히 황장의 경우 基本 租役은 剝削되었으나 糧租·銀租 등의 附加租가 합산되어 실제 민전에 비해 부가되는 조의 액수가 과중하였고,[6] 이는 모두 전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대조건』에서 이미 청조 황실 및 왕공 등 만주족의 私産을 보호하기로 공포된 바, 기지 문제의 처리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방법을 모색하여야 양측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가는 북양정부의 중대한 과제였다. 북양정부는 종래의 토지제도에 대해 官有地와 民有地로 구분하여 재편성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관유지

4) 「附: 溥儀內務府會計司三路莊頭爲請立保佃收租章程事之呈文」, 『歷史檔案』 1983年 2期, 29쪽.
5) 『中國農村慣行調査』 3卷, 377, 473-481쪽.
6) 衣保中 外, 『淸代滿洲土地制度硏究』, 吉林文史出版社, 1992, 206쪽.

란 관이 업주권을 유보한 토지이며, 민유지란 인민에게 업주권을 인정받은 토지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대의 관장, 왕공장전, 기지, 職田, 민지를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새롭게 관유지 또는 민유지로서 재편성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청조의 관장 및 왕공장전은 사산과 공산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어려웠다. 민간의 기지 회수 운동과 청조황실 및 왕공을 중심으로 한 저항이 빈발하는 가운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유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집권 초기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형성되었고,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각종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쉽게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내부적인 토지제도 재편 문제와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영토의 물리적 상실 위기가 대두되었다. 동시기에 西藏·外蒙에서 반란과 독립운동이 발생하였고, 영국·러시아가 배후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에 외몽골의 이반과 영토의 상실을 막기 위해 원세개는 8월 19일 「蒙古優待條件」을 공포하여 몽골이 원래 보유하였던 정치체제의 보호와 俸餉 대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庫倫活佛을 앞세워 독립을 선포한 외몽골 측은 선통제에 대한 우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취소를 거부했다.[7] 외몽골이 선통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충성심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 단지 『우대조건』을 자신의 독립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 민족의 이탈과 대내외적인 위기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국 초기 원세개 정권은 『우대조건』에서 명시한 정치적·사회적 예우 외에도 황장·왕장의 보호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동삼성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아울러 급격한 기지체제의 붕괴는 만주족을 위시한 기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혁 역시 연착륙이 필요

7) 「特約路透電」, 『申報』 1912.10.8.

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소조정의 내무부 대신은 1912년 5월 원세개에게 皇莊收租의 보호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북양정부는 장두의 수조와 주현의 대징이 계속되도록 각 주현에 명령을 내렸다. 民族大同會 회원 劉揆一, 吳景濂 등도 “민국이 창건되고 오족이 일가를 이루었으니 기인의 공사재산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상주하였다.[8] 북양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각 지역 정부에 기인의 공사재산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이 전술한 「보호재산문」의 반포 경과였다. 이를 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만주족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북양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혁명 이후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고, 만주족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였는지 관내와 관외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관내의 경우

북양정부가 실시한 만주족에 대한 상술한 우대조치에 대해 한족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해졌다. 당시 민중은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혁명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1911년 가을 이후 기조 납부 거부가 확산되었다. 각 주현 議事會는 성의회에 상서하여 '取消旗地, 暫緩交租'를 요구하고 있었다. 국가나 지방의 권력에 의해 보호되었던 황장의 수조조차 어려웠으므로 왕공장전 이상의 기지는 그 이상의 곤경에 처하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장두가 전호와 결탁해 국체가 변경되었으므로 토지는 이미 王公世爵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조의 교납을 거부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였으며, 소규모 기지의 경우 租主였던 만주족이 신해혁명 이후 민중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수취를 포기하였다는 진술도 존재한다.[9] 기조가 전부의 5-10배에 달했으므로 이를 국가가 부과하는 전부로 전환하는 것은 전호의 경제적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

8)「北京教育會通俗教育會中華民族大同會請願眾議院書」,『京師教育報』1914年 第2期, 3쪽.
9)『中國農村慣行調査』2卷, 岩波書店, 1958, 45쪽.

었다. 한족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경제적 요구가 지방의회 및 언론의 민족적·민주적 개혁 요구와 연결되면서 민족적 성격의 운동으로 정당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의 수조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당국이 기지 재편 문제를 단시간에 처리하기는 어려웠다. 그간 지방 재정에서 기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였기 때문이다. 종래 주현은 퇴출된 장두가 관리하던 기지, 雍和宮 香燈地나 팔항기지 등의 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상계하였다. 여기에 신해혁명 전후의 혼란을 틈타 종래 내무부나 호부로 송부하고 있던 조 중 상당 부분을 지방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민중의 요구와는 달리 지방 당국은 기지의 처분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복잡성과 더불어 중앙 정부 재정의 궁박함이 심각해지면서 원세개 정부는 기지의 정리를 서두르게 되었다. 1913년 7월 북양정부는 「財政部淸査官有財産章程」을 제정하여 재정부에 관산청리처를 설치하고 관산조사 및 처분을 주관하도록 하였다.[10] 이는 제2혁명이 발발한 이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지역의 관산이 혁명 세력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제2혁명 진압 이후 11월에 제정된 「管理官産規則」에서 관산의 매각·조차·양여 등의 처분방법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11] 여기에서는 관산 처분 후 사용처를 각 부처 및 지방 정부가 주관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원세개 정권은 서구 열강으로부터의 재정 원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재정총장 周學熙가 "收支의 차이가 극심한데,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증세와 관산 매각 외에는 募債 밖에는 없다"고 말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12] 이에 북양정부는 국회 정지 이후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 7월 「官産處分條例」

10) 王永江, 「財政部淸査官有財産章程」, 『奉天省賦課章則叢編』, 奉天財政廳, 1917, 1-2쪽.
11) 天海謙三郎, 「北支土地慣行資料(其二)」, 『支那土地問題に関する調査資料』, 南滿洲鉄道調査部, 昭和12年, 213-215쪽.
12) 買士毅 編著,『民國財政史』正編 上冊, 台灣商務印書館, 1962年, 13쪽.

를 발표하여 전국의 관산 처분에 대해 재정부가 모두 관할하도록 조치하였다.[13] 처분의 주 대상은 팔기 관병의 직전과 관황지였으며, 매각과 租佃 모두 해당되었다. 이런 종류의 땅이 옛 공산으로서 성격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명분이 강하였고, 이를 통해 재원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분의 원칙은 경쟁입찰이었으며 가격이 동일할 때에는 원전호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팔항기지의 전호 입장에서 조액의 증가는 피할 수 없었고, 입찰을 통한 구매가격이 민전보다 낮다고 하여도 이미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경작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손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호들은 강력히 저항하였으며, 지방 당국 역시 당장의 재정난을 들어 이에 반발하였다. 만주족 역시 관산 처분 후 만주족에게 활용할 방도를 구체적으로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관산 정리작업에서 팔항기지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참전으로 인해 외몽골과 동삼성에 대한 일본의 압력이 약화되었고, 제2혁명 역시 조기에 진압되었다. 전제적 중앙집권체제 구축에 자신감을 얻은 원세개는 재정 장악을 서둘렀다. 1914년 말부터 드디어 淸丈과 田賦 淸理가 관산의 정리와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淸査의 범위는 황장, 왕장, 팔항기조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방침대로 납세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다른 기지에 대해서는 升課納稅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天津南開學校의 馬千裏는 大興·殿平·天津 등 7현에 소속된 기지의 전호를 규합하여 1915년 2월 七縣收回産權聯合會를 조직하고 원세개에게 기지 회수를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민국이 수립된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청조 내무부 및 왕공도통 등은 장두 등을 파견하여 기지를 勒索하고 있다. 본래 이 땅은 우리 조상의 私産이었으며 이를 滿軍이 점거한 것이다. 이것을 한족에게 돌려주고 納糧升課

13) 天海謙三郎, 앞의 논문, 217-219쪽.

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國課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4] 비록 구체적인 회수 방법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기지의 유상회수에 관련된 내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우대조건』 및 「보호재산문」에도 불구하고 만주족이 권리를 점유하고 있던 기지는 한족 자신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것이지 만주족의 사유재산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기지 회수에 관련된 청원서가 속출하고 민중의 반발이 거세졌으나 원세개는 이러한 활동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고 제제를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재정 곤란에 부딪힌 북양정부는 스스로 승과 정책과 관장의 정리를 유도하게 되었다.

북양정부는 1915년 11월 재정총장 명의로 「整理京兆所屬租糧地章程」에서 황장을 제외한 일체의 기지에 대해 승과조치를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조주가 승과를 원치 않을 경우 일년 조액의 10배로 전호에게 매입하여 승과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지방관이 경매에 넘겨 제3자에게 매매 후 승과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조주가 조액의 10배를 배정받고 잔금은 전호에게 배분하며, 조주는 취득분에서 20%를 관에게 납입하게 규정되었다. 다만 제3자가 매입한 경우 원전호의 경작권은 보증되지 않았다. 또 종래 기지는 增租奪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승과 후에는 전호와 합의하여 일정 정도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항목 역시 추가되었다.[15]

그러나 한달 후 발표된 조치에서는 황장 역시 청장과 처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1915년 12월에 제정된 「大興縣淸壺官産處投報南苑地畝簡章」에 따르면 전호의 龍照와 內務府의 租標 및 圖冊이 일치하는 것만 황실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私墾地 · 浮多地 · 荒地는 매각하여 승과하도록 규정하였다.[16]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우대조건』을 극히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14) 末次玲子, 「民國初期の旗地政策と華北農村_直隷省の場合」, 『経済科學研究所紀要』 11, 1987, 101쪽.
15) 天海謙三郎, 앞의 논문, 250-251쪽.
16) 天海謙三郎, 앞의 논문, 247-250쪽.

기지를 民糧地로 변경하여 북양정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지가 대다수를 차지하던 종래의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국가가 재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만주족의 경제적 기반은 제도적으로 붕괴되어 갔다.

한편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주족 중 기지의 매각을 서두르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왕장 등 관장에 소속된 기지가 기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되면서 전호와의 분쟁 역시 빈발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직예성 등지에서는 1915년 7월 「直省收租章程」을 제정하여 "'조세'는 조세권을 매매하는 것이지 토지 자체에 대한 매매가 아님을 의미한다. 가격은 租價의 10배 혹은 조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上地 10원, 中地 6원, 下地 6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이를 전호에게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며, 전호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제삼자에게 매매할 수 있었다. 다만 전호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한 경작권은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老圈旗地나 기인이 사적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17]

이렇게 기지의 매각이 실시되면서 장두의 管理地는 장두에게 우선 매각되었고 旗丁·田戶의 分有地는 각각 당사자들에게 우선 매각되었다. 원칙적으로 기지를 외지인이 경작하는 것을 금했으므로 이러한 관지의 原佃戶나 原租戶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자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부재지주가 아닌 만주족 주방 기인의 경우 조치 이전에 전호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렇게 매입의 우선순위를 만주족 등 토착 원주민에게 부여하면서 이들이 종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제3자에게 전당잡힌 토지는 典押主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했다. 다만 장두나 전압주가 토지의 承領을 원치 않거나 불하받을 자금이 없을 경우에만 莊丁·個戶에게 불하한 뒤 그 代價로 일정한 地價를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原佃戶와 原租戶 등 기존에 토지를 관으로부터 불하받아 소작을

17) 天海謙三郎, 앞의 논문, 257-259쪽.

하거나 조를 납부한 사람에게 우선승계권이 주어졌다. 이에 재력에 여유가 있는 만주족의 경우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경제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다.

한편 1915년 順義縣에 대한 만철 조사 기록을 보면 黑地·開墾地·八項旗地를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 "일반 기지는 私産이므로 민국이 開元하였지만 여전히 滿人의 힘이 남아 있어서" 기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18] 아울러 1915년 淸査地畝局이 설치되어 糧外餘地를 挙報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2分의 田賦를 부과하였다. 여지가 종래 만주족의 구호에 사용되었던 토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토지에서 만주족의 반발이 우려되어 세부적인 처리규정을 정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흑지의 승과가 주로 고려되고 있었으며 팔항기산의 처분은 1918년경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19] 적어도 북양정부 초기에는 각 기지에 대해 기존 租主였던 만주족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정국의 변화에 따라 기지 정책의 변화 역시 예고되었다. 1916년 원세개의 제제복벽이 실패로 돌아간 후 4월에 단기서가 국무경에 임명되었다. 1917년 장훈의 복벽과 호법전쟁의 발발로 이어지는 정국의 혼란 속에 기지의 정리작업 역시 영향을 받았다. 경기 지역의 淸丈과 田賦整理는 정지되었으며, 기타 각 성에서는 해당 작업이 모두 연기되었다. 관산 중 정리 대상은 당분간 미개간된 官荒地로 한정되었으며, 팔항기지에 대한 정리는 정지되었다. 이후 단기서 내각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관산처분조치 중 팔항기지의 매각을 재추진하면서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전호와 지방 당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20]

여기에 물가 급등으로 인해 종래 수령하던 기조로 생계를 이어가기 곤란하였던 왕공·도통·기인 등의 만주족은 地産捐 부과 시행이 예고되면서 조세 부

18) 中國農村慣行調査刊行會 編,『中國農村慣行調査』2卷, 137쪽, 490쪽.
19) 中國農村慣行調査刊行會 編,『中國農村慣行調査』5卷, 618쪽.
20) 天海謙三郎, 앞의 논문, 194-210쪽.

담까지 감당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만주족은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지 매각을 서둘렀다. 1920년 6월 국무원은 旗産官産清理處를 설치하고 「處分滿清王公八旗圈地章則」을 제정하여 왕장·팔기장전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내무부 역시 「大清內務府清理房地章則」을 제정하고 황장의 매각에 나섰다. 이는 모두 原佃戶에게 우선 매입하게 하였으며 그 대금은 原租主 및 내무부가 우선적으로 수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가·성·현 및 담당자·협력자에게도 일정 부분 분배되어 지방당국 역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즉 원칙적으로 토지의 매각 대금은 대부분 원소유주인 만주족과 만주 황실 및 기지 관련 사항을 관장하던 내무부가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소조정은 이를 바탕으로 자금력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재정을 운영하였고, 만주족은 매각 자금을 생계유지 등 생활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실제 집행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7월 안직전쟁이 발발하고 직예파가 승리하였으며, 제2혁명 이후 북양정부의 중추를 장악하였던 안휘파 및 이들의 정치적 대변자인 안복국회가 정권의 중심에서 축출되었다. 여기에 당시 화북지역에는 대기근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곤란이 심화된 왕공도통 등이 기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당 기지의 원전호 및 직접 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직예성 의회는 售租禁止를 결의해 이를 각 현에 통지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현 당국 및 大理院은 1915년 7월의 「直省售租章程」을 통해 반박하였고, 의회는 1921년 6월 다시 「修正直省旗圈售租章程」을 정식으로 공포하였다.[21] 이처럼 이 시기 북양정부의 기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원세개 집권 시기의 정책에 입각하되 현실과 타협하는 적당한 선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기지의 매각과 청장정리작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 당국의 재정적 궁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전호나 의회의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잦았다. 경제적으로 궁박

21) 天海謙三郎, 앞의 논문, 259-261쪽.

해진 만주족이 자의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더라도 이 역시 반대에 부딪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지에 대한 만주족의 권리는 관산 측면에서는 부정되었고, 사산 측면에는 제약당하였다. 기존에 납부받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 역시 장두의 농간으로 인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다.

일부 장두는 1912년 국체변환 이후 만주족의 혼란을 틈타 자신이 관리하던 기지의 지조를 모두 가로채거나 전호에게 권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이들이 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도 발생하였다. 업주 중 契冊을 분실하고 구전으로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자는 그 재산권을 장두에게 강탈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에 소조정 내무부 역시 북양정부에 대해 장두의 霸租行徑에 대해 수차례 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1914년 12월 15일 숙친왕 선기가 京師警察廳에 보낸 奏呈文에는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大城縣 王家口에 소유한 장전 11,900여 무에 대해 장두가 租銀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 京畿가 분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장두가 장기간 북경을 방문할 수 없었던 사정은 분명 존재하나, 그는 정국이 회복된 이후에도 일체 납부를 회피하였다. … 누차 독촉하자 북경으로 와서 지난 수년간 조액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오히려 선왕대부터의 장전에 대해 結束交割手續을 요구하였다. 이는 無法無天한 무리의 태도로, 대총통의 만주족 우대조건 하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해당 장두를 경찰청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실로 공공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22]

비록 숙친왕이 종사당 활동으로 인해 북양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왕공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었다. 왕공작위와 관계된 사항은 전적으로 소조정의 관할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장에 대한 숙친왕의 권리는 공식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다만 당사자인 숙친왕이 종사당 활동

22) 王立群, 「北洋時期京直地區旗地莊頭考述」, 『北京社會科學』 2012年 2期, 82-83쪽.

으로 인해 동삼성으로 이주하여 북경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고 그 가솔이 대리하는 상황에서 장두가 기존 방식을 거부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음이 파악된다. 한편 이에 대해 “대총통의 만주족 우대조건 하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임을 언급하면서 법적 처리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우대조건』을 자신의 주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 기준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준행 의지가 없는 원세개에게 그 준행을 촉구하거나, 혹은 민간에 『우대조건』을 상기시켜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이양의 대가로 확보한 『우대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세개가 1913년 12월 8일 『우대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명령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청왕공·패륵의 授田과 관련된 법은 부세를 제외하고 差徭를 면제하여 왕공을 우대하고, 소유 기지에 대한 장정 등의 계승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간섭하지 않는다. … 무릇 황족의 사산에 대해서는 마땅히 『우대조건』을 준수하여 일체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엄격한 준행을 효유하니 각지의 장정 등은 옛 도리대로 丁糧을 繳納하라”고 명시하였다.[23] 이는 기본적으로 원세개 정부가 기지의 수조에 대해 보호적인 태도를 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반원세력인 숙친왕조차 『우대조건』에 기대어 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할 만큼 그 기대가 컸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장두의 관리 측면에서 정권 교체 이후 사적 제제수단이 결여되었던 만주족이 상당히 무기력한 입장에 처하여 법과 제도에 호소하였던 상황이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왕공의 장전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평범한 관병의 경우 기지 관리에 한층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은 의심할 나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기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탈피 및 황실 재산의 보호를

23) 「袁世凱關於嚴格履行皇室優待條件取締抗租之命令」, 第一曆史檔案館館藏 : 全宗號 26, 目錄號 476, 案卷號 802(王立群, 「民國時期河北旗地變革研究(1912-1934)」, 首都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37쪽 원문 재인용).

위해 왕공 紹英, 治格은 중국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평가되는 古物陳列所를 설립하여 만주족을 비롯한 기인을 고용하였다. 그 설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선통제의 퇴위 후 황실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열하성 東西陵 등 지방에 위치한 황산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행되었다. 당시 열하성의 도통이었던 熊希齡은 황실 문물의 유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체변환 이후 사회적 관심이 황실 문물에 향해 있으므로 이를 보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4] 이에 봉천성 및 기타 궁전에 소장되어 있던 문물을 북경으로 이송할 것을 건의하였다. 소조정의 內務府 및 민국 內務部 직원의 입회 하에 1913년 8월부터 운송 작업이 시작되었다.[25] 뒤이어 1914년 3월부터 武英殿을 개수하여 전시실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후 서양식 건축 공법을 도입하여 보관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文華殿 역시 개수하여 진열 공간으로 변모시켰다.[26] 1914년 10월 10일 정식으로 고물진열소가 개장되어 대총통의 관람을 시작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이 몰려 혼란한 가운데 도난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호군을 동원하여 그 경비에 나설 정도였다.[27]

그러나 1916년 원세개 사후 여원홍 내각이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황실의 사유재산이었던 故物을 조기에 국유화하고 그 대금 지불을 유예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고물진열소의 운영이 난관에 부딪혔다.[28] 북양정부는 전시품 중 일부를 매각하여 재정 보충에 활용하였으나, 황실은 제대로 된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채 경제적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 기인 사회는 이에 즉각 반발하였고, 협상 끝에 1924년 11월에서야 민국정부에 고물보호의 책임을 위탁하는 대신 그 보상을 정당하게 수령하게 되었다.[29] 그러나 이미 상당수 물품이 매각 및

24) 阿部由美子, 「中華民國北京政府期の淸室優待條件下における北京旗人社會の一側面 : 護軍都護副使、古物陳列所所長 · 治格の經歷をてがかりに」, 『東洋史硏究』 77, 2019, 632-633쪽.

25) 「部令 : 內務部部令第七十二號 (中華民國二年十二月) : 古物陳列所章程」, 『政府公報』 1913年 第595期, 9-12쪽.

26) 「命令 : 訓令 : 令古物陳列所會同金紹城辦理陳列所工程事宜文 (二月二十七日) 」, 『內務公報』 1914년 第6期, 42쪽.

27) 「古物陳列所開幕布告」, 『市政通告』 1914.10.8. 臨時增刊期, 1-2쪽.

28) 「大總統令 : 大總統指令第一百八十八號 (中華民國五年九月十二日) : 令國務總理段祺瑞 : 國務總理段祺瑞呈酌擬緩付古物陳列所價款照舊保存辦法由」, 『政府公報』 1916年 第250期, 7-8쪽.

횡령, 관리 소홀로 인해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같은 위기에도 고물진열소는 1925년 고궁박물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1948년까지 계속해서 운영이 유지되었다.

고물진열소의 책임자였던 치격은 개장 당시 태화문 앞에 관람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太和門의 朝房에 상점을 설치하고 호군 기인 중 실업자에게 간단한 다과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입장권의 판매와 개찰 역시 이들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실업으로 인해 빈곤한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던 기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각 성에서 운송작업에 투입되거나 고물진열소 개장 당시 관련 업무를 총괄한 직원, 개장 이후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한 직원 역시 대다수는 만주족을 비롯한 기인이었다. 1948년 고궁박물원에 병합될 때까지도 이러한 직원 구성이 유지되었으나, 점차 북경대학 출신과 같은 전문 인력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만주족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30]

이렇게 만주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화되어가는 가운데, 1924년 10월 풍옥상의 베이징 입성 후 성립된 黃郛 내각은 11월 5일 『수정우대조건』을 공포하고 선통제 이하 소조정을 자금성에서 출궁시켰다. 公産과 古物은 국유화되었으나 황실의 私産은 소유권이 인정되어 이후 선통제가 천진에서 만주국으로 이동할 때까지 주요 자금원으로 기능하였으며 만주국 패망 이전까지 황제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섭정내각은 다른 군벌 및 열강 공사단의 압력 속에서 고립되어 곧 붕괴하였고, 단기서를 집정으로 한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임시정부는 일반 기지의 경우 1925년 6월 「京兆旗産地畝消理簡章」 및 「同施行細則」 등을 제정하여 모든 기지를 일률적으로 전호에게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31] 그러나 기지의 가격 책정 및 세율 결정 과정에서 원칙과

29) 「保存祭品」, 『群强報』 1914.11.21.
30) 「擬闢商場」, 『群强報』 1914.10.22.
31) 「京兆旗産地畝淸理簡章 十一月十八日」, 印鑄局官書課編校, 『法令全書 - 中華民國十四年第四期』,

기준 등이 계속해서 변동되면서 민중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장작림의 북경 집권 이후에는 1927년 8월 全國官産督弁公署를 설치하고 군비 염출을 위해 강력한 기지 매각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제 이 시기에 기지 해체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가장 진전되었다.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유상유치였으며 그 대금은 만주족에게 할당되지 않고 대부분 군사비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황장의 경우 그 처분권을 소조정 내무부에 반환하면서 1920년 제정된 「淸內務府淸理房地章則」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결국 1928년 6월 24일 全國官産督辦公署가 국민혁명군에게 접수되면서 북양정부의 기지 정책은 일단락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북양정부의 기지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기인구제를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명목 하에 대부분의 기지를 국유화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기지의 조세 수취권은 국가 혹은 각 지역당국이 보유하게 되었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일반 농민이 田種權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당 정부의 수립 이후에도 기지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전호가 항조하지 않으면 "增租奪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청대부터의 관행은 여전히 유효하였다.[32] 이에 따라 기지에서 전호의 권리가 보장되고 旗租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층의 해체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민당 정부의 제도 개편 의지와는 달리 기지의 청산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기조의 수취자인 만주족에게는 역으로 수입의 축소를 의미하였고, 이는 곧 이들의 경제기반 약화를 가져왔다. 제도의 개편과 실제 운용 모두 만주족에게는 불리하였던 것이다.

2) 관외의 경우

신해혁명 이후 동삼성에서 토지제도 개편의 요체가 된 것은 내무부관장, 성

印鑄局, 11-16쪽.

32) 賴惠敏, 『乾隆皇帝的荷包』, 中華書局, 2016, 89쪽.

경호부관장, 왕공장전 등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가였다. 전술한 것처럼 이들 토지가 청조 황실, 팔기왕공의 사산인지 혹은 관에 속한 공산인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삼성의 경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만주국 시대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동삼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던 隨缺地·伍田 등의 직전, 일반 기지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팔기관병 및 기인이 보유한 사산으로서의 성격과 공산으로서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토지가 만약 공산으로 간주되면 관유지로 구분되어 민간에 대한 불하 대상으로 규정될 것이었다. 반대로 청조 황실 및 왕공기인의 사산으로 간주된다면 민유지로 정의되어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국이 관유지의 불하를 통해 재원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청조황실, 왕공 및 만주기인의 특권적 토지 지배권을 폐기하고자 한다면, 동삼성의 관장, 왕장, 기지, 직전 중 대부분을 공산으로 간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 토지가 지닌 사산으로서의 성격을 완벽하게 무시하기 어려웠다. 청조 황실, 왕공 및 만주족이 경제적 기반의 붕괴에 맞서 저항하였던 것은 전술한 관내의 사례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유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개간지 문제 역시 고려사항으로 대두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삼성의 경작지 면적은 청말 한족의 유입과 더불어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들 개간지에 대해서는 청 중기 이래 기지와 민지를 나누지 않고 기인과 민인의 業主權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두 관지로 편입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있었다. 즉 개간지를 점유한 자는 賦가 아니라 지주의 자격으로 국가에 租를 납입한 것이다. 이같은 개간지는 기인 및 민간의 업주권이 인정되는 紅冊地(原額地)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餘地로 불렸다.[33] 여지는 관내에도 존재하였으나, 동삼성 전역에 여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족 농민에 의한 동삼성 기지의 침식을 막는다는 목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

33) 張研, 『淸代經濟簡史』, 雲龍出版社, 2002, 102쪽.

으며, 여지에서 발생하는 조의 수입은 만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인의 생계를 구제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단, 여지에 조를 납입하는 자는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으며, 그 경작권의 처분 역시 인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혁명 이후 여지를 관유지로 간주할 것인가, 아니면 민유지로 간주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동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외에도 각 토지를 둘러싼 실제 권리관계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 역시 더욱 복잡하였다. 관장, 왕장은 전술한 것과 같이 사실상 해당 토지를 관리하던 장두에 의해 지배되었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아울러 청말 한족 농민에게 양도·매매된 기지와 직전이 상당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 의해 경작되고 있는 토지가 구제도상의 지목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또 전술한 것처럼 토지 권리관계가 중층적이었던 상황에서 어떤 토지를 관유지로 확정하고, 또 누구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는가는 한층 복잡한 문제였다. 관유지의 확정 문제는 구제도 하에서의 각 토지 연혁을 조사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동삼성의 경우 지역적 특성 및 중앙정부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활용하여 官地清丈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34]

혁명 이후 동삼성에 분포하였던 황장과 왕장에도 역시 승과가 강제되는 동시에 전호에게 매각하는 것이 촉구되었다. 그러나 봉천성을 제외한 동삼성 기타 지역의 경우 이러한 토지들이 종종 승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역 사정에 따라 정부당국이 임의로 만주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처분하거나 지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승과나 매각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북양정부 초기 행정체계가 미비하여 행정 장악력이 낮았던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으나, 각 지방

34) 耿常華, 『民初奉天全省官地清丈局研究(1912-1929)』,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21-22쪽.

당국 및 전호가 기존의 기지 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승과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는 해당 토지의 租主·業主였던 만주족이 기존에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기지에 대해 최소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동삼성의 기지 정책은 관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민국 초기 러시아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해 외몽골과 동삼성에 대한 러시아의 압력은 약화되었지만, 대신 일본이 산동반도에 출병하여 독일의 권익을 접수하고 만몽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다. 주변의 정세 불안과 오랫동안 실시되었던 봉금조치로 인해 동삼성에 집중 분포되었던 대규모 황장·왕장에 대해서는 관내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1914년 북양정부는 黑龍江省을 시작으로 吉林省에서 「淸丈局之淸丈放荒辦法」을 公布하고 淸丈·放荒·招塾 등의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실시하고자 하였다.[35]

한편 봉천성의 경우 장작림 정권이 일찍부터 황장과 왕장에 대한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재정을 확충하였다. 이들은 청조 황실, 왕공부는 기지를 관리할 능력이나 기지 정리사업에 저항할 실질적인 능력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간주하였다. 이에 관지청장국은 소조정 산하 내무부가 관할하는 관장의 토지를 原額莊地와 浮多地로 나누어 파악하고, 전자를 청조황실의 사유지, 후자를 관유지로 간주하였다. 원액장지란 관장을 설정하던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그 연혁이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 가능한 토지였다. 반면 부다지는 관장 설정 이후 개간 등으로 이유로 확대된 토지였다.[36] 부다지를 관유지로 볼 수 있었던 근거는 전술한 것처럼 이들이 餘地로 간주되었던 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원액장지와 부다지를 구별하고자 한 것은 행정상의 조치일 뿐 실제로 양자 사이에 명확한 구분 경계가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봉천

35) 「淸丈局之淸丈放荒辦法」, 郭保琳等 編, 『東三省農林墾務調査書』, 發行處 不詳, 1915, 148-154쪽.

36) 「奉省丈放內務府莊地章程」, 滿洲國民政部土地局 編, 『土地関係舊法規』, 1934, 57-61쪽.

성 관지청장국이 관유재산인 부다지의 장출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소조정 내무부 관장의 처분에 관여할 계기를 찾아내면, 그 여파가 다른 내무부 관장지 전체로 확산되리라는 것은 당시 만주족에게 불리하였던 정치적 역학관계상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내무부는 산하의 장지를 충실하게 관리하거나 또는 처분할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들은 다만 관지청장국이 규정한 원액지가 매매되고 난 이후 발생하는 수입은 청조 황실의 것으로 한다는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청조 황실은 종래 자신들의 사산으로 인정받던 기지마저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후 盛京戶部 관장, 盛京禮部 관장 등에 소속되었던 황산이 잇따라 민간에 매각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37]

왕장도 마찬가지였다. 신해혁명 이후 기존의 왕장에 대해서는 왕공의 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이는 원액지에 대해서만 해당되었으며, 부다지는 여전히 관유지로 간주되었다. 이에 1915년에 「查丈王公莊地章程」이 공포되어 우선 官有地로 상정된 부다지의 불하가 착수되었다. 이에 토지 매각 수입 중 부다지에 대해서는 모두 각 지역당국의 수입으로 하고, 원액지에 대해서는 20%를 관이, 나머지 80%는 각 왕공부가 수령하는 것을 규정하였다.[38] 이에 관지청장국은 정리 대상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갔다. 이에 1915년부터 1923년 사이에 봉천성이 획득한 관유지 매각 대금은 동기간의 봉천성 세입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관유지 매각으로 얻은 수입이 얼마나 방대한 것이며, 이것이 당시 장작림 정권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재원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39]

그러나 동삼성 관장 및 왕장의 전호들은 관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그들의 永佃權이 박탈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관유지 매각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동삼성 재지 사회에 뿌리 깊

---

37) 「盛京戶部官莊」, 滿洲帝國協和會 地籍整理周分會 編,『土地用語辭典』, 嚴南堂, 1939, 356쪽 ; 「盛京戶部官莊」, 같은 책, 357쪽.
38) 「查丈王公莊地章程」, 滿洲國民政部土地局 編, 앞의 책, 61-63쪽.
39) 「一. 奉天省國家財政歲出入統計預算表」, 園田一亀, 『奉天省財政の研究』, 盛京時報社, 1927, 附録 1쪽.

게 존재한 것은 사실이었다.[40] 그러나 재지 유력층의 경우 관내와 달리 관유지의 매각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관유지는 특정한 業主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전술한 영전권 등의 권리를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해당 관유지에 대해 청장 실시 후 매각이 확정된다면 이를 매입하여 자신의 업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졌다. 물론 이들이 매입에 따른 지가와 지세 납부의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매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이 더 큰 경우 이들은 적극적으로 관유지 확보에 나섰다. 반면 민유지의 경우 토지 청장이 실시되면 지세의 증액만이 초래될 뿐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었기 때문에 청장에 대해 전호 뿐만 아니라 재지지주 역시 격렬하게 저항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관지청장국은 관황지, 황산, 왕장, 직전 등 관유지의 정리에는 비교적 성공하였으나 민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재정 사정이 넉넉하여 매각되는 관유지를 확보할 여력이 있던 일부 만주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만주족이 동삼성에서 물적 기반을 확장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생산 시설을 수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신해혁명 이후 동북 각지의 주방팔기 소속 만주족의 경우 비록 지역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향이 중지되면서 대다수 기정이 수입을 상실하였다. 여기에 사유재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놓인 만주족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는 관내의 만주족과 사정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원래 동삼성에 거주하면서 기지를 할당받은 만주족은 한족과의 오랜 동거로 인해 혁명 이후에도 반만정서로 인해 핍박당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다. 혁명 발발 당시 동삼성총독이었던 조이손의 결정에 따라 관내로 지원군을 파병하지 않아 만주족의 인적·물적 손실 역시 적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사

40) 王魁喜 外, 『近代東北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48, 446-454쪽.

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기반을 비교적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들이 대부분 기존에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토지와 유리되지 않아 자신들의 기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방의 폐지로 군사적인 힘과 근무처를 상실하더라도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역시 생계유지 방책을 도모하기에 유리하였다. 전술한 훈춘 만주족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동삼성에 만주족에게 할당이 가능한 토지가 존재하였다는 것 역시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동삼성은 『우대조건』에 따라 官荒地를 만주족에게 분배하거나, 計口授田 혹은 隨缺伍田을 통해 만주족의 생계를 해결하였다.[41] 1917년 반포된 「修定吉林通省旗署官産變賣章程」에서는 관산을 처분한 경우 그 40%는 기인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42] 따라서 동삼성 만주족은 신해혁명 이후 기지의 승과 및 기존 민지와의 징수 기준 통일에 대해 비교적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동삼성 만주족이 군인에서 농민으로 변모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만주국 시기 상공업 및 기타 전문직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삼성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산업자본 역시 만주족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활용되었다. 봉천재지 자본의 경우 대략 상공업에 종사하여 자본을 축적해 갔던 상업·금융계의 자본가, 동삼성 전·현직 성의원·관료·군벌과 그 자손, 舊 만주귀족과 旗人 출신, 또는 동삼성관은호와 같은 성정부 출자의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특권 계층으로서 과거 혹은 당시의 각종 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봉천은 청조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현임 관리가 아니더라도 유력인사들이 대거 거주하는 등 동북 최고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실제 혁명 이후에도 봉천성의 경제적, 군사적 실무진 중 만주기인 출신 및 몽골 기인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던 점

41) 高強, 「章炳麟出任東三省籌邊使始末」,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5券 2期, 86-93쪽.
42) 윤욱, 「琿春 旗地의 소유와 운영, 1879-1931」, 『동방학지』, 2018, 131쪽 ; 윤휘탁, 앞의 논문, 69쪽.

역시 이를 증명한다.[43] 특히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와 안정에 힘을 쏟고 있던 장작림 정권과의 적극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상점 경영의 유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장작림 정권은 奉天票라는 불환지폐로 자본을 만들어 내고, 관영사업을 통해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德聚和 상점의 경우 봉천 旗族 중 대자산가이자 內王府 佐領 및 奉天府陵 관리를 역임한 同介臣 등이 주도하여 설립되었으며, 英利源 상점은 만주족 최대 莊頭였던 대지주이자 富商인 多鳳閣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록 수적으로는 다른 집단 출신에 비해 적었으나 자본 규모는 상위권을 차지하였다.[44] 이들의 존재는 만주족의 경제적 기반이 기지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활동을 넘어 근대 상공업으로 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한편 전술한 동삼성 정부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황산은 여전히 황실의 소유로 남아있었고, 소조정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1924년 김량의 건의서에서는 "중요한 것은 비밀리에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 재산을 정리하여 재정을 재건해야 합니다. 정리의 방법은 토지로 된 재산과 보물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토지재산의 정리는 북경 및 동삼성에서부터 착수합니다. … 동삼성은 봉천의 염전·양어장·과수원, 三稜의 莊園, 내무부의 장원, 관유삼림, 길림·흑룡강성의 조공품 산지, 汪淸 등지의 棚地입니다. 이 안에는 석탄·철·보석 등의 광산이 포함됩니다. 그중 하나만 얻어도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에 족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황실의 재산이고, 사람을 얻어 정리하면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체적인 황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45] 실제 이는 선통제가 1924년 출궁 이후 1931년 만주국에 합류하기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으로 기능하였다.

---

43)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田邊種治郎發行兼編輯, 『東三省官紳錄』, 東三省官紳錄刊行局, 1924 참고.
44) 김희신, 「중국 동북지역의 상업자본과 상점 네트워크」, 『중국근현대사연구』, 54-58쪽.
45) 「內務府大臣金梁條陳二事折十三年三月十日」, 『甲子淸室密謀複辟文證』, 著者 不詳, 發行處 不詳, 1925 ; 애신각라 부의, 이충양 역, 앞의 책, 201-202쪽.

관내와 관외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북양정부 시기 『우대조건』에서 명기한 “황실 및 왕공의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양정부는 『우대조건』 위반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조치를 통해 기지를 民糧地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미준수에 따른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신해혁명 직전 개간된 만주족 사간지의 경우 내무부의 장부에 제대로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황지의 경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 그 제반 권리는 만주족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몰수하였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또한 『우대조건』에서 기지를 매각하여 기인의 생계에 충당하겠다는 약소이 과연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40% 정도가 기인을 위한 예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은 대부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중앙 정부 또는 지역 정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봉천성의 장작림 정권이 보여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기지 매각 대금으로 응당 충당되어야 했을 기인의 기향 지급은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황실 및 왕공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전술한 것처럼 地産捐 등 조세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황실과 왕공이 사적으로 기지의 매각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경우 이마저도 소작권의 안정을 염려한 전호 및 해당 지역 당국의 반발에 부딪혀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아울러 청대 이후 기지의 관리자로서 존재하였던 장두의 존재는 만주족과 일반 전호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하였다. 전술한 것처럼 장두는 전호에게 소작료를 선납받아 만주족에게 기조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전호에게 이중 납부, 과잉 납부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기조의 납부 과정에서 장두가 상당액을 착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장두는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반대로 기지의 조주였던 만주족은 기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곤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지의 매각 과정에서 장

두에게 그 대금의 일부가 배당되면서 실제 만주족이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매각 대금은 줄어들었다. 아울러 장두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부재지주인 만주족의 지배력을 대신 향유하였다. 이는 만주족의 사회경제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 사회·문화적 일체감 계승을 위한 노력

만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양성하고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함으로서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일체감을 계승하는 데에는 전술한 단체 활동 이외에 언론기관을 통한 여론 형성과 차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였다. 당시 『京話日報』, 『盛京時報』와 『旗族』은 만주족의 상황을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중심에 있었다. 이중 『경화일보』는 彭翼仲이 1864년 베이징에서 창간하였으며, 민족자본이 발행한 최초의 일간지였다. 청말에는 입헌개혁과 사회개량운동을 제창하여 북경 언론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혁명 이후에는 만주족과 청조유신 등을 주 독자층으로 하여 청조 황실을 옹호하는 등 보수적인 논조를 기반으로 하였다. 1917년 3월에는 『우대조건』의 존속을 호소하는 민간단체 "國信維持會"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는데, 문의단체의 연락처를 경화일보사로 기재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경화일보』와 만주족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46] 동시에 기인의 자살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노동이 불가한 노약자 및 여성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었다. 「記某旗人投河事」를 통해 생활고로 자살한 만주족 正覽旗人 출신 노인 일가의 사정을 둘러싼 한족의 시각과 기인의 시각을 비교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해당 기사를 투고한 耘墾이라는 한족은 이에 대해 "모욕을 당하면서 연명하기를 달가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해 집안의 명예를 존속시키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

46) 「發起因信維持會啓事」, 『京話日報』, 1913.3.3.

였다. 이에 대해 주필이자 정홍기 기인인 吳梓箴는 기사 말미에 “전청이 遜位하고 공화의 민국이 중화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예법에 따라 양위한 것인지 강탈당한 것인지에 대해 記者는 우매하여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종종 들려오는 기족의 자살 사건은 대부분 전청의 관리와 兵丁 출신에 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자립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것에 무슨 의기가 있는 것인가 비난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자는 이러한 말들이 진상을 모른 채 비난만을 일삼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기족의 빈곤은 工人이 도구를 빼앗기고 농민이 전답을 탈취당한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는 時勢에 몰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비난받는가”[47]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는 근본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확보하지 못한 기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한족 기인인 張福榮이 1914년 4월에 창간한 月報『旗族』은 팔기 내에 소속되었던 만주족, 몽골족, 한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旗族』三期에 발표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이들은「旗族學校何不加以整頓乎」를 통해 관과 귀족 이외에 有識者가 없음을 개탄하며 교육을 통해 중화민국의 重任을 담당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아울러「寗垣旗人之苦況」을 통해 남경 기인 중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충을 겪거나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진술하고, 부유한 上等旗人과 富紳貴官에게 이를 알려 이들의 구제를 촉구하자고 여론을 조성하였다.[49] 아울러「墾荒地面積」을 제시하여 동삼성 및 열하에 위치한 황지의 면적이 총 14,400만 晌이며 開墾地가 954만 여 晌에 이른다고 소개하고, 각 성별로 수치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이 개척을 위해 이민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홍보하였다.[50] 이외에도 각종 청원서, 단체 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

47)「記某旗人投河事」,『京話日報』, 1918.7.25.
48)「旗族學校何不加以整頓乎」,『旗族』, 1914年 第三期, 24-25쪽.
49)「寗垣旗人之苦況」, 위의 책, 46-47쪽.

하면서 단결과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주족의 교육을 위한 각종 학교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았다. 개인과 기관 모두 팔기 또는 만주족과의 연관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분위기에서, 신해혁명 이후 만주팔기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명칭에도 역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부 팔기학교들은 교명에서 "팔기"라는 용어를 삭제했다.[51] 그 예로, 봉천성에 설치되었던 官立維城兩等小學堂의 경우 본래 황족 자제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으나 신해혁명 직후에는 求實中學, 1912년에는 奉天省城公立籌邊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여 신정부의 의도에 부합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시기 만한공학으로 학교의 체제가 변동되고 교육방침 역시 중화민국의 교육이념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특별하게 교사진이 변동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만주족들이 그대로 재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에서 만주어 교육 등 만주족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역시 새로운 교육체제와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1919년에는 省立奉天第一師範學校, 奉天省立第四中學으로 분리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 만주어와 한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만인들이 대거 양성되었다. 이는 1934년 奉天維城學校로 개편되어 만주국 유일의 만주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밑바탕으로 작용하였다.[52]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북경의 경우는 사정이 좀더 복잡하였다. 신해혁명 이전 북경의 팔기학당은 八旗衙門이 관장하였고, 해당 경비는 기전으로부터 징수하였다. 청말 북경 팔기의 교육열은 활발하였으나 민국기에 접어들면서 생계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학비 등을 무료로 하고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곧 재정난이 뒤따랐다. 민국 성립 이후 팔기학교는 경사학무국에서 반의 개수에 따라 매월 10위안의 경비를 지급받고, 학교가 보유한 기전으로부터 부족한 경비를

---

50) 「墾荒地面積」, 위의 책, 44쪽.
51) Shao Dan, *Ibid.* p.65.
52) 潘懋元·劉海峰 編, 『中國近代教育史資料彙編 - 高等教育』, 上海教育出版社, 2007, 114-122쪽.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 그러나 학무국 경비의 지급 지연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60% 정도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成都의 경우처럼 만주족이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의 의지를 추구한 지역도 존재하였다. 신해혁명 직후부터 이 지역에서는 만주족 대표들이 군정부와 교섭하여 유혈사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八旗高等小學堂의 존속에 관한 협상에도 성공하였고, 1912년 小城高等小學校로 교명을 변경하여 계속 운영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운영경비가 부족해지자 만주족이 다시 군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고, 군정부는 만주족 생계에 안배된 기금 중 200元을 학교에 배정하여 주었다. 이후 1917년 발발한 호법전쟁으로 인해 군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자 학교의 각종 집기 등을 매매하여 학교 운영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곤란해졌다. 1925년까지도 계속되는 군벌간 대립에 校舍가 파괴되는 등 위기가 지속되었으나, 교장 이래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 교육에 매진하면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만주족 역시 "一錢損" 운동을 벌이며 학교 존속을 위해 소액이라도 후원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1937년 성도시정부의 요구에 따라 학교가 동사회를 설립하고 私立小城小學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나 학교의 기존 운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서야 운영에 한계를 느껴 校産을 매매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까지는 만주족 사회가 단결하여 어떻게든 학교 운영을 지속하고자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53]

각종 학교에 재학하는 만주족 역시 빈발하는 만한갈등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지속하면서 민국 내에서의 앞날을 모색하는 한편,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권리찾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술한 성도의 사례처럼 만주족 사회가 전면으로 단결한 경우 이외에도, 관리로 재직하는 만주족 또는 지역 유력자층 역시 재정 보조 혹은 기부를 통해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正紅旗蒙古旗署 부속 고등초등학교와 국민학교는 창설 이후 몇

53) 趙爾澄, 「從八旗學堂到少城中學」,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四川省成都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文史資料』第30輯, 333-336쪽.

년째 성적이 매우 좋다. 요즘은 경비가 부족하여 교장 常子受, 교원 倭秋卿, 占詩農, 白仁寶 등은 모두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직무를 다하고 있다. 正紅旗 蒙古都統 季子壽(桂錄)은 이를 알게 되자 이 학교의 부족분 경비를 보고하게 하고 재정 보조를 통해 학교 운영을 어떻게든 지속하도록 하였다"를 들 수 있다.[54]

한편 동북 상층 만주족의 경우 훈춘의 사례처럼 지역의 만주족 유력자들이 청말 이래 自治研究所, 勸學所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만주족이 향촌 엘리트로 성장하여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관문은 신해혁명 이후 새로 설치된 정규학교에 입학해 근대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훈춘의 만주족은 자제들을 신식학교에 보내 교육시키는데 열심이었다. 이들이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에 진학하게 되면 길림성정부에서 학비보조비를 지급했는데, 그 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상당하였다. 학비보조비를 신청해 학업을 계속하려는 만주족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자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동안 별다른 일거리도 없으면서 존속하고 있던 旗務科를 폐지하고 그 운영비를 旗生의 학비보조로 충당했다. 아울러 1929년 八旗 官兵이 폐지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던 旗餉도 배급 중단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旗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旗生의 학비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55]

한편 동삼성의 팔기학교에서는 신해혁명 이후에도 1909년 편찬된『滿蒙漢三合教科書』를 교재로 활용하였다. 이는 商務印書館이 출판한『最新初等小學國文教科書』를 저본으로 하여 편집한 것으로, 신해혁명 이후 신국체와 교과서 내용의 부합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배포가 중단되었으나 봉천성 정부에 의해 사용이 허용되었다. 이에 1920년대까지 奉天蒙文學堂, 滿蒙文中學堂, 本省滿洲小學堂, 吉林省滿蒙文中學堂, 黑龍江省滿蒙文中學堂 등 동북지역 만주족 또는 몽골인이 주로 재학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배포되었다.[56]

---

54)「學務維持」,『京話日報』1916.2.21.
55) 윤욱, 앞의 논문(2015), 325쪽.

해당 교과서는 편찬 당시 청조 학부의 교육종지가 “忠君, 尊孔, 尙公, 尙武, 尙實”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의 기조 역시 이를 기본으로 한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을 나눈다면 忠君, 尊孔에 해당하는 地理, 曆史, 道德, 尙公에 해당하는 教育, 尙武에 해당하는 軍事, 기타 尙實에는 天文, 礦產, 工業, 農業, 商業, 經濟, 書信, 帳簿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편찬 초기 저본에서도 課名에 “吾國”, “我國” 등의 표현이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가 군주에 비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는 신해혁명 이후 개정 과정에서 모두 중립적인 용어인 “中國”으로 수정되었다.[57] 이외의 내용은 편찬 초기부터 근대 국가로의 변모를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만주, 몽고, 신장 등 변강지역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민족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대신 중국 관내와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本部의 동북을 만주라고 하는데 세 개의 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후는 비교적 서늘하고 수풀이 우거져 있다. 목축에 뛰어나고 광산이 풍부하여 막대한 이익의 원천이다. 몽고는 본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가 사막이고 物產이 매우 적다; … 靑海의 서남을 西藏이라고 하는데 산이 많고 지세가 매우 높다. 청해의 서북을 新疆이라고 하는데 비록 최근 성이 설치되었으나 토지는 광활한 대신 인구가 희박하여 본부에 비할 바가 못된다”[58] 처럼 민족명을 중국 본토와의 연계 속에서 지역명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외에 “鹹豐十年”을 “前淸鹹豐十年”으로, “一通山海關”을 “一通奉天”[59]으로 고치는 등 청조 혹은 만주족의 특색이 드러나거나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은 최대한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그러나 「鴉片」, 「天津」 등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책

56) 李勤璞, 「《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的翻譯頒行(上)」, 『滿語研究』 2014年 01期, 42쪽.
57) 林士鉉, 「《滿蒙漢合璧教科書》與淸末蒙古教育改革初探」, 『輔仁歷史學報』 第三十二期, 2014, 147쪽.
58) 第六冊 第四十五課 「天津」, 故宮博物院 編, 『滿蒙漢合璧教科書 等三種』 第2冊, 海口 : 海南, 2001, 92쪽.
59) 上同.

임을 청조가 아닌 외국 세력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청조에 대한 비판은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다. 「鴉片」에서는 "우리 국인의 빈곤함이 초래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아편이 개인에게 미치는 폐단만 언급되어 있을 뿐, 이를 통해 촉발된 국제적 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天津」에서도 "庚子之役", "八國聯軍"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가장 초급단계의 교과서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청조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다. 단지 「義和團」에서 "正確을 애국의 방법으로 삼으며 '提唱學術'과 '改良政事'을 통해 自立自強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6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해혁명 이래 만주어로 편찬된 교과서는 청조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국민"으로의 전환을 위한 근대 교육에 그 중심을 두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적 위기가 초래된 것은 일탈한 개인의 책임이거나 외부 침입세력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청조의 과오는 서술되지 않음으로서 만주족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은폐되었다. 그러나 만주어 학습과 계승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중요한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던 상층 혹은 중산층 만주족은 교육을 통하여 앞날을 모색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청말 平滿漢畛域 이래 생계문제를 호소하던 하층 만주족에 대한 구제와 계몽 역시 필요하였다. 이에 청말이래 추진되었던 구제책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출현하였다. 신해혁명 직전인 1911년 봉천기무처 총판으로 재직하던 김량은 팔기생계를 위해 八旗興業銀行을 설립하고 그 자본을 이용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팔기생계 조달의 경로로 興業, 八旗工場 및 八旗銀行 등을 설립하고, 官産淸算을 통한 팔기의 생업 관리 및 八旗生業備를 조성하고 八旗學堂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해혁명

60) 上同 ; 第四冊 第三十五課 「鴉片」, 第八冊 第五十四課 「義和團」, 故宮博物院 編, 앞의 책, 60-62쪽; 440-443쪽.

이후 이 계획은 1913년 隨缺·伍田의 장방이 시작되기까지 보류되었다. 이에 이를 복구하여 만주족의 생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민국정부 수립 이후 수결지 및 오전을 기병의 사산으로 규정하여 국유화에 나섰고, 이에 만주족들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만주족은 "본래 기지는 수결지와 오전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오전은 본래 국유지였는데 청조가 둔전주의를 채택하여 기인들이 이를 나누어 대를 이어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그 성격상 旗兵私産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봉천행성 관공서는 이들 토지를 국유화한 후 매각 비용을 만주족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투자하여 장차 기인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지속되던 논쟁 끝에 1914년 장작림은 내무부에 "오전은 여전히 장방하되, 4할은 일반 민중, 6할은 기인에게 지급한다"는 통지를 보내었다. 만주족 단체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관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수결지와 오전이 국유화되는 것이 대세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상대적으로 만주족의 이익이 고려된 처사였다. 이에 봉천성은 민중에게 할당된 부분에 대해 흥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매각대금을 거두어 35%는 생계에 충당하고 5%는 각 학교의 운영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61] 이는 학교를 설립하여 근대 학문에 적응하고, 이를 토대로 생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훈춘의 경우 청말부터 만주족의 교육을 위해 활용되었던 學田은 민국시기에 더욱 확대되었다. 1918~1922년 사이에만 6,546晌이 새롭게 학전으로 등재되었다. 그 지주는 권학소와 그 후신인 교육국으로, 그 책임자들은 지역 출신 상층 만주족이었다. 학전의 운영 수입 역시 만주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직원의 봉급에 할당되었다. 이는 후속세대의 교육과 사회진출을 위한 재원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혜택을 입은 졸업생들은 성내 학교 소재지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과 산업에 종사하였다. 북경 등 대도시에 가서 전문학교나 대학을 마친 학생들도 귀향하여 교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

61) 「丈放旗地風潮之結果」, 『盛京時報』 1914.3.18.

았다. 이는 대도시에서는 만주족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심해 졸업한 후 정착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후속세대를 양성함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만주족의 영향력은 미약하게나마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62]

아울러 1915년 원세개는 전국적으로 공장과 각종 기관을 설립하여 만주족의 생계 보장에 나섰다. 또한 공업과 상업에 대한 지식의 유입을 위해 簡易工商養成所와 手工學校를 설립했다. 동시에 반일제 학교와 야간 학교 등을 마련하여 생활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63]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실제와 맞지 않고 실행이 어려워 봉천성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되었다. 이마저도 원세개 사후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봉천성정부는 공장을 상업적으로 전환해 기존 팔기공장의 폐해를 개혁하고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자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64] 각급 만주족 학교에서는 수요가 적은 과목을 통폐합해 경비를 절감하였다.

이러한 동삼성의 독자성 때문에 동삼성으로 이주하는 관내 만주족 지식인의 수 역시 증가하였다. 이들은 『盛京時報』, 『東三省民報』 등의 언론기관에 종사하면서 만주족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신문 사설과 문학작품을 통해 표출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국내외 만주족의 동향 등에 대해 기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작가 穆儒丐의 삶은 만주족 지식인의 좌절과 방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는 만주족 正藍旗人 출신으로 北京에서 출생 후 일본 유학 생활을 거쳐 1911년 귀국하였다. 그해 法政科 擧人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관리 임용 직전 청조는 멸망하였다. 1912년 북경의 大華日報社에 기자로 입사하였으나 원세개 사후인 1916년 해당 신문이 정간되어 실

62) 윤욱, 앞의 논문(2018), 165-166쪽.
63) 「變通旗制處會奏遵議三多奏變通旗制應多立手工學校等折」, 『政治官報』 第八百二十九期(1910年1月12日).
64) 「關於創辦奉天八旗工藝廠的奏折」, 『奉系軍閥檔案史料彙編』 第一卷, 江蘇古籍出版社, 1990, 462쪽.

직하자 심양으로 이주하여 奉天法政專門學校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1917년 성경시보사에 입사하면서 『성경시보』의 문예란인 「神皐雜俎」를 만들고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하는 시점까지 이를 담당하면서 「北京」 등의 작품을 게재하였다.[65] 그는 이같은 자신의 삶에 대해 「北京」에서 주인공의 상황을 빌려 "가난한 기인 출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가르치는 일이나 매달 50元을 받는 신문기자직만이 가능할 뿐이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66] 그러나 1931년 6~7월 경에 北平으로 돌아온 목유개는 9.18사변 발발 직후 『성경시보』에서 이어오던 논설문과 소설의 연재를 중단하였다. 1933년 다시 6월경 심양으로 재이주하고 난 이후 『성경시보』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전과 같은 시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글은 사라지게 되었다.[67] 이처럼 일본의 동삼성 진출과 맞물려 각종 언론기관이 친일적 성격으로 변모해 가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족 중심의 시각에서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만주족의 여론이 보다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제한적으로나마 이어갈 수 있었다. 동삼성이 지니고 있던 독자성과 당시 동삼성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의 복잡성은 역으로 만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3. 종사당의 민족국가 수립 시도

상술한 것과 같이 신해혁명 직전 국체변환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졌을 때, 전술한 대로 숙친왕 등을 비롯한 황실 종친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종사당이 설립될 당시 숙친왕 선기와 공친왕 부위는 비밀리에 "여력이 미치지 못할 시

65) 김수진, 「旗人작가 穆儒丐 문학 연구 — ≪同命鴛鴦≫, ≪徐生自傳≫, ≪北京≫ 속에 새겨진 저장기억들」, 『중국어문논총』 48, 2011, 89쪽.
66) 「北京」(42), 『盛京時報』 1924.4.17.
67) 李麗, 「族群記憶與潛話語的意義──穆儒丐"九·一八"前後的創作」, 『新文學史料』 2019, 84-86쪽.

에 외세의 조력을 빌릴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이들은 먼저 군주입헌유지회의 명의로 일본공사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고, 숙친왕의 경우 신정시기부터 만주족이 작금의 위기를 타파하고 왕조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식의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여 강고한 황권 중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었다.[68] 이는 숙친왕이 가와시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청조의 오래된 조직은 부패하고 쇠락하는 가옥과 같다. 支柱를 철저하게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필경 전부 무너질 것이므로 근본적인 新建築이 필요하다. 만약 청조가 이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家主는 마땅히 愛新覺羅氏에게 속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인에게 조만간 경영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혁명이니, 그렇게 되면 '大淸'이라는 두 글자는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중국 자신을 위해 도모한다면, 혁명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명쾌하게 쉬운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大淸의 一家로 살아왔으니, 중국의 보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大淸의 운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무이다. 결연히 일어나 스스로 오래된 가옥을 무너뜨리고, 新建築의 도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일생의 志業使命이다."[69] 또한 청말 北京警務學堂의 學長으로 재임하던 가와시마 나니마(川島浪速)는 숙친왕 선기, 몽골 왕공 喀喇沁王 公貢桑諾爾布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종사당은 일본 측에 가장 먼저 지원 요청을 하였다. 가와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지원 하에 이들은 원세개를 암살하고 혁광, 나동 등이 중심이 된 친 원세개파를 몰아내어 현 내각을 전복시킨 후 毓朗, 載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황족내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升允을 흠차대신으로 하여 장강 일대의 병권을 장악하고 철량을 청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군권을 장악한 후 혁명세력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와시마 등은 숙친왕이 警政顧問의 신분을 이용하여 원세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종친들은 금위군 속에 위장침투한 후 "皇帝保衛라는 이름

68) 申鉉武·王銳波 編,『中國政黨政團大觀』, 延邊 : 延邊大學出版社, 1988, p.175.
69) 川島浪速 編,『肅親王』, 發行處 不詳, 大正3年, 19쪽.

으로 皇城 주위에 결집하여 봉기하고, 원세개가 친히 병사를 이끌고 공격하러 올 때 전투를 벌인다면, 장차 이것이 (정권 전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70)

종사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후, 원세개는 京津同盟會 分會로 하여금 종사당의 수뇌를 암살하도록 하자는 왕정위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1월 26일, 동맹회는 자객 彭家珍을 보내어 良弼을 폭사시켰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종사당 및 일본측 인사들은 금위군을 움직여 2월 3일 야심한 시각에 원세개를 습격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세개 주변의 경비가 매우 삼엄하여 실패로 돌아갔고, 종사당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다.71)

1912년 2월 12일 선통제의 퇴위를 전후한 시기 숙친왕 등 60여 명의 종사당원은 베이징 수비대장 일본 고문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의 협조 아래 비밀리에 뤼순으로 향했다. 나머지 종사당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복벽 활동을 지속하였다.72) 혁명 직후 승윤은 군대를 이끌고 무력투쟁에 나서는 한편, 북경 등지의 주둔군 및 금위군의 만주족들과 내통하여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73) 숙친왕은 일본군부와 외무성 및 관동도독부의 원조 하에 동북종사당을 조직하여 이에 응하였다. 길림성 안동현에서도 종사당의 반란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74)

한편 숙친왕 등이 도피한 이후 가와시마는 이들과 결탁하여 동삼성과 몽골 일대에 만몽연합왕국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삼고 일본 군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일본참모본부와 외무성의 지휘 하에 가와시마 등은 중국에 내란을 유발하여 중국을 분열시킨 후 침략할 것을 획책하였다. 총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엄호 하에서만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북방의 국가를 설립한다. 대청

---

70) 會田勉 著, 陳仲信 譯, 「川島浪速與"滿蒙獨立運動"」, 『近代史資料』 1982年 2期, 108쪽.
71) 張國淦 編, 앞의 책, 307쪽.
72) 申鉉武·王銳波, 앞의 책, 175-176쪽 ; 宋欣, 「宗社黨研究」, 西北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8-12쪽.
73) 「升允與某軍之關係」, 『盛京時報』 1912.3.15 ; 「宗社黨員之大肆煽惑」, 『盛京時報』 1912.5.7.
74) 「滿蒙獨立運動」, 『每日申報』 1912.2.21 ; 「宗社黨의 陰謀」, 『大韓每日申報』 1912.6.28.

의 이름을 유지하고 만몽을 거주하게 하여 실력을 배양한다. 민국 정부를 상대로 분란이 발생할 때에 중원으로 진격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몽골의 喀喇沁王 公貢桑諾爾布 등을 포섭하였다.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2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게 하여 근왕군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였다.[75] 동삼성에서는 가와시마와 일본 국회의원 佐佐木安五郎 등이 심양에 비밀거점을 설립하고 福島參謀次長과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서신을 통해 자주 왕래하였다.[76] 동시에 숙친왕을 수뇌로 하는 "大淸帝國勤王師總司令部"를 조직하고 비밀리에 종사당원들을 本溪, 遼陽, 봉천으로 파견하여 인민을 포섭하고 선동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차 선통제를 협박할 것을 계획하였다. 혹은 동삼성 총독 조이손 및 그 수하의 장작림 등 당시 동삼성의 실권자들을 포섭하여 지지를 획득한 후, 숙친왕을 '만주수뇌'로 하는 신국가를 수립할 것 역시 추진하였다. 이에 조이손과 장작림에게 기병하여 독립할 것을 권유하는 동시에 숙친왕이 근왕군을 통솔하여 1912년 9월 20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것이 제1차 만몽독립운동이다. 그러나 조이손과 장작림 모두 이같은 제의를 거절하였다. 일본정부 역시 북양정부와의 화친을 성립시키면서 일본군부의 지지 또한 철회되었다. 이렇게 제1차 만몽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77]

만주족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며, 그 명분과 상징성이 가장 높았던 곳은 동삼성이었다. 비록 상술한 대로 러시아와 일본 등 외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는 하였으나, 청말 동삼성 총독으로 재직한 조이손은 충심이 강한 청조의 관료 출신이었고, 휘하의 장작림은 군사적 능력은 출중하나 아직 동북 전반을 장악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을 포섭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실제로 당시 종사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단체로 1912년 8월 창립되었던 帝國黨의 구성원 중에는 장훈,

---

75) 鄒念之 編譯,『日本外交文書選譯-關於辛亥革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0, 70-89쪽.
76)「宗社黨史料」,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淸代檔案史料總編』第八券, 中華書局, 1982, 322쪽.
77) 會田勉 著, 陳仲信 譯, 앞의 논문, 108쪽 ; 胡平生,『民國初期的復辟派』, 臺灣學生書局, 1985, 36-40쪽.

장작림이 포함되어 있었다.[78] 다만 이들이 실제로 직접 가입한 것인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종사당이 동삼성으로 거점을 정한 이유에는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인 사유지 및 우호 세력인 몽골과의 접근성, 그리고 일본의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종사당 지도자들은 동삼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청조부활의 주된 기반으로 간주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동삼성은 만주족의 추진력과 세력을 키우기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근방의 몽골인들은 쉽게 동원될 수 있었고 종사당에 동조하는 많은 만주족을 쉽게 모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청의 옛 수도인 봉천은 해당 지역의 병력이 베이징 및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기 전에 결집한다면 선통제를 즉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될 수 있었다.[79] 종사당의 지도부는 또한 동삼성 지역사회와 몽골에 선동가들을 보냈다. 종사당과 관련된 지역별 소요는 이들이 민국 초기 동삼성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80]

그러나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당시 지역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이손과 장작림은 종사당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았다. 조이손이 충성할 대상은 청조와 선통제였다. 청조는 멸망하였으나 정권의 이양 절차는 적법하였다. 선통제는 신정부 체제 내부에서 소조정을 운영하며 존속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종사당에 가담하는 것은 선통제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되므로 조이손이 이같이 행동할 가능성은 낮았다. 다만 종사당과 선통제와의 연관성을 차단하고 황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조이손은 원세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삼성에 체류하는 청조 황실 인사들이 종사당 가담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였다.[81] 그러

78) 帝國黨은 선통제의 복위와 군주입헌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상해에 지부를 두었다. 주요 구성원은 革勛, 張勳, 徐寶山, 張作林, 鄭孝胥, 升允 등으로 주로 天津, 陝西, 甘肅 등지에 분포하였다. 竹內克己, 『支那政黨結社史』, 刊寫者未詳 : 漢口, 大正7(1918), 203-214쪽. 다만 조이손의 경우 이후에도 부위가 이끄는 종사당의 구성원의 명단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는 등 줄곧 만주족 황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종사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보다는 전술한 것처럼 『청사고』 작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79) 「欽差大臣尙書銜東三省總督兼三省將軍奉天巡撫事趙」, 『奉系軍閥檔案史料匯編』 제1권, 547-548쪽.

80) 「欽命奉天旗務使司旗務使恩」, 위의 책, 62, 446-451, 568, 689-690쪽.

나 원세개는 이들이 일본과의 합작을 통해 일본과 소통하며 군자금을 지원받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는 외세의 침략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라고 재차 경고하였다.[82] 이후 조이손 역시 입장을 변경하여 동삼성 관료들에게 이들의 활동을 통제할 것을 명령하였다.[83]

장작림의 경우 이후의 행보를 볼 때 명분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쪽에 가까웠다. 여기에 조이손이 물러난 이후 동북의 행정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작림에게는 섣불리 종사당에 가담하여 자신의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세력을 강화하여 동북을 장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종사당과 일본의 합작 활동을 방관하는 동시에 종사당에 가담도 하지 않는 등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宗社黨 지도자들은 동삼성에서 '만주'라는 민족주의적 미사여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교적인 '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동삼성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북양정부에 대항하여 군주입헌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전략을 수정하였다.[84]

그러나 동삼성 만주족이 청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였다. 기실 청조와의 유대감은 청조 멸망 이전부터 느슨해진 상태였다. 신해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삼성 토착 만주족 중 일부는 혁명세력에 가담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설사 발각된다 하더라도 조이손은 단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뿐 해당 가문 전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이는 동삼성에서의 소요 발생을 방지하여 외세의 간섭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는 혁명 초기 강경 진압을 견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혁명세력에 가담한 만주족의 명단을 불태우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청말 러시아와 일본의 침략 위기에 대한 청조의 미흡

81) 「袁世凱爲防範宗社黨赴奉運動隊致趙爾巽電」, 『奉系軍閥檔案史料彙編』 第二卷, 江蘇古籍出版社, 1990, 56쪽.
82) 「警務局密報宗社黨活動情況給趙爾巽呈」, 위의 책, 59쪽.
83) 「趙爾巽爲防範宗社黨起事給各地軍政官員的電文」, 위의 책, 62쪽.
84) 「關於防範宗社黨在遼南遼東一帶活動的文件」, 위의 책, 446-451쪽.

한 대응을 목격한 일부 동삼성 만주족은 적극적으로 의회설립운동을 개진하면서 자치권 획득을 통해 스스로 위기를 타파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국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민국 성립 이후 만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은 특권 보장을 위한 보증이 아니라 '오족공화'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삼성에서 만주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여 종사당의 대규모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동삼성으로 이동하여 종사당에 참여했던 황실 인사들은 종래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지를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하면서 분산되었다. 통합된 구심점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당의 세력은 동삼성에서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종사당의 중심은 잠시 관내로 이동하였다. 부위를 중심으로 한 일파는 靑島에서 종사당을 재조직하였다. 이들은 濟南, 상해, 광동, 남경 등지에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前 軍機大臣 鬱生 등과 합류하여 1913년 二次革命 전후 濟南復辟과 南京復辟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상해에서는 鄭孝胥 등이 上海東亞日文書院長, 일본 해군 출신 무나카타 코타로(宗方小太郎) 등과 비밀리에 결탁하여 일본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다. 이들은 당시 도쿄에 체류하고 있던 승윤을 대표로 하는 復辟進步黨을 설립하였다. 西北에서는 승윤이 1913년 6월 '陝甘總督' 명의로 20개 행성에 「檄告天下文」을 공포하여 종친왕공과 만한대신에게 "동시에 기의하여 復辟을 함께 도모하자"고 호소하였다.[85] 이는 일본의 비호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1914년 4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제2차 내각이 조직된 이후 일본은 종사당의 만몽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이를 중국에 세력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에 內田良平 등의 對支聯合會, 大竹貫二 등의 國民議會 등이 종사당을 원호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다.[86] 종사당은 일본에서 다시

85) 「檄告天下文」, 『民立報』 1913.7.4.
86) 王柯, 「亦師亦友亦敵: 民族主義與近代中日關係」,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설립되었으며, 總部를 도쿄에 설치하고 大連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동삼성이 다시 종사당의 활동무대로 부상한 것이다.

당시 주요 구성원은 肅親王 善耆, 恭親王 溥偉, 陝甘總督 升允, 蒙古貴族 巴布紮布, 富昇阿 등의 만몽왕공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日本人으로는 川島浪速, 頭山滿, 山田修, 若日太郎 등 30여 명이 가담하였다. 이에 신해혁명 이후 대련으로 이주하였던 숙친왕이 대련지부를 이끌면서 가와시마 나니마 등과 공동으로 무력행사를 통한 복벽을 모의하였다.[87] 한편 1914년 11월 일본군의 청도 점령 이후 부위는 일본의 지지 하에 청도에 종사당을 중건하였다.[88] 일본의 대외적 지원과 청조 유신 및 몽골과의 연대를 통해 종사당은 점차 그 세를 조직해나갔으며, 동삼성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였다.

1915년 1월, 일본은 원세개 정부를 향해 정식으로 「二十一個條項(이하 '21개조 요구')」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당시 일본은 종사당을 협상의 가장 유력한 패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의 보호 아래에 있는 종사당원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협상의 유인조건으로 설정하고, 원세개로 하여금 「21개조 요구」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원세개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차 종사당을 선동하여 "원세개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기세를 드러내게 하고 이를 원조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제2안으로 종사당을 활용하여 원세개 정부를 붕괴시킬 방안 역시 강구하였다. 만약 원세개가 세간의 추정대로 稱帝를 도모한다면 중국 내의 세력이 분열될 것이 분명했다. 이에 일본은 종사당을 추동하여 풍국장·단기서와 연락하게 하여 일단 중·일담판을 파열시키게 하려고 하였다. 이후 신속히 행동하여 원세개 살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원세개가 「21개조 요구」를 승인하면서 종사당원을 활용하여 원세개를 압박하고자 하였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89]

Press, 2020, 367-368쪽.

87) 胡平生, 앞의 책, 113-114쪽.

88) 「短話(二): 革命黨欲借助於某國宗社黨亦欲借助於某國」, 『雅言(上海)』 第1卷 第11期, 12쪽.

이 무렵 장작림의 세력이 동북 전체로 확산되면서 일본 군부, 종사당과 장작림의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 다나카 키이치, 奉天總領事 代理領事 야다 시치다로(矢田七太郎) 등은 만몽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작림을 이용해야 하며, 장작림이야말로 일본 최대의 협력자이므로 그를 이용해 일본이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동삼성을 점령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반면 만몽독립운동을 추진하던 가와시마 등은 장작림을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그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1916년 5월 이토 준노스케(伊達順之助) 등이 滿蒙決死團을 조직하여 장작림을 암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야다 총영사 등이 이를 종사당의 소행으로 위장하면서 서로간에 불신이 깊어졌다.[90]

여기에 장작림 정권의 흑룡강성 장악 과정에서 만주족을 이용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흑룡강성은 성장군 주경란과 육군 1사단 사단장 許蘭洲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1916년 3월 17일 흑룡강성 육군 제1사단 사단장 허란주는 흑룡강성 치치하얼(齊齊哈爾)에 거주하는 소수의 만주족을 추동하여 전단을 살포하였다. 해당 전단에는 모든 만주족이 팔기공장으로 모여 기인의 생계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집회를 위해서는 법률상 해당 경찰국에 먼저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은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국에서 사람을 보내 집회가 예정된 공장 주변을 감시하게 되었다. 해당일에 영문을 모르고 모였던 이들은 경찰의 감시를 목도하고 모두 근방에 위치한 허란주의 부대로 피신하였다. 허란주는 중재를 자임하면서 만주족에게 북양정부에게 전문을 보내 사건의 배후에 주경란이 있다고 고발하도록 하였다.[91] 이에 주경란은 이는 허란주의 음모이며 오히려 그가 만주족을 선동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진정을 제출하였다.[92] 이 과정에서 장작림은 처음에는 허란주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주경란이 광

89) 胡平生, 앞의 책, 116-117쪽.
90) 伊達宗義, 『灼熱: 実録 · 伊達順之助』, 蒼洋社, 1979, 61쪽.
91) 淩鳳桐, 「許蘭洲與畢桂芳之爭」, 『齊齊哈爾文史資料』 1986年 第3-4輯, 29-30쪽.
92) 「署黑龍江巡按使朱慶瀾呈江省旗民工藝廠虧賠不堪擬收歸官辦改組女工廠以資整頓文並批令(中華民國五年四月二日)」, 「政府公報」 1916年 第95期, 15-16쪽.

동성 성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자신과 가까운 鮑貴卿이 흑룡강성 독군 겸 성장으로 임명되자 장작림은 허란주를 외면하고 그 산하 1사단을 자신의 세력 안으로 편입하였다. 이 사건에서 만주족이 얻은 것은 전무하였으며, 오히려 소란을 야기하였다는 누명과 비난만 초래하게 되었다. 장작림은 처음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나 만주족을 이용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종사당 뿐만 아니라 일반 만주족과 장작림의 관계 역시 긴밀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1915년 일어난 원세개의 帝制復活에 대해 호국전쟁이 발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어졌다. 종사당은 이를 기회로 1916년 壬辰復辟을 계획하였다. 먼저 동북에서는 숙친왕의 일곱째 아들 憲奎과 파포찰포가 소위 제2차 滿蒙獨立運動을 일으켰다. 숙친왕은 遼寧省 天山의 부대를 점거하여 원세개 토벌을 천명하고, 이후 파포찰포의 몽고군대와 협력하여 북경을 장악한 후 "內外蒙古, 滿洲 三省 및 華北을 일체로 하는" 大王國을 건설한 후 선통제를 즉위시키고자 하였다.[93] 일본정부 역시 숙친왕의 계획을 이용하여 원세개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였다. 남만주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봉천성 서부의 요충지이자 내몽골로 통하는 길목인 鄭家屯 일대를 장악하고 장작림을 견제하는 한편 종사당의 활동을 지원하였다.[94] 또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를 통해 숙친왕이 동삼성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산림 등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100만 엔을 빌려주면서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차관계약에 따르면 먼저 숙친왕에게 30만 엔을 주어 그와 그 일파가 즉시 사건을 일으킬 수 있게 하고, 나머지 70만 엔은 일본 제국정부가 보관하여 장래 원조를 위해 예비하였다.[95] 이에 따라 숙친왕은 1916년 3월 대련에서 종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동북 토비 출신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근왕군이라 칭했다. 일본

93) 李楊, 「宗社黨: "高幹子弟"國復淸室的最後抗爭」, 『看歷史』 2011年 9期, 53쪽.
94) 「奉天軍署爲通告鄭家屯事件起因給各道尹縣知事的通電」, 「奉天省長公署爲通緝宗社黨首金鼎臣等訓令」, 遼寧省檔案館編, 『奉系軍閥檔案史料彙編』 2卷, 江蘇古籍出版社·香港地平線出版社, 1990, 549-550쪽.
95) 憲均, 「肅親王善耆的復辟活動」, 『晩淸宮廷生活見聞』, 中國文史資料出版社, 1982, 284-285쪽.

장교들은 이에 협력하여 요동 조차지에서 근왕군을 수개월 동안 훈련시키면서 출병을 준비했다.

한편 북양정부의 관리 중에서도 복벽에 찬동하는 인사들은 꾸준히 존재하였다. 당시 政務上將軍長江巡閱使의 명의로 徐州에 주둔하던 張勳과 宣武上將軍督理江蘇軍務로 南京에 부임해 있던 馮國璋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916년 4월, 장훈은 청도에서 제2차 만몽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부위 및 상해의 무나카타 코타로와 접촉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96] 풍국장 역시 청조유신 胡嗣瑗과 접촉하여 기의에 참여할 것을 확답하고, 장작림을 포섭하려고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97] 이후 동삼성에서 숙친왕 등이 거병하자, 장훈과 풍국장 역시 6월 6일 원세개가 급사한 후 바로 6월 15일과 16일 부의를 복위시키려고 계획하였다.[9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도에서 활약하던 승윤은 서주에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복벽 방안의 하나로 숙친왕 및 몽골 영수가 이끄는 부대가 먼저 행동을 개시하면, 청도에서 일군의 무리가 행동을 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賣國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某國의 원조를 얻는 대신 兵工廠이나 군경관리 등의 이권을 지급하자고 한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99]

여기에서 "某國"으로 지칭된 국가는 기존 종사당의 우호 관계를 고려할 때 정황상 일본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일본이 「21개조 요구」 '제5호 희망조항'에서 언급하였던 "중앙정부에 정치·재정 및 군사고문으로 유력한 일본인을 초빙할 것", "지방에서 중·일 합동 경찰을 조직하거나 관청에 일본인을 초빙할 것", "일본으로부터 일정량의 병기 공급을 받거나 또는 중국에 중일 합작의 병기창을 설립하고 일본으로부터 기사와 재료의 공급을 받을 것"의 내용을 상기

96) 「鄭孝胥丙丁日記」,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近代史資料編輯組 編, 『近代史資料』 總35號, 北京 : 中華書局, 1965, 64쪽.
97) 「胡嗣瑗致馮國璋函」,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近代史資料編輯組 編, 『近代史資料』 1958年 第1期, 118-120쪽.
98) 翹生, 『複辟紀實』, 發行處 不詳, 1917, 31-33쪽; 胡平生, 앞의 책, 109쪽.
99) 張戇盦, 『複辟詳志:民國六年』, 文海出版社有限公司, 1996, 4-5쪽.

하여 본다면 이는 좀더 설득력을 지닌다. 이는 당시 일본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북양정부 뿐만 아니라 종사당에도 동일한 내용을 요구하였던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그 이유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는 이시기까지 일본정부가 종사당을 활용한 복벽 혹은 신국가 건설의 기대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세개 사후 국내외 정국이 급변하였다. 우선 장훈 등의 태도가 변화하여 부의의 복위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일본정부 역시 원세개 사망 이후 反袁政策을 중단하고 후계로 지목된 黎元洪을 지원하기로 다시 정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 내부에서도 여원홍에 대한 지지와는 별도로 滿蒙地區에 청조를 부활시켜 보호국으로 만든 후 만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의견이 나뉘고 있었다.[100]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와시마와 숙친왕 등은 계속해서 독립 계획을 추진하였고, 파포찰포의 활동도 계속되었다. 1916년 5월 중순 파포찰포는 마적 천오백명을 이끌고 하얼빈으로부터 출병하여 남만철로 부근의 郭家店을 점령하고 張家口를 포위하였다.[101]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곽가점으로 후퇴하였고, 직후 장작림의 부대가 이들을 포위하였다. 가와시마의 중재로 파포찰포의 부대는 당시 별다른 충돌 없이 퇴각하였으나, 이들은 10월에 다시 장작림의 세력권에 있던 열하성 林西縣을 공격하였다.[102] 이 전투에서 파포찰포가 사망하면서 종사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몽골 독립운동 세력이 약화되었고, 종사당과 장작림의 거리 역시 한층 더 멀어졌다.[103]

특기할 것은 뒤이어 벌어진 1917년 복벽 당시 장훈이 이를 사전에 숙친왕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벽 당시 강유위가 주장한 "虛君共和"가 기조

---

100) 原奎一郎 編,『原敬日記』第六券, 東京 : 乾元社, 昭和26年, 437-438쪽.
101)「南滿沿線之蒙匪與宗社黨」,『申報』1916.8.23.
102)「奉天省長公署爲據報有亂黨七百餘人由大連開往四平街請飭所屬嚴密防範給遼沈道尹訓令」,『奉系軍閥檔案史料彙編』2卷, 552-554쪽.
103)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박선영 역,『중일문제의 진상 : 국제연맹 조사단에 참여한 중국 대표가 제출한 29가지 진술(1932년 4월-8월)』, 동북아역사재단, 2009, 252쪽 ; 胡平生, 앞의 책, 118-119쪽.

가 되었고, 기존 청조의 황실 인사들은 정사에 간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발표되었다. 한족 중심으로 추진된 복벽에 만주족은 배제되었고, 선통제의 섭정은 서세창, 황후는 그의 女息으로 내정되었다. 장훈과 순친왕의 교류 및 협상은 지속되었으나 순친왕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부여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공친왕에게는 상유를 보내 북경으로 입조하도록 하였으나 숙친왕에게는 사람을 보내 현재의 상황에 대해 회유하는 것에 그쳤다. 공친왕의 경우 가문간의 혼인관계를 통해 장훈과의 인척관계가 가까웠다. 그러나 숙친왕의 경우 장훈과 별다른 인척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병력도 대등하게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가와시마 등 일본 세력이 중재에 나서 복벽된 정부에서 숙친왕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동삼성 총독으로 숙친왕이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고, 숙친왕 역시 내심 이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실제 장훈은 봉천순무 직위에 불만족하고 있던 장작림을 동삼성 총독으로 임명하여 포섭하려고 하였다. 실제 張海鵬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담긴 상유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토벌군에게 제지당하여 무산되었다. 공친왕 역시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복벽의 내용이 기대와 다른 것을 인지하고 다시 청도로 돌아갔다.[104] 장훈은 청조 황제의 양면 구조적 성격의 한쪽 면인 중화황제의 면만 보았고, 다른 한쪽 면인 만주의 지배자이자 몽고의 맹주로서의 면은 생각하지 않았다. 한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복벽에서 세력이 약화된 종사당이 설 자리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105]

복벽 실패 이후 북양정부는 친일 정책을 외교의 기조로 삼았고, 일본정부의 태도 역시 친북양정부 정책으로 굳어지면서 종사당은 존속의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8월 19일 종사당과 협의하여 2개월 내에 종사당 및 근왕군을 해산하도록 하고 거액의 해산비를 지급하였다. 숙친왕은 일본정부에 대해 오쿠라 기하치로가 약속한 차관 중 나머지 70만 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군사무기를 원조하고 일본낭인을 매수하

104) 翹生, 위의 책, 41-46쪽.
105) 阿部由美子,「張勲復辟と滿蒙王公の反應」,『滿族史研究』第6號, 2007. 61-62쪽.

면서 이미 약속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소진하였다고 밝히며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두 세력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106] 여기에 자금난이 겹치면서 종사당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만몽독립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1918년 이후 동삼성에서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장작림의 세력이 강성해짐과 동시에 외세의 이해관계 또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여기에 상술한 대로 가장 큰 협조자였던 일본의 외교정책 변화에도 타격을 입어 만주족의 독자세력화 움직임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종사당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청조 황제의 이름으로 만주와 몽고에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고자 하는 활동을 지속하였다. 1919년 3월 12일 『北京導報』는 "숙친왕과 공친왕 및 기타 만주귀족들이 滿淸의 顚覆에 대해 불평하는 감정을 퍼트리고 있다. 이들 선동가문은 있는 힘을 다해 활동 범위를 만주까지 확장하려고 한다." "북양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 이들 만주와 몽고 왕공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일본 외무성이 北京에서 英文, 中文으로 발행한 신문인 『華北正報』 역시 1921년 2월 23일자 기사에서 장차 새로운 만주제국을 "華北帝國"으로 명명하고, 瀋陽이 새로운 정부의 소재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1921년 5월 21일에는 "중국 관방이 파악한 보고에 근거하면 …… 숙친왕과 전 총독 승윤의 정책목적은 중국에 청조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없다면, "만주는 만주족의 만주(滿洲是滿洲人的滿洲)"라는 구호 아래 심양에 만주족의 왕조를 축소 중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107]

그러나 1922년 2월 숙친왕이 병사하면서 이들의 세력은 구심점을 상실하였다. 동년 가을 부위가 청도를 떠나 大連 黑石礁築室 星浦山莊으로 이주하여 동삼성에서의 활동을 이어갔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108] 혁명 이

106)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박선영 역, 위의 책, 269쪽 ; 申鉉武·王銳波, 앞의 책, 178쪽.
107) 宋欣, 앞의 논문, 22쪽.
108) 孫棫蔚, 「恭親王溥偉在大連」, 『大連文史資料』 第5輯, 1988, 148-149쪽.

후 10여 년간 이어져 온 만주족의 독자세력 구축을 위한 노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만주족의 독자세력화 움직임은 1931년 발발한 만주사변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는 1932년 만주국의 수립과 부의의 집정 취임으로 표면적으로는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더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V. 만주국 내의 민족 경쟁과 만주족의 곤경

상술한 것처럼 신해혁명 이후 중국정부는 만주족에 대해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견제와 배제, 『우대조건』의 불이행을 통해 그 세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만주족 공동체와 중국 정부 사이에 점차 균열이 발생하였고, 선통제의 출궁과 국민당 정부의 집권으로 그 갈등은 표면화되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일본이었다. 일본은 일찍부터 동삼성 지역을 일본의 이익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파악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요동반도와 한반도에 대한 영토와 권익을 획득한 일본은 주권선과 이익선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대륙으로 침략의 범위를 넓혀 갔다. 조선인은 이 과정에서 일본인에게 협력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면서 동삼성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반면 동삼성 만주족의 경우 일부는 종사당처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 정체를 구축하려고 하거나, 또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누리고 있던 만주족의 권리와 영향력은 조선인의 진출과 함께 하층부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만주국의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만주를 둘러싼 민족갈등 속에서 만주족의 주체성은 약화되어갔고, 이들이 추구하던 공동체 재건 역시 만주국 내에서 어그러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만주족이 민족 공동체 재건이 좌절된 이유로 중국과 일본 혹은 만주국의 국가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말 이래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동삼성 영유를 둘러싼 민족 갈등 역시 만주족이 만주국 내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1. 동삼성 확보를 위한 중일간 대립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 동삼성에 대한 만주족과 조선인과 그리고 한족의 인식은 특기할 만하다. 만주족은 전술한 대로 청조 수립 이후 동삼성을 "민족의 발상지"이자 자신들이 확보해야 할 거점지역으로 간주하였다. 한족에게 동삼성은 종래 "변경"의 이미지가 강했으나 러시아 및 일본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상실할 수 없는 "중화영토"로 주장되었다. 조선인은 국권 상실 이후 "단군의 강역" 혹은 "고토"로서 동삼성을 인식하였다.[1] 한편 일본은 1912년 러시아로부터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 대한 이익권을 승인받으며 이를 대륙확장의 교두보로 인식하였다.

이같은 관념적인 인식은 점차 영토지배권 개념으로 실질화되었다. 만주족은 기득권의 보호와 만몽독립의 근거지로서 동삼성을 상정하게 되었다. 조선인 역시 동삼성을 이주민의 생계유지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일본의 비호 아래 제반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한족 역시 동삼성의 과분 위기에서 일본의 확장을 저지하고 이곳이 중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켜야 했다. 이 모두와 연결된 일본은 1917년 러시아혁명 과정에서 북만주로 진출하고 장작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동삼성을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두게 되었다. 이는 1932년 만주국 수립 이전까지 이른바 "만몽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의 이익선이자 생명선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견지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때로 조선인을 활용하여 민족 갈등을 조장하거나 외면하였다.

먼저 당시 혁명파의 동삼성 인식에 관해 살펴보자. 이들은 중원을 방어하기 위한 "울타리"이자 "변경"의 의미로 동삼성을 인식하였다. 당시 상하이에서 발행된 『神州日報』는 다음과 같은 평론을 실었다. "무릇 일본이 원하는 것은 만주를 삼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부터 멸망시켜야 한다. 한국은

1) 윤화수, 「간도문제란 무엇인가」, 『동광』 33호, 1932. 5. 36~39쪽.

일본이 만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이다. 이 다리를 얻지 못하면 대륙으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멸망시키지 않으면 만주를 삼킬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삼킨 것은 만주를 멸망시키기 위한 수속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세간의 소문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을 합병한 뒤 우선 한국의 황제를 일본에 알현하러 보내고, 그 뒤에 일본 황제가 한국으로 천도하거나 해마다 한 번씩 행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이 소문이 만약 사실이라면 조선으로 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만주로 천도하려는 것으로서,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주로부터 중원으로 신속히 진군할 것이니 나는 황하 이북이 안전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된다. 또, 동부의 신문들이 누차 보도했듯이 일본제국은 기필코 대륙국가가 되려하고 야마토 민족은 기필코 대륙의 민족이 되려 한다. 오늘날 일본이 이미 한국을 삼키고 만주를 침입하려 하니 침략자가 가져올 화가 이미 조짐이 보인다. 오늘날 조선이 스스로 애도하지 못하니 중국이 그를 애도한다. 중국은 조선을 애도하되 이를 거울삼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다시 중국을 애도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2]

이러한 경계심이 만연한 가운데 장병린은 1912년 東三省籌邊使로 부임하면서 한인 위주의 이민과 개간정책 및 산업 진흥책을 통해 주변 국가의 침략 의도를 막고자 하였다. 전술하였듯이 그는 혁명 초기 만주족이 정권을 내려놓고 동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혁명 이후 상주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침략의 위험이 상존함을 거론하며 관내 인구의 동북 이민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만주족을 집단이주시키고자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혁명의 완수를 위해 동삼성에서 청의 잔재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중앙정부 및 동삼성 관료층과 만주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3] 그러나 이들은 관내의 안전을 위해 동삼성을 외세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중국 내부로부터 분리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반면 북양정부는 동삼성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2) 「論日本併韓與中國所獨受之關係(續)」, 『神州日報』 1910.8.30.
3) 高強, 「章炳麟出任東三省籌邊使始末」,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5卷 2期, 2015, 41쪽.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특히 토지 측면에서 이러한 시각이 주로 나타난다. 청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귀화한 조선인에 대해서만 그 개간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 이를 기피하는 경우 佃民制를 통해 집단 소유의 형태로 개간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였다. 따라서 일본인이 직접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소유를 목적으로 개간에 착수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4] 따라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 진출에 나서기 이전에는 귀화 조선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07년 성립된 간도협약, 1910년 조선의 국권 피탈, 1911년 신해혁명을 거치며 차츰 느슨하게 적용되어 갔다.

1912년 7월 체결된 제3차『러일협약』에서 일본은 동부 내몽골을, 러시아는 서부 내몽골을 각각의 이익 분할선으로 할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일본은 남만주와 동부 내몽골까지 세력권을 확대했다. 이후 일본의 대륙정책은 대중국 21개조 요구라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열강이 유럽 전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은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권익을 요구했던 것이다. 1915년『中日北京條約』의 체결 과정에서 일본은 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 대한 이권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로 체결된『關於南滿洲及東部內蒙古之條約』, 통칭 "「南滿東蒙條約」"이라 불리는 이 조약에서 "일본국 신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고에서 각종 상공업 건물의 건설 또는 경작을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토지상조권을 명문화하였다.[5] 이외에 제3조 滿洲內地의 雜居權, 제4조 동부 내몽골에서 농공업의 合研經營權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록하고 있었다. 특히 토지상조권 규정은 일본인의 토지획득을 중국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본의 滿蒙 특수권익에 있어 근간이 되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침략 행위를 국제법에 따른 조약으로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동시

4)『滿鐵調査月報』17卷 11號,「間島に於ける農業機構の概要」, 67쪽.
5)『關於南滿洲及東部內蒙古之條約』, 中日條約研究會編,『中日條約全輯』, 發行處 不詳, 1932, 372-374쪽.

에 토지상조권이 인정됨으로써 일본인이 남만주 전역에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보고, 이를 국내 인구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것을 일본의 중국 침략의 수단이며 영토주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일본인에 대한 토지 대여를 매국죄, 國土盜賣로 처벌하는 방침을 취함으로써 대항했다. 구체적으로 「徵弁國籍條例」(1915.6), 「土地盜賣嚴禁條令」(1929.2), 吉林省 정부의 「商租禁止令」(1929.1) 등 60여 개나 되는 법령을 발하여 토지, 가옥의 상조 금지 실현 및 종전에 대차했던 토지, 가옥의 회수를 시도했던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일본인들이 귀화 조선인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권리 역시 분쟁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납부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였다.[6] 그러나 토지상조권에 대한 중국 관민의 저항으로 인해 일본인의 지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일본은 중국인과의 합자사업이라는 명목 또는 중국인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1916년 총리대신으로 취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만몽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이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 침략 정책을 입안·시행하였다. 그는 1917년 6월 「東洋拓殖株式會社法」을 개정하여 동척의 영업 범위를 기존의 조선에서 만주로까지 확대하였다.[7] 동척은 이에 맞춰 곧바로 봉천과 대련에 지점을 설치하여 토지매수에 돌입하였다. 토지상조권이란 용어는 국제정치상의 협상을 위해 중국·일본 양자가 타협한 造語로 일본인의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그간 금지되었던 동삼성의 외국인 토지 매수를 법적으로 완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동척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동삼성 토지 매수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8] 한편 당시 동삼성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였던 토지의 대부분은 전술한 대로 종래 만주족이 보

6) 야마무로 신이치,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46쪽.
7) 「東洋拓殖株式會社法中改正ノ件ヲ決定ス」, 大正6年 6.2.,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13100273200.
8) 조정우, 「지역조사와 식민지의 경계지대 ―- 1919년 전후 동척과 조선은행의 간도조사―」, 『만주연구』 26, 2018, 185-186쪽.

유하였던 기지에 해당하였다. 이중 일부가 조선인을 대리로 내세운 일본인에 의해 꾸준히 매입되었고, 만주족의 토지 소유 및 수조권 등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가 축소되는 것에 비례하여 일본의 토지 소유 및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기존 만주족과 한족의 소작권은 부정되었고 그 소작권은 조선인에게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인구증가 및 식량부족과 같은 일본 내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1927년 출범한 다나카 키이치(田中義一) 내각은 직접적인 만몽개발만이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만몽이주정책을 통한 현실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일본군부 역시 동의하면서 만몽침략정책이 가시화되었다. 이시기 관동군사령부는 「對滿蒙政策に関する意見送付の件」를 작성해 육군차관과 참모차장에게 송부하였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만몽정책 추진의 필요성, 東三省의 자치 추진, 친일 대리정권의 수립과 이권 확보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 군부는 장래를 좌우할 인구 및 식량문제를 해외진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중심지를 만몽 및 시베리아 방면으로 설정하였다.[9] 이들은 이미 신해혁명 직후부터 만몽지역의 분리와 영유권 획득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종사당을 지원한 바 있었다. 이제 일본의 만몽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장악을 위해 일본인을 집중적으로 이주시키고, 동시에 '東三省의 자치 추진'과 '친일 대리정권의 수립'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치의 명분을 얻기 위해 주된 공략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동삼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구 종사당 출신을 비롯한 만주족과 청조 유신이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안건으로 다나카 내각이 제시한 『日本田中內閣侵略滿蒙之積極政策』[10]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세부 안건 중 「滿蒙懸案解決二関スル

9) 關東軍司令部, 「對滿蒙政策に関する意見送付の件」,昭和2年 6.1.- 6.6.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1003764000.

10) 「我對滿蒙鐵路急欲實現完成者如左通遼熱河間鐵路」, 著者 不詳, 『日本田中內閣侵略滿蒙之積極政策』, 發行處 不詳, 1931, 19-20쪽.

件」에 의하면 “중국에 견실한 만몽정부가 성립되기까지 일본은 각 지방권력을 상대로 하여 개개의 문제를 해결한다. 武漢 방면에서는 무한정부, 상해와 남경 방면에서는 남경정부, 동삼성 방면에서는 張作霖 정권과 교섭한다”는 구절이다.[11] ‘견실한 만몽정부’는 동삼성 및 몽골이 관내에서 분리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었다. 이것이 일본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수립인지 혹은 괴뢰정부 수립을 의도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중간 단계로 장작림을 이용하고자 하였다는 것, 그리고 청조 황실과 종사당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게나마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이후 만주국 건국에 ‘만주족의 국가 건설’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도를 다소나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당 북벌군의 중국 통일이 가시화되자 다나카 내각의 만몽정책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북벌 이후 중국 내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한족을 중심으로 한 관내와 관외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날로 높아졌다. 중국이 통일될 경우 만몽에서의 특수권을 보장받아 본국의 현안들을 해결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였다. 이러한 위기감은 1928년 관동군이 장작림을 폭살하고 동삼성 일대를 직접 장악하려고 한 것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장학량의 역치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국권 회수 운동이 고양되는 등 중일 간의 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신채호 등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그 활동무대를 동삼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주단군강역론’과 ‘만주단군후예론’을 주장하면서 동삼성에 대한 고토의식과 동족의식을 드러내었다. 이는 동삼성이 독립운동근거지 건설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인적 기반을 갖춘 곳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 논리였다.[12] 간도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1920년대에 들어 “大高麗國” 구상, 혹은 ‘간도자치론’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독립운동 기지로서의 역할보다 거주권 및

11) 「滿蒙懸案解決ニ関スル件」, 昭和2年 8.4.,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4120038900.
12) 이명종,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한양대학교출판부, 2018, 177-179쪽.

자치구 수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간도사변에서 발생한 조선인 참살사건과 이로 인한 조선인들의 생존권 문제 및 이주 문제가 『조선일보』, 『삼천리』, 『東光』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던 것이 그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1927년 동양협회의 山口省三, 拓殖大學의 岩本二郎가 발표한 『(祕)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은 "조선이 일본과 중국의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일본 측을 조종하여 실력을 양성, 간도와 훈춘에서 신고려국 건설을 이룩하려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13]

이러한 조선인의 움직임은 동삼성을 자신들의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여기며 미약하게나마 새로운 정체 건립 혹은 자치의 의지를 이어오던 만주족의 활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다. 만주족이 지니고 있던 동삼성의 기지에 대한 권리는 한족과 일본인 및 조선인의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였고, 이제 근거지로서의 상징성까지 조선인에게 잠식당하기 시작하면서 이는 만주족 공동체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실제 만주족 공동체가 비교적 온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훈춘 지역의 경우에도 만주사변 이후 협화회를 비롯한 각종 행정조직과 사회단체에서 조선인의 비중이 괄목할 만하게 높아졌다. 중등 이상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던 조선인 역시 이전 시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간도사변 이후에는 조선인 졸업생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14] 만주국 수립 이전인 1920년대 일제의 통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조선인 육성책과 맞물려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에서 만주족의 입지는 점점 위축되어 갔던 것이다. 봉천 등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기존에 거대자본을 형성한 만주족의 세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일본의 본격적인 진출과 맞물려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전술한 대로 종사당이 주축이 된 만몽독립운동 역시 실패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동삼성에서 만주족의 입지는 점차

13) 山口省三·岩本二郎, 『(祕)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東洋協會, 1927年, 139쪽.
14) 윤욱, 「"二等公民" 擡頭 下의 琿春,」, 『동양사학연구』 136, 2016, 173-196쪽.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만주족 국가 부흥의 기대와 굴절

1924년 소조정의 출궁 이후 만주족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오족공화와 『우대조건』을 근거로 독자적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가 '國族'을 공식화하면서 오족공화는 유명무실해졌고, 『우대조건』의 부활은 요원하였다. 자신들의 의지를 공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상실한 만주족의 노력은 이제 관동군이 주도하던 만주국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이를 국민당 정부로부터 분리하려 시도할 때부터 만주국 수립까지의 과정에서 만주족은 자기 주도의 국가, 곧 '만주족의 국가'를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일본과 협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역량과 제반 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는 '만주국'이라는 이름의 국가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아래에서 이에 관해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1931년 일본의 심양 점령 이후 동삼성에는 국민당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각종 기구들이 설립되었다. 이를 주도한 기구는 1931년 9월 24일 만주족을 비롯한 친일 성향의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奉天地方自治維持會였다. 그러나 이틀 후인 9월 26일 遼寧省地方維持委員會로 개명하고 성정부의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무단정치의 배제, 요녕성의 독립, 동삼성의 독립선포를 그 활동목표로 제시하였다. 위원장으로는 袁金鎧, 부위원장으로는 於沖漢·闞朝璽가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는 李友蘭, 張世箕, 丁鑒修, 孫其昌, 金梁, 佟兆元가 참여하였다.[15] 이들은 대부분 청조의 관료로 재직한 기인 출신으로, 대체로 張學良의 반일정책에 반대했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15) 「(I)滿蒙各地獨立／12. 奉天治安維持會関係(遼寧省地方維持委員會)」, 『滿洲事変ニ際スル滿蒙獨立関係一件』第一巻,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2032035800.

이들 가운데 다수는 일본유학 경험자들이나 중일합작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등 기존에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봉천성 출신으로 동삼성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취업하였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와도 거리가 멀었다. 이 상황에서 祖憲庭 등이 조직한 遼寧四民維持會는 1931년 9월 28일 요녕성지방유지위원회와 공동으로 요녕성 정부의 독립선언과 장학량 정권으로부터의 이탈을 선포했다. 그러나 요녕사민위원회는 관동군의 불신을 받아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회장을 공친왕 부위로 교체한 후에야 비로소 그 정당성을 승인받았다.[16]

길림성에서는 당시 성정부의 주석인 장작상이 부친상을 당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희흡이 주석을 대리하고 있었다. 9월 26일 희흡은 吉林省政府를 吉林省長公署로 변경하고 스스로 길림성장관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부저항 정책을 견지하면서 국민당의 군대를 퇴각시키고 1931년 9월 21일 일본군에게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동시에 동삼성 중 가장 먼저 국민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17] 길림성 독립에 참가했던 榮厚나 鍾毓 역시 만주기인출신으로 청조의 고위 관료였으며, 東北軍中將旅長과 延吉鎮守使를 겸하고 있던 吉興 역시 황족 출신이었다.[18] 이후 요녕성과 길림성의 책임자들은 관동군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5개항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1. 滿蒙獨立國을 건립한다.

2. 동삼성철로는 모두 만철로 귀속하여 경영한다.

3. 營口, 安東, 牛壯, 海城, 遼原, 長春 6개 지역을 일본에게 割與한다.

4. 요녕성과 길림성 내의 일본인, 조선인은 모두 雜居權, 토지권, 경찰권을 가

---

16) 胡平生,『復辟運動史料』, 正中書局, 1992, 412쪽.
17) 「(I) 滿蒙各地獨立/８．舊政権ノ策動」,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2032035300, 『滿洲事変ニ際スル滿蒙獨立関係一件』第一巻, 152-154쪽.
18) 傅大中,「一個清廷貴胄的一生—愛新覺羅·吉興其人」,『社會科學戰線』1990年 2期, 242-244쪽.

진다.

5. 요녕성과 길림성 각 성이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불허하고, 다만 경찰 만 명을 내부에 배치하는 것은 허가한다.[19]

요녕성과 길림성 모두 만주족 출신이 전면에 나서 "만몽독립국"을 선언하였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조에서 해당 지역 내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찰권을 별도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보면 일본 역시 이들을 독립된 정체로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삼성 철로의 만철 귀속, 영토의 할양, 군대 보유 금지 등의 조항을 보면 경제권과 군사권 및 영토주권을 제약받거나 포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다만 경찰 만 명을 단기간에 모집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성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군대가 경찰로 변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4조에서는 그간 일본이 동삼성에서 추구하던 잡거권 및 토지권, 경찰권이 모두 인정되었다. 이는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약이자 내정 간섭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흑룡강성의 독립 당시 일본에 적극 협력한 만주족 출신의 인물은 地方自治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취임한 吉祥이었다.[20] 그는 흑룡강성 주방기인 출신으로 청말 黑龍江巡房隊都領으로 재직하다가 민국 이후 黑龍江省 旗務所總弁을 역임한 유력자였다. 그러나 길상 및 지방자치회는 비만주족 출신인 東省特別區長官 張景惠를 흑룡강성 주석으로 강력히 추천하였다. 그가 일찍부터 일본군과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래에 중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장경혜는 9월 27일 東省特別區治安維持會를 설립하고 회장임을 자임하면서 일본의 협력자적 면모를 보였으며, 뒤이어 12월 24일 성장으로 취임하였다.[21] 그러나 구파와 신파의 대립 속에 1932년 2월 馬占山이 다시 성장으로 임명되었다.[22]

---

19) 「熙洽等與日政府所訂五項協定」, 『國民革命軍遺族學校校刊』 第2卷 第14期, 1931, 8쪽.
20) 윤휘탁, 앞의 논문, 139쪽.
21) 胡平生(1992), 397쪽 ; 孫邦主 編, 『僞滿人物』, 吉林人民出版社, 1993, 325-355쪽.

이에 1932년 2월 하순 관동군의 주도 하에 길림성장관 희흡, 흑룡강성장 馬占山, 장경혜 등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동북 4성과 1개 특별구, 몽골의 각 왕공들로 구성된 東北行政委員會를 설립하고 국민정부와의 관계를 벗어나 동삼성을 완전히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23] 동북행정위원회는 장경혜를 위원장으로, 장경혜·마점산·藏式毅를 위원으로 추대하고 建國會議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만주국의 建國大綱, 國名, 國號, 國都 소재지, 國旗, 國體 문제 등을 결정했다. 이때 동북행정위원회 내부에서 희흡, 정효서, 나전옥 등은 제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삼성에 기반을 둔 장식의, 장경혜 등은 공화제를 주창하여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관동군의 중재에 따라 원수는 집정, 정체는 공화제로 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하게 되었다.[24] 이후 동북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명의로 동삼성의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곧 만주국의 수립을 위한 전단계의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25]

일본은 한편으로 괴뢰정부 수립을 위해 부의를 비롯한 황족들과 접촉을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 “독립”을 위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명분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의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관동군 참모 하나티니 마사시(花穀正)의 회고에 따르면, 부의가 만주국의 수반으로 부상된 것은 당시 중국 민중에게 인정받는 명문 출신으로 덕망이 있다는 점, 가계가 만주계라는 점, 장학량이나 장개석과 합칠 가능성이 없는 점,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이었다. 당시 부의는 동북에 있는 현지인들을 결집할 수 있는 상징으로서 적당했고, 새로운 정권의 수반으로 일본에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구비했던 것이다.[26]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황족을 옹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고, 종사당의 중심인물 중 하나로 일본과의 교류가

---

22) 「(1)滿蒙各地獨立／2.張景恵ト馬占山トノ交渉」,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02032034700, 『滿洲事変ニ際スル滿蒙獨立関係一件』第一巻.

23) 「第4章／第2節 建國會議ト東北行政委員會ノ成立及活動」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B13081223700, 『最近支那関係諸問題摘要 滿洲事変関係』第1巻, 83-96쪽.

24) 滿洲國史編纂刊行會, 『滿洲國史總論』, 滿蒙同胞援護會, 1970, 410쪽.

25) 胡平生(1992), 398-399쪽.

26) 위의 책, 414-415쪽.

활발했던 전 공친왕 부위가 그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10월 24일, 일본군은 대련에 거주하던 부위를 심양으로 호출하여 관동군에게 협력하도록 하였다. 부위는 심양의 遼寧四民維持會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沈陽의 北陵에 참배하면서 "만주족이 만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인과 합작해야 한다(滿人治滿, 決與日人合作到底)"고 표명하였다.[27]

1931년 10월 30일 관동군과 부위, 김량 등 청조 유신이 참석한 신정권의 수립을 위한 준비 회의를 통해 "明光帝國"의 수립 및 신정권의 國體와 政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위는 이 회의에서 부의를 통수권자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김량 등은 "부의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28] 이에 부위는 11월에 직접 제위에 오르려고 시도하였으나 대다수 요인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패하였다. 당시 일본은 만주국 가담을 고민하고 있던 부의에게 압박을 가할 때, 요녕사민유지회의 회장에 부위를 임명한 것은 곧 유사시 그를 통수권자로 하는 명광제국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자극하였다. 이후 부의는 그의 帝位가 부위에게 박탈되지 않을까 경계하였다. 따라서 끝까지 부위를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임명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1936년 1월 부위가 新京에서 병사할 때까지 최소한의 금전도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다.[29]

한편 국민당 정부는 일본이 만주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주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에 장개석은 부의의 합류를 막기 위해 고우당을 보내어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협상안에서는, "① 부의가 일본 조계를 떠나도록 권고하며 주거지로는 북평이나 상해가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치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북경으로 이주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 이 경우 국민당 정부는 구

27) 邱創煥, 『中外近百年大事記』, 國史館臺灣文獻館, 1990, 280쪽.
28) 「(4)土肥原欲挾溥儀組織明光帝國」, 季嘯風·沈友益 編, 『中華民國史史料外編 ——前日本末次研究所情報資料 中文部分』第50冊, 214쪽.
29) 郭廷以, 『中華民國史事日誌』第三冊, 中央研院近代史研究所, 1984, 99-103쪽.

러시아 공사관 또는 조계 내의 건물을 국고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국을 옹호하는 성의를 보인다면 『우대조건』을 예전처럼 회복하고, 옛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청실의 우대경비는 매년 지급하거나 혹은 한꺼번에 일정액을 지급하여 외국은행에 그 보호를 맡길 것이며, 이는 절대로 食言이 아니다. ④ 국민정부의 위원에 만주족 2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簡任 이상의 고위관리직에 5인을 임명하여 민국의 이익과 참정을 옹호할 수 있다. ⑤ 이후 어떠한 종류의 회의를 막론하고, 몽장과 비교하여 균등하게 만주족 대표를 증설할 것이다."[30]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국민당은 선통제 및 황실 세력이 요구한 『우대조건』의 부활과 만주족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몽·장족과의 동일한 대우를 동시에 약속하여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동릉 도굴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협상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우대조건』만을 부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속조치까지도 모두 부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였다. 만주족에 대한 별도의 의석 배분과 몽·장족과의 동일한 대우 역시 이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기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부의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어떻게 추가적인 협상과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당 정부가 부의의 동삼성 합류를 차단하는 데 급급하여 상세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조건을 접한 부의는 "일본이 동삼성에서 稱帝를 시도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신해혁명으로 정권을 양위한 것은 온전히 公天下의 뜻을 위함이었으니, 어찌 일본의 날개 밑에서 작은 조정의 뜻을 따르려 하겠는가. 이전에 이같은 오해로 형제간의 우애에 불화가 있었으며, 인접한 강대국을 끌어들여 본국을 압박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동북으로 가서 황제가 되는 것은 조선의 李王과 같은 처지에 불과하여 오명을 오래도록 후세에

30) 胡平生(1992), 412~413쪽 ; 「溥儀離津之前夕──高友唐代表蔣接洽之經過」, 『益世報』 1932.1.15.

남길 것이니 어찌 영휘가 있겠는가. 일본 조계를 떠나는 것은 본래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단지 중국 법률로는 능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 계속 의심스럽다. 동릉 도굴사건과 같은 도적질도 특별법정에서조차 판단내리지 못하였다. …… 무릇 이는 중국법률에 따라 충분히 증명되더라도 강력한 저항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外人들의 가택에 위탁하는 것은 본래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나 중국 법률이 유령과 같아서, …… 따라서 일본인 조계 내에 기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제시한) 『우대조건』의 1절은 크게 보아서는 불필요하다. 우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무능력한 사람이니 식자는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차 합작으로 여겨서 우대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또 최근 사상의 흐름은 대체로 자력생활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외국유학을 생각하고 있으나 경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외국어 또한 유창하지 않아 그 실행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31]

이에 고우당은 "일본인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진술한다면 동릉 도굴사건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보장한다. 만일 외국으로 떠날 것을 고려한다면 민국정부는 일체의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이다"는 말로 다시 회유하였다. 부의는 "국민당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하였는가? 『우대조건』이 폐지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장개석은 한번도 신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 더구나 손전영이 선조들의 황릉을 도굴하여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이제 내가 장개석을 떠나고자 하자 그제서야 이러한 우대조건을 제시하니, 나는 이를 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뒤, 이 제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5일 정도 시일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32] 고우당은 부의가 장개석의 제의를 거절하였음을 직감하고 북평으로 가서 황족 재도를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이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1931년 부의는 천진을 떠나 만주국의 집정으로

31) 「溥儀離津之前夕──高友唐代表蔣接洽之經過」, 『益世報』 1932.1.15.
32) 上同.

취임하였고, 만주 지역은 중국의 영토범위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우당은 국민당 정부가 일본이 민족정서를 착취하기 위해 부의의 만주 배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였다. 『익세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일본이 만주족의 본거지인 동북부에 만주자치라는 이름으로 독립국가를 세우면 손쉽게 배후에서 이를 조종할 수 있다. 게다가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수많은 새로운 주들이 국가의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세계 강대국들은 이를 막을 수 없었다."[33] 고우당의 이같은 견해는 만주국 건국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만주국의 수립 과정에서 민족적 정서를 내세운 일반 만주족 역시 만주국의 수립을 지지하고 이에 합류하였다. "만주는 만주족의 만주"라는 민족주의적 정서는 일부 만주족 사이에서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1930년대 초 만주국 설립 과정에서 일부 동삼성의 만주족은 "동북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동북을 버린 것은 중국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만주국의 설립을 지지했다. 국민당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것처럼 만주족을 정치적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에 민족적 긴장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 온 만주족 독립론자들은 이제 독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조와 황제에 대한 충성심보다 생계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들은 1932년 2월 29일 『盛京時報』의 사설에서 "일찍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던 북경과 여러 지방의 팔기들은 길림성에서 일어난 만주 자결의 요구에 답하고 그들의 기원지를 찾아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어느 누구도 동삼성을 포기한 이 무책임한 정부보다 더 나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당 정부가 버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만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고자는 또 국민당 정부는 1931년 봉천에서 일어난 9.18 사건 이후 만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만주족을 보호하는 책임 역시 지지 않

33) 上同.

았다고 주장했다.[34]

비록 위의 사설은 만주국의 설립을 지지하는 일본의 선전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전술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던 동삼성 독립에 대한 경고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상층부 만주족과 일반 만주족 모두 이제 동삼성을 청조 복원의 근거지로 삼거나 만주족이 살기 좋은 곳으로 삼자는 생각에 동조했다. 1950년대 말 중국 공산당의 인터뷰에 응한 일부 만주족은 "만주국"이라는 이름에 "만주"가 들어간 데다가 그들이 민족화합을 약속해 만주국에 동참하였다고 시인했다.[35] 이러한 미사여구가 만주국 내에서 일본인 이외의 다른 민족에 미치는 정서적 힘은 억압에 시달려온 그들의 역사와 만주국에서의 민족자치를 위한 민족협력의 이상에 대한 간절한 희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1931년 희흡이 기차역에서 일단의 만주족을 이끌고 여순역에서 부의를 마중하였다. 그는 부의에게 "이 사람들은 모두 만주족입니다. 이들은 20년 동안 폐하를 기다려 왔습니다"[36]라고 하면서 만주족의 땅에서 그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임을 표명하였다. 이는 1932년에 결국 만주국이라는 이름의 현실로 체현되었다. 부의는 만주국의 집정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만주족의 독자세력화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만주국'이라는 국가의 체제와 운영인력, 그리고 국민은 갖추어져 갔으나 그 내부에서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건국이념, 혹은 국가이념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각지에서는 '反滿反日'의 무장투쟁이 빈발했고, 충성스런 '국민'이 되어야 할 현지인들을 교육해야 할 학교에서는 三民主義가 1928년 이래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여전히 교육되고 있었다.[37] 관동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속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만주국의 건국 이념을 조속히 확립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했다. 이에 초기 이데올로

34) 「救國危言」, 『盛京時報』 1932.2.29.
35) 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278쪽.
36) 애신각라 부의, 앞의 책, 14쪽.
37) 王紹海, 「高等教育: 建國大學の場合」, 王智新, 『日本の植民地教育 · 中國からの視點』, 社會評論社, 2000, 126쪽.

기로 “왕도낙토”와 “오족협화”를 내세워 만주국의 내부 결속 명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왕도’는 동아시아 정치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였다. 그 역사성과 친숙성 때문에 다치바나 시다키(橘樸)와 정효서 같은 초기 만주국 건국 참여자들은 이를 만주국 국민을 손쉽게 포섭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제시하였다.

그중 만주 황실과 관동군의 지지를 획득하여 건국 이념으로 최종 선택된 정효서의 왕도주의 이념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효서는 만주국의 건립이 가지는 성격은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독립한 국가들과 동일하며, 그 목적은 만주의 군벌들, 특히 장학량의 학정으로부터 만주의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어 “박애를 통해 애국주의를 일소하고, 예의교육으로 군국주의 교육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內聖外王’을 기초로 하여 정치적으로는 황제를 복위시키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孔孟文化를 부흥시키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內聖’의 修身과 ‘外王’의 ‘齊家, 治國, 平天下’에 해당하는 자질을 갖춘 이는 현명하고 유능한 군주로, 왕도정치의 기본이 되는 덕을 갖추고 어진 정치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정효서는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춘 군주에 의한 통치를 “賢能專制”라 명명하였다.[38] 다음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공맹사상은 군주와 인민을 이어주는 敎化의 매개체로, 통치자를 따르도록 하기 위한 질서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주를 세운 다음 인민들에게 공맹사상을 교육해야만 민도가 성숙해지고 진정한 왕도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중간단계를 통해 궁극적인 지향점인 입헌군주제로 문제없이 전환할 수 있을 것이었다.[39] 따라서 정효서는 혁명 이후 중국 역사 속에서 왕도의 흐름 안에 존속하였던 청조를 부활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하였고, 만주국 수립 이후 이를 현실로 옮기고자 하였다. 부의를 비롯한 청조 황실 역시 이러한 논리에 기본적으로 찬동하였다.

아울러 정효서가 당시 주장한 “人民保衛”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만주의 인

38) 『鄭孝胥日記』 1918.3.28., 中華書局, 1993, 1720쪽.
39) 鄭孝胥, 「滿洲國建國溯源史略」(1932), 吉林省圖書館僞滿洲國史料編委會編, 『僞滿洲國史料』 1冊, 2002, 8쪽.

민을 보호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만주국이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독립국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을 통해 근대국가의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괴뢰국이라는 의혹을 탈피하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아 만주국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건설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40] 하지만 부의나 정효서 모두 만주국으로 가담할 당시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그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군대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의 실권자는 총무청 장관인 고마이 도쿠조(駒井德三)였으며, 부의와 정효서는 명목상의 집정과 총리였다. 국무회의의 議案들은 모두 총무청이 소집하고 관동군 사령관이 책임을 지는 次官會議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이었다. 정효서가 지니고 있는 총리대신의 지위도 희흡의 吉林省系, 臧式毅의 奉天系, 張景惠의 黑龍江省系의 균형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國務院 내에서도 희흡은 財政部, 장식의는 民政部, 장경혜는 軍政部라는 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효서에게는 그를 지탱해줄 인맥도 없었고 官制上의 기반이어야 할 총무청은 日系 관리로 채워졌다.[41] 희흡이 지속적으로 만주국 군대의 양성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는 관내 국민당 정부와의 무력 투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 일본군의 협조를 전제한 것이었다. 현실적으로도 관동군의 영향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정효서가 초기에 구상하였던 왕도주의와 인민보위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1932년 3월 10일 관동군과 체결한 「日滿議定書」에서는 만주국이 독립국임을 규정했지만, 부속 문건에 따르면 만주국은 일본에 대해 국방 및 치안 유지 위탁,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부설 관련 사무 위탁 등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일본군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원조 조항까지 감

40) 鄭孝胥, 위의 책, 2쪽, 18쪽.
41) 滿洲國總務廳人事處 編, 『滿洲國官吏錄』, 發行處 不詳, 1935, 23-108쪽.

안한다면 이는 일본의 식민지와 별다를 바 없었다.[42] 따라서 의정서의 체결 이후 정효서는 共管의 실현만이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 국제연맹은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를 채택, 만주에 열강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특수통치체제를 구성하려고 했다. 이러한 결론은 정효서가 바라던 共管을 의미하였다. 이제 일본이 국제연맹의 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현 여부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熱河省을 점령하며 군사행동에 나섰고, 3월 27일 국제연맹마저 탈퇴하면서 결국 共管論에 대한 정효서의 희망은 무너졌다. 이제 그는 부의의 만주국 황제 즉위를 통해 통치권을 장악하고 만주국의 자립을 도모하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게 되었다.

그러나 정효서와 부의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이는 수포로 돌아갔다. 정치관에 있어서 정효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영국과 일본을 모방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부의 역시 소조정 시절에는 입헌군주제에 찬동하였다. 그러나 출궁 이후 천진에 머무르면서 청조의 완전한 복벽을 이루고자 하는 의식이 강해졌다. 이는 장개석의 집권 이후 벌어진 동릉 도굴 사건에 대한 원망이 강력한 권력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된 것과, 평화적 권력 이양의 대가였던『우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부의는 자신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입헌군주제가 아닌 전제군주제로 이행하고자 하였다. 정효서는 이에 맞서 부의에게 황제 즉위 후 자신에게 실권을 넘겨달라고 암암리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帝制 실시 후 "日滿一體化"라는 명목 아래 일본에 대한 만주국의 종속화가 한층 더 진전되고 있었다. 이에 1932년 9월 3일 정효서는 부의를 만나 총리직 사임의 뜻을 전하고 국내의 여론을 살폈다.[43] 아울러 帝制 1주년 건국기념일 연설을 통해 "만주국은 안겨 있는 어린애와 같으니 이제 손을 놓아 걷도록 해야 하나, 일본 정부가 그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44]

---

42)「日滿議定書」, 昭和 7年 9.15.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1200640000.
43)『鄭孝胥日記』, 1932.9.3., 中華書局, 1993, 2405쪽.

당시 부의는 일본에서 돌아온 직후 '만주국 황제는 일본 천황 폐하와 정신일체'임을 선언하는 「回鑾訓民調書」를 반포하였던 상황이었다.[45] 결국 정효서는 경질되었고 '왕도'의 현실 정치 구현은 실패하였다. 부의의 정치적 목표는 당초 입헌군주제 국가의 수립에서 전제군주정의 부활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독립국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일본이 내세운 논리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었다. 이에 "왕도정치"는 배척되고 "황도정치"가 전면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만주국이 만주족이 기대를 걸었던 유교식 이상국가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주체성을 잃고 부유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일이었다.

3. 만주족의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 난항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천명한 통치이념은 민족협화, 통칭 "五族協和"였다. 이는 만주국을 한족, 만주족, 몽고족, 일본인, 조선인 등 각 민족이 공영하는 낙토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일본인이 거의 모든 실권과 대부분의 이권을 차지하며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나머지 네 민족은 일본인의 통제 대상이 되었다. 건국 과정 및 내각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본인이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만철과 관동군을 축으로 한 일본인은 정치·행정뿐만 아니라 일본 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단 파견 등을 통해 빠르게 동삼성을 장악해 나갔다.

그러나 '오족협화'라는 민족 화합의 미사여구는 만주에서의 일본의 입장과

44) 滿洲國軍刊行委員會編,『滿洲國軍蘭星會』, 1970, 130쪽.
45) 「回鑾訓民詔書與鄭國務總理之謹話」, 吉林省圖書館僞滿洲國史料編委會編, 『僞滿洲國史料』, 2002, 60쪽.

행동을 정당화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는 포괄적인 민족 정책에 기초한 국가로서의 만주국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만주국은 혁명 전후 혁명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반만주의 혹은 배만주의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를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민족 화합을 추구하는 우월한 국가로 보이게 하는 소재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장학량의 통치를 잔인하고 부패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자결"과 "왕도낙토"라는 만주국의 이념과 대비되도록 하였다. 이는 장차 만주국이 독립국으로서 남경 국민당 정부와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다.

1931년 관동군 사령부는 국민당 정부의 구조와 구성을 모델로 만주국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만주국의 국기 역시 1911년~1927년 사이 사용되었던 중화민국 국기를 모델로 하였다. 이 국기는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장족을 대표하는 赤, 黃, 藍, 白, 黑의 줄무늬로 5등분되었다. 만주국의 국기 역시 黃色 바탕에 한족, 만주족, 몽골족,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을 나타내는 赤, 藍, 黑, 白의 줄무늬가 사용되었다.[46] 민족 구성은 서로 달랐지만 조화로운 다민족 국가를 상징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아울러 "五族協和" 용어의 선택은 "五族共和"와의 의도적 유사성을 전제한 것이었다. "오족공화"는 신해혁명 이래 정부의 공식 구호로 대중에게 친숙한 용어였다. 이는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난징정부와 만주국이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만주국 성립 당시 정효서는 "만주국은 왕도를 행하여 종족을 구별하지 않고, 국제적인 논쟁도 없으며, 인민을 보위하여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호를 개방하며, 기회가 균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는 만주국 내 만주족, 한족, 몽골족, 조선인, 일본인의 구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만주족에 의한 滿洲主義"를 통해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각 민족들이 곧 만주족이며, 민족자결의 논리에 따라 이들이 만주를 다스리는 주인이 됨을 강조하였다.[47] 이는 만주에 거주하는 민족

46) 滿洲國史編纂刊行會, 앞의 책, 1970, 207쪽.
47) 鄭孝胥, 『鄭總理大臣王道講演集』, 中國學術論著集要, 『民國時期哲學思想叢書』, 文聽閣圖書有限公

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이들 사이에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족 혹은 에스닉 집단으로서의 '만주족'은 약화되고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를 실행하는 새로운 집단인 '滿洲國人' 형성을 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들은 만주국 내에서 일본이 지니는 특권과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수 없었다. 민족간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民族和合'이라는 미사여구가 '民族自決'을 사실상 대체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기조로 확립되어 갔다. 이제 만주족은 '滿人' 혹은 '滿係'로 다시 분류되었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개인사나 가족사의 일부로 치부되었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일본인보다 적은 자원과 낮은 지위를 부여받은 또 다른 집단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만주국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일본인이 지닌 명백한 우월감은 '협화'라는 공식적인 미사여구를 약화시켰다.

만주국 관리들의 급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1934년 6월 발표된 「暫行文官官等俸給令」과 1935년 관동군 참모국이 발표한 「滿洲國人事行政指示原則」은 일본인 관리들이 다른 민족 출신 관리들보다 더 높은 급여를 수령할 것을 명시하였다.[48] 이에 따라 같은 직급에 종사하더라도 일본인 관리는 3~11배 정도 많은 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해 세금 감면, 이중수당 등의 특혜도 누릴 수 있었다.[49]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족적 편견의 정책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만주국에서 일하면서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일상적 지출을 실행하고 있는 일본 관리들을 돕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희흡이 가장 먼저 나서 모든 민족이 평등한 다민족 국가인데 왜 일본인들이 특권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였다. 각 민족은 一律平等의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일본이 친선국이라

司, 2010, 85-86쪽.

48) 「滿洲國政府公報日譯大同元年9月分(第24號號~第50號)」,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A06031009000.

49) 李茂傑·孫繼英 主編, 『苦難與鬥爭十四年』 中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5, 82쪽.

고 한다면 민족평등에 입각하여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50] 이에 대해 총무청 주계처 급여과장이었던 후루미 타다유키(古海忠之)는 "일본인과 만주인은 생활 수준이 다르다. 일본인의 생활 수준은 높고 만주인은 낮기 때문에 일본인의 급여가 만주인보다 높은 것이다. 일본인과 만주인의 능력도 같지 않다. 일본인의 능력은 높고, 만주인의 능력은 낮아서 일본인이 혹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만주인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심지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진다면 일본인은 만주인보다 급여를 당연히 더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51] 이는 다른 관료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회의가 중단되었다. 여기에 1936년 「關於特別津貼支給之文」이 발표될 당시 고마이 도쿠조 총무청장은 "만주는 우리 일본인들이 피와 땀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관리들의 높은 관록은 모두 일본인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은 고액의 봉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중국인 관리는 현재 상태에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2]

이보다 더 근본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던 문제는 인사권이 일본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滿洲國組織法』 제9조에서는 "황제는 관제를 정하고 관리를 임면하며 그 봉급을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국무총리대신과의 협조 하에 황제가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했다. 그러나 만주국 수립 직전 일본은 「溥儀與關東軍司令官本莊繁的祕密換文」을 통해 일본인 관리가 관동군의 승인 하에 신정권의 중앙 및 지방관서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탈취하였다.[53] 이에 더하여 1933년 8월 8일 열린 일본 내각회의는 「滿洲國指導方針要綱」 및 「綱要」를 통과시켜 일본인이 만주국의 정치경제기관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만주국 정권에 실질적인 내부지도의 권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54]

---

50) 萬嘉熙, 「僞滿軍的內幕」, 政協吉林省委員會文史資料委員會編, 『吉林文史資料』 第26輯, 1988, 29쪽.
51) 「駒井德三與阪穀希一」, 孫邦主 編, 『僞滿史料叢書·僞滿人物』, 吉林人民出版社, 1993, 113쪽.
52) 上同.
53) 中央檔案館·中國第二曆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編, 『僞滿傀儡政權』, 中華書局, 1994, 3쪽.
54) 위의 책, 8쪽.

따라서 실권을 보유한 관직은 모두 일본인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같은 인사권의 제약은 정효서의 사직 이후 국무총리대신을 임명할 때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부의는 민정부대신 장식의를 국무총리대신으로 임명하고자 하였으나 관동군은 대신 참의부 의장 장경혜를 취임하도록 간섭하였다. 장경혜는 국정 운영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반대로 장식의는 만주국 건국 초기 주요 세력으로서 정치적 역량이 뛰어났다. 부의는 장식의의 세력기반과 능력 및 '적법한' 인사권을 이용하여 만주국 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성취될 수 없었던 것이다.[55]

희흡 역시 이후 재정부대신에서 궁내부대신으로 전임되어 정치적 실권에서 멀어졌다. 그는 만주국 건국 초기부터 滿蒙同志協進會를 결성하여 일본인과 한족 위주의 협화회 체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이끌고 있었다. 만몽동지협진회는 전체 회원의 명의로 1932년 「逐條駁覆調査團報告書, 要求國聯糾正該書之錯誤—滿蒙同志協進會之反駁書」를 발표하여 리튼 보고서의 내용에 반박하며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만주국의 건국 이유는 이천여년 간 만몽민족의 거처였던 만주국에 선통황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자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장학량 정권의 폭정과 장개석 정부,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건국을 합리화한 것이다.[56] 해당 문건에서 일본 본국, 관동군의 존재나 한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장이 만주국의 주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급료 체계를 둘러싼 마찰과 함께 희흡이 좌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의 역시 만주국 합류 당시 가졌던 전제군주제 실시를 통한 만주족 국체 회복이라는 자신의 이상에 대해 침묵하여야 했고, 단지 '民族協和'와 '日滿友好'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만주족이 만주국의 식민지적 성격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

55) 애신각라 부의, 『황제에서 시민으로』 하, 문학과 비평, 1988, 32쪽.
56) 「逐條駁覆調査團報告書, 要求國聯糾正該書之錯誤—滿蒙同志協進會之反駁書」, 滿洲國外交部 編, 『滿洲國民之総意』, 1932, 10-14쪽.

한편 만주국 내 일본인의 우월한 지위는 신도의 도입으로 확실해졌다. 관동군은 부의가 이제 만주족만의 황제가 아니라 오족의 황제이므로 태조의 황릉을 참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신 1940년 伊勢神宮에서 分社한 建國神廟와 建國忠靈廟를 창건하면서 만주족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국조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으로서의 위치만을 강조하였다. 부의는 이를 수용하고 일만우호를 공개적으로 실천하였다. 이후 만주족의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굴욕을 견디고 일련의 선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건국신묘에 참배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선대 황제들의 초상화에 고개를 숙임으로써 보이지 않는 반감을 표출하였다.[57]

이에 만주국은 황국 일본과 사상적으로도 수직적인 지배관계에 놓였다. 그러나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라는 용어만은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었다. 즉 대외적으로 만주국 건국이 왕도주의와 민족협화를 실현하는 동양적 유토피아의 실현인 이상, 왕도주의와 민족협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내세웠던 '日滿一德一心'과 이질적이어서는 안 되었다. 이에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를 일본정신의 일부로서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즉, 만주국의 정치형태는 법이나 정치조직에 근거를 두지 않는 '실제정치'에 의한 '덕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日滿一德一心'의 선린관계를 원동력으로 한다. 그 근거는 '日滿一德一心一體', 즉 "천황과 만주국 황제의 정신은 한 몸"이라는 것이었다. 현인신인 천황과 만주국 황제가 '한 몸'인 이상 "日滿不可分"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민족의 일본화, 즉 '동화'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민족협화가 내포하고 있던 각 민족의 상호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은 일본민족의 주도에 의한 이상향 건설의 담론으로 변질되었고, 다시 일본민족의 '동화'와 결합됨으로써 일본화정책의 일부로 포섭되었던 것이다.[58] 남경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발표하였던 "오족협화"는 결국 구호 수준에 머물렀고 만주국 내에서 그 실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기틀은 마련되지 않았다. 만주국 정부

57) 애신각라 부의, 앞의 책(하), 74쪽.
58) 德富正敬, 『滿洲建國讀本』, 日本電報通信社, 40-44쪽.

가 시행한 정책은 일본적 세계관의 강요였고, 이는 다른 민족을 통합하는 방법으로서는 부적절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주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점점 확산되었다. 전술한 다치바나 시라키 역시 "만주국의 구성요소인 각 민족은 거의 예외없이 사변 초기의 열렬한 기대를 점차 냉각시켜 가고 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서술하였다. 건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만주족에게도 만주국 및 그 정부 체제가 자신들이 창조한 자신들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기는 어려웠다. 전술한 대로 부의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관동군을 견제할 수 없었다. 희흡은 길림성에 군사적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역시 관동군에게 대적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1932년 관동군이 오오사코 미치사다(大迫通貞) 中佐 외 일곱 명의 군사교관을 길림성 경비군 군정고문으로 파견하면서 희흡의 실질적 영향력은 축소되었다.[59] 군사적 기반을 갖춘 다른 만주족은 부위처럼 고령으로 사망하거나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하였다. 이제 만주족은 건국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내세웠던 명분상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 공동체인 만주국 내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정치·사회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수 집단으로 머물러야 했다.

이같은 괴리 속에서 일부 만주족 관료들은 만주국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1934년 11월 오쿠라 긴모치(大藏公望)는 만주족 대신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만주국의 현상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 예를 들면 혼조 장군 당시 중앙정부의 관리는 滿係 6에 대해 日係 4였다. 그런데 현재는 日係 9에 滿係 1의 비율이다. 그러한 滿係 관리도 아첨하거나 학력이 없는 사람만 채용하고 이를 두고 또 무능하다고 하고 있다. 공문서와 그 외 관공서의 일은 죄다 일본식이다. 그들이 만주국 정부를 빼앗을 심산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59) 滿洲國史編纂刊行會編 ,『滿洲國史』各論 , 謙光社, 1973 , 367.

봉급도 일반 滿係 관리는 170원 이상 받을 수 없고 게다가 이만큼 받는 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다. 일본인은 거기다 가봉이 80% 붙는다.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군은 물러나며 만주국의 정치를 맡긴다고 천명하였지만, 그것은 만주국의 日係 관리에게 맡긴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日係 관리에게는 아예 근본 방침이 없다. 만주국 성립 당시 우리들은 일본인과 만주족이 상호 제휴하여 훌륭한 신국가를 건설할 생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런 현상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다. 화폐 통일만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이뤄낸 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장학량의 지배 시대보다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한다면 전 만주족은 일본에 반항해서 일어날 것이다.[60]

이처럼 권력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이용당하는 과정에서 만주족은 이제 '滿係', '滿洲國人'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민족성을 상실해 갔다. 정부 문서에서 만주족의 하위 분류로 滿族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의 인구 분류에서 滿族은 한족과 함께 '滿係'로 표기되면서 제외되었다. '滿係'는 만주국의 대표 민족으로서 실질적인 득실을 확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만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정적 표기였던 것이다. 이시기 『盛京時報』 역시 만주족의 독자성에 대한 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만주족의 정체성은 여전히 구성원의 자아 식별을 위해 필요했지만 이는 점차 제도적인 인정 차원을 벗어나 관념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민족 교육에 관한 어떠한 공식 문서에도 독자적 민족으로서 '만주족'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만주어 교육 역시 몽골어 또는 러시아어 교육에 비해 국가로부터 관심이나 자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주어를 교육하는 기관은 선양에 있는 4년제 학교인 私立 奉天維城國民高等學校가 유일하였다. 1934년 부의는 「奉天維城

60) 木戸日記研究會 編, 『木戸幸一関係文書』, 東京大學出版會, 1966, 190-191쪽(야마무로 신이치, 앞의 책, 231-232쪽 원문 재인용).

學校始業勅語」를 반포하면서 “종실자제의 교육은 요순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회가 날로 변화하고 있으니 교육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 그대들은 황족의 후손으로서 성실히 학문을 닦아 장래 국가의 중추적 관리가 될 인재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기실 ‘維城’이라는 명칭 역시 종래 자희태후가 「康熙禦筆」의 “天潢維城”에서 두 글자를 선택하여 작명하였던 것임을 감안하면 그 설립 의도가 황실의 존속에 있음은 명확하였던 것이다.[61] 이에 부의의 동생이며 차기 황제로 간주되었던 溥傑은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였다. 부의를 비롯한 만주국의 고위직에 재직하고 있던 다수의 만주족은 학교 복원 및 운영을 위한 기금을 기부했다. 부의가 1934년부터 1941년 사이에 유성학교에 하사한 금액은 도합 12,400元에 이르며, 다른 이사진의 기부금 역시 49,710元에 이르렀다.[62] 그러나 만주국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은 거의 교부되지 않았다. 만주족을 위한 학교는 만주국 정부보다는 황실 및 일부 상층 만주족의 후원을 받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36년 1월 교장으로 취임한 寶熙 역시 “忠”, “孝”와 “祖先崇拜” 같은 유교 이념을 교육종지로 선포하였다. 이후 1939년 교장으로 취임한 慶厚는 여기에 “智”와 “勇”을 덧붙였다. 이는 1937년 護衛軍事件이 발발한 이후 부의의 호위군이 소수의 인원만을 남기고 해산되었으며, 남은 인원 역시 장총을 반납하고 권총 및 각목만을 보유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인하였다.[63] 이러한 모욕은 만주족 사회를 자극하였고 이에 군사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힘을 기르고자 하는 의지를 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40년 당시 교과과정을 보면 1~2학년에서 만주어, 만주역사, 만주지리를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 측량학, 토목공작법, 재료학, 도하공학 등 실무에 관련된 교과목이 편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의

---

61) 榮恒山, 「奉天維城學校」, 『遼寧文史資料選輯』 第10輯, 中華書局, 1958, 185쪽.
62) 於逢春, 「「満洲國」における満洲族教育についての一考察 - 奉天維城學校の研究」, 『教育學研究紀要』 第46卷 第1部, 2000, 153쪽.
63) 於逢春, 위의 글, 152쪽.

자율성은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 만한 것은 측량학, 철도학 등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정치, 법, 경제 등 국정 운영에 관련된 교과목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64] 이로 보아 이들이 양성하고자 하는 만주족 관리의 모습은 정치형 관료가 아닌 철저한 실무형 관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정치권력에 도전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기반에 대한 실무 장악을 통해 다른 방향에서 만주국 현지를 장악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과정 하에 1937년~1945년 사이 도합 11기, 270여 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양성되었다.[65] 그러나 이들이 실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구술 자료만이 산재해 있어 좀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성학교는 1945년 '일만일체'의 일환으로 기획된 교육일체화 정책 발표 이후 다른 학교와 통합되어 省立奉天第十二國民高等學校로 개편되었다.[66] 아무리 명목상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만주국의 '황제'가 후원하고 '차기 황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였지만, 그것이 일제가 주도하는 정책의 예외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였다. 만주족의 정체성 유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장치였던 유성학교조차 건국을 전후한 아주 짧은 시기 외교적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산되었던 것이다. 만주족은 만주국에 합류하면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 재건을 경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본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주족의 정체성을 억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본 당국은 만주족 정권을 회복하려는 부의의 희망을 지지하지 않았다. 전술한 것처럼 만주국 초기 채택되었던 민족자결론조차 '만주족의 만주'가 아

64) 「各學年の各科目每週授業時數及び課程標準表」(1940年), 於逢春, 위의 글, 154쪽.
65) 榮恒山, 위의 글, 87쪽.
66) 王靜儀 等, 『臺灣省臨時省議會議員小傳及前傳』, 台灣省諮議會, 2014, 260쪽.

닌 '만주국인의 만주'를 전제하였다. 만주국은 만주족의 지배자였던 부의가 명목상의 최고 통치자이자 상징적인 만주국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만주족이 곤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어떠한 공식적인 정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이상을 품고 만주국에 합류하였던 만주족 지식인 등 상층부 만주족이 만주국을 이탈하여 남경정부 혹은 공산당 휘하로 들어갔다. 민족 발상지이자 토착 세력으로서의 우선권을 근거로 '만주족의 만주'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이들의 이탈은 만주족의 국가 수립의 정당성에 논거를 더이상 제시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하였다. 그중 잔류를 선택한 일부 지식인은 일본의 충실한 협력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다. 일반 만주족에 대한 보호장치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협화'는 만주족에게 일정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기제로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은 자신들의 식민지로부터 인구를 확보하였다. 즉 거리상으로 가까웠던 조선에 대해 조선인 우대 정책 및 집단 이민 정책을 통해 통치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식민통치를 통해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조선인은 '이등공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만주족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만주족 역시 만주국 내에서 조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 만주국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족의 경우, '오족협화'의 구성원으로 거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의 공식 자료에서는 대부분 '滿係' 속에 포함되면서 그 민족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현지 한족은 만주국 건립 이전부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실리를 취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만주국의 통치에 적극 협력하였다. 특히 남만주 만철 부속지의 경우 일본학교의 중국인 등록이 자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만주국 건국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67] 그러나 오자키

67) 장축예, 「1920년대 남만주 일본 관할구역 내 중국인의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46쪽.

유키오(尾崎行雄)가 「墓標に代えて」에서 “재만 3천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표를 하게 한다면 대다수는 만주국을 반대할 것이다. …… 하물며 만주국 요인이란 자는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사리사욕을 위해 나라를 판 불량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매국적 인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본은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크나큰 손해를 입는다”[68]고 경고한 것처럼, 실리가 정치적 정당성보다 우선되는 한족이 만주국의 강고한 국민으로서 자리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에드거 스노(Edgar Snow)가 만주국을 방문했을 당시 관리들을 상대로 시행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왜 만주국 관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만주국 관청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 재산과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도망가면 가족이 모두 살해될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결코 좋아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심지어 다수의 관리는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성과 시의 공무원 가운데에는 반만항일운동을 은밀히 원조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조심스럽게 답하였다.[69] 만주국에 한족 관리와 한족 주민의 비중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당시 한족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의 경쟁은 때로 ‘오족협화’를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득하는 근거로 사용하게 했다. 이에 민족간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오족’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에 기반하여 서로를 옹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식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거나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조선인과 만주족, 중국인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었고, 그 희생의 대상은 만주족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만주국 성립과 동시에 조선인의 商租權이 인정되는 범위도 동삼성 전체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나 조선인의 토지 침탈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가 실시했던 법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이 商租權을 행사하거나 중국 국적의 조선인이 동양척식회

68) 尾崎行雄, 「墓標の代りに」, 『府邑面雜誌』, 3, 1933, 55-78쪽.
69) エドガ-·スノ- 著, 梶穀善久 譯, 『極東戰線』, 築摩書房, 1973, 220쪽.

사 등 금융기관의 대부를 받아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일본은 鮮滿拓植株式會社(이하 “선만척식”), 滿鮮拓植株式會社(이하 “만선척식”) 등을 통해 조선인의 이주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만주국의 효율적인 토지 개간을 도모하였다.[70] 이에 1932년부터 1936년까지 시험적으로 일본인 이민단을 모집, 파견하였으며, 1936년 「滿洲農業移民百萬戶移住計劃」 및 1939년 「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을 수립하여 국책 사업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민용지로 지정되는 곳은 미개척지 이외에도 이미 현지에 거주민이 존재하고 있던 지역 역시 다수를 차지하였던 점은 민족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1942년 말까지 인수한 旣耕地는 351 헥타르에 달했고, 이를 빼앗긴 현지 주민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특히 지주나 자작농의 손해가 막심하였는데, 이민용지로 지정될 경우 현지 주민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개척단이 매매가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라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의 보상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조건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토지 이외에 주택 역시 인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작농의 경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소작농 혹은 빈농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등장하였다.[71] 소작농의 경우 그나마 소작권은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본인 개척단과 새롭게 소작 협상을 벌여야 했다. 이는 현지 거주인의 출신 민족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일이었고, 따라서 일본인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반일 운동이 촉발되었다. 언론에의 호소, 관할부서에 진정서 접수 등을 통한 소극적인 방법의 저항은 무시하거나 쉽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무장봉기 등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다. 특히 일본인 이민단 중 재향 군인으로 구성된 무장이민단과 현지 주민의 무력 충돌은 자칫 사회의 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

70) 조정우,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사회와 역사』 103, 2014, 202-203쪽.

71) 劉含發, 「満州移民の入植による現地中國農民の強制移住」, 『現代社會文化研究』 21, 2001, 373-374쪽.

이에 1939년 만선척식과 선만척식의 통합을 주도하던 카타쿠라 타다시(片倉衷) 관동군 중좌가 통합을 서두르며 “만주인의 인심 파악과 민심 안정의 고려 또는 개척정책의 진화성을 고려하면, 만선척식의 통합 실현은 필수의 문제이다. … 현재 만주에는 반만 항일 기운으로 복합 이상국가의 면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 이래서는 만주인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72] 이에 이민단의 정착이 어느 정도 완료된 지역 중 未入植地가 발생하면 이를 현지 주민에게 처분하거나 만척이 인수하여 현지 주민과 소작 계열을 체결하는 형태로 토지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의 피식민지인으로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일부 조선인들에게 유리하였으며, 만주족은 근방의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타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만주국을 떠나 관내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일반 만주족이 만주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만주국을 이탈하지 않은 이유는 전술한 것과 같이 ‘삶의 터전 마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들은 청조에서 기인의 신분으로 누렸던 각종 특권의 부활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이었던 토지와도 강제로 유리되었던 것이다. 만주국 출범 당시 만주족이 가졌던 ‘만주족의 국가’에 대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였고, 만주족은 ‘滿係’라는 이름으로 은폐되어 그 존재감이 희박해지고 경쟁에서 도태된 방관자로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인구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1936년 滿洲弘報協會가 발행한 『滿洲國の現住民族』에서는 康德 2년(1935년) 12월 조사 당시 만주족의 인구를 대략 5,654,75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시기 한족의 인구는 25,807,458명, 일본인 120,788명, 조선인 739,353명이며 총 인구는 32,991,904명으로 조사되었다.[73] 이중 만주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은 봉천

72) 정안기, 「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殖(주)」, 『동북아역사논총』 31, 2011, 80쪽.
73) 滿洲事情案內所 編, 『滿洲國の現住民族』, 滿洲弘報協會, 康德5年, 9-10쪽.

성 1,914,568명, 길림성 745,585명, 濱江省 700,679명 순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전술한 바 있는 1940년에 실시된 『康德七年滿洲國臨時國勢調査報告』에서 만주족의 인구는 2,677,288명으로 만주국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4] 達斡爾族, 錫伯族, 鄂倫春族 등의 其他 滿洲籍 1,497여 명을 합쳐도 1935년에 비해 그 차이가 두 배에 달할 정도이다. 반면 한족은 36,870,978명, 일본인 819,614명, 조선인 1,450,384명으로 이들 민족의 인구는 오히려 대폭 증가하였다. 당시 발표된 만주국의 총 인구는 43,202,880명으로 1935년에 비해 천만 명이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5년이라는 단기간 동안 총 인구수는 물론 다른 민족의 인구가 증가할 동안 유달리 만주족의 인구만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35년의 인구조사가 건국 초기 관동군에 의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그 정확도가 높았던 반면, 1940년의 조사는 조직이 갖추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만주국의 주도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존재한다.[75] 통계의 정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만주국이 통계 및 조사에 필요한 행정 능력을 갖춘 근대 국가임을 대내외에 증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전쟁의 확대로 인해 당시 만주국의 징병 연령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 23세 이하의 남성 인구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기이할 정도로 낮게 집계되었다는 점, 이에 대한 보정이 없이 그대로 공표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76] 이는 민간에서 징병을 피하기 위해 해당 인구를 누락하거나 은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조사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만주족의 인구만 절반 이하로 집계되었다는 점에는 의문이 든다. 여기에는 5년 사이에 만주족이 대거 이탈하였거나, 징병을

---

74) 滿洲國國務院總務廳臨時國勢調査事務局 編, 앞의 책, 7쪽.
75) 兼橋正人·安冨歩, 「1940年國勢調査にみる「滿洲國」の実相」, 『アジア経済』 52卷 2號, 2011, 11쪽.
76) 위의 논문, 9쪽.

피하기 위한 조사 기피 행태가 유달리 만주족에서 성행하였거나, 혹은 만주족임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만주국 건국 시기에 합류한 만주족이 '자신들의 국가'가 본격적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에 초기 인구 조사에서 출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을 것을 그 이유로 본다. 여기에 일부 한족이 혹시라도 만주족에게 주어질 특권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위장하였다는 것이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족 출신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이익을 바라고 民籍을 위장하였던 한족이 1940년 조사에는 원래 소속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사 당시 징병, 기존 토지소작권의 박탈 등 각종 불이익을 걱정하여 만주족 중에서도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이들 역시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전술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실시된 『滿族社會歷史調査』에서 집계된 동삼성 만주족의 인구 수가 1940년 조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주국을 떠나 관내로 돌아간 만주족 역시 존재하였지만 이백만 명 이상이 단기간에 이탈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이 인구조사 수치는 독자적인 구성원을 희망하였던 만주족이 이제 그 기대를 버리고 만주국을 이탈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 스스로를 은폐하는 존재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간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만주족은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국가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었다.

Ⅵ. 結論

청조의 멸망 이후 그 지배층이었던 만주족은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재규정할 필요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청조 수립 이래 자신들이 중심이 된 “팔기 기인”이라는 이름의 종족 연합을 형성하여 사회의 근간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혁명으로 정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한인팔기와 일부 몽고팔기가 기인에서 벗어나면서 종족 연합 역시 균열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청말 근대 민족개념의 도입과 한족 중심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해 만주족은 배척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민족의 하위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만주족은 자신들의 부흥을 위해 정치적 종족 연합에서 벗어나 공화국 국민으로서 변모를 모색하게 되었다. 아울러 만주족은 만연한 배만 정서를 극복하고 한족에게 동화되었다는 주장에 맞서 자신들이 독자적 민족임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이는 다른 민족과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요구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였다. 이는 신국가 체제 하에서 공화국민으로의 적응, 민족 독자성 확보, 독자적 정권 수립 추구의 활동으로 그 범주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존재하였던 현실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만주족은 국체가 바뀌는 혁명상황에서도 스스로 遜位詔書를 공포하여 평화적 정권 교체의 형식을 취하면서 패배자 집단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이양의 적법성 아래 동등한 국민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그 준거는 평화적인 국체변환의 대가로 획득한 『우대조건』이었다. 무력 충돌로 시작된 혁명은 혁명 세력과 청조 모두 내전을 회피하여 중국의 강역을 보존하고자 하는 점에 동의하면서 여러 논란 끝에 선통제의 퇴위에 합의하고 평화적인 국체변환에 성공하였다. 『우대조건』은 그 대가로 명문화된 약

속이었으며, 이는 황실을 비롯한 만주족 및 종족연합으로서의 기인에 소속된 이들에게 최소한의 정치경제적 기반으로서 작용하였다. 이를 준거로 만주족은 체제 내에서 각자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청 황실은 소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중화민국 내에서 존재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고, 만주족 역시 적극적으로 국민으로 변모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군벌 정부는 만주족의 이탈을 막기 위해 『우대조건』을 가급적 준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를 통한 만주족의 정치참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지연시켰다. 만주족은 이에 맞서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국회 내 만주족 또는 동삼성의 독자적 의석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종족 연합인 기인 체제를 활용하여 한족, 몽골족과 연합하면서 공동의 이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풍옥상 집권 이후 『우대조건』이 수정되고 국민당 정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를 국체변환의 조건 불이행이자 상호 신뢰의 배반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으로 독자적 행보에 나서게 되었다.

아울러 혁명의 기치로서 내걸었던 '오족공화'에 대한 집권세력의 인식 역시 변모하였다. 북양 정부의 경우 오족공화를 명분상이라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혁명 세력은 장훈의 복벽 시도 실패 이후 완전히 오족공화에서 벗어나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만주족은 한족에게 동화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민족적 독자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였다. 이에 만주족 단체들은 오족공화를 근거로 삼아 몽골족, 장족과 동일한 대우를 획득하고자 활동하였다. 그러나 혈연과 공동의 지역 기반, 곧 집단 거주지를 주된 기준의 하나로 삼는 근대 민족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민국정부와 한족은 만주족에 대하여 몽장에 인정한 것과 같은 수준의 참정권도 독자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오족공화의 또다른 구성원인 회족이 집단 거주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종교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만주족은 필요시 회족과 연대하면서 민족의 독자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동시에 "국어기사"의 전통 하에 양

성되었던 무력집단으로서의 특성을 신국가의 군인 혹은 경찰 조직 내에서 발휘함으로써 국가에서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안정된 생계수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청말 개혁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신식 학문과 생산 기술 등을 연마하여 자립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비록 이들이 현실적인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한족의 성씨로 개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문의 족보 편찬을 통해 만주족의 계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지속하였다.

상기한 두 가지 경우가 민국 체제 하에서의 순응을 의미한다면, 국체변환 이후 이들과 결을 달리하고 독자적 정권 수립을 희망하는 움직임 역시 나타났다. 그 선두에 섰던 것은 종사당이었다. 이들은 일본 및 몽골과의 협력 하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만주는 만주족의 만주”를 주장하였다. 몽골과 연대한 두 차례에 걸친 독립운동이 실패한 이후에도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동삼성을 기반으로 독립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해 나갔다. 동삼성 지방 정권 역시 민국 체제 하에 속해 있었으나 관내 다른 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하였다. 장작림의 집권 이래 이러한 독자성은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이는 지역 토착 만주족이 상대적으로 다수 지방 권력에 진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역시 한편으로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는 9.18 사변 이후 동삼성의 빠른 이탈과 만주국 합류로 이어졌다. 여기에 소조정의 출궁 이후 천진으로 이주한 부의 역시 『우대조건』 회복 요구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계속되는 무시와 방기에 실망하여 만주국으로 합류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구심점과 명분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동삼성은 종래부터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대결 구도 하에 만주족, 한족, 일본인, 조선인이 서로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경쟁하던 곳이었다. 청조 존속 기간 동안 부재지주로서 토지를 장악하지 못했던 만주족의 자리는 서서히 한족과 일본인 및 조선인이 대체해 갔다. 만주족은 토착 세

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 나갔으나, 일본의 침략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만주족은 일본과 협력하여 건설된 새로운 국가에서 왕도주의를 실현하는 '오족협화'의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滿係'라는 호칭은 만주족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즉 민국정부와의 단절을 도모하기 위해 부여된 칭호였다. 오히려 '만계'라는 이름으로 만주족과 한족이 뒤섞이면서 만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성은 공식적인 수치에서 은폐되었다. 관동군을 중심으로 한 건국 중심세력은 '만주'로 통칭되는 중국 동삼성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나, 여기에는 지리적인 중요성만 내재되어 있을 뿐 정치사회적 주체로서의 만주족은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 혁명 이후 중국 정부에 의해 만주족에게 명목상으로나마 보장되었던 것과 같은 특권은 애초에 상정되지 않았다. 만주국 내에서 아직 완비되지 못한 지방행정조직의 역할을 대신한 지역 '협화회'의 등장은 기존에 존재하던 만주족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대체해갔다. 여기에 계속되는 민족간 경쟁에서 밀려난 만주족은 삶의 기반을 상실하고 점차 그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만주국의 건립은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만주족을 위한, 만주족이 주체가 되는 국가의 성취를 오히려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한편 일본에 협력한 만주족의 활동은 이후 '親日漢奸'의 한 부류로 평가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는 국체 변환의 정당한 대가로 부여받은 『우대조건』의 불이행이 그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오족공화'는 사라지고 한족 중심주의가 뚜렷해지면서 집권 세력이 만주족이 지닌 민족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였던 것 역시 만주족의 이탈을 촉발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처사이다. 그 연장선 상에서 본다면 만주족을 '滿奸'이 아니라 '漢奸'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탈자로 규정한 만주족에게도 그 민족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족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만주족은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을 자각하

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친숙한 명칭과 이념을 내세운 일본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들의 부흥 노력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첫째, 만주족이 청조의 입관 이래 관내 주방에 분산 거주하면서 민족의 독자적 거주지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던 점, 둘째, 민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소조정이 일반 만주족과 유리되었다는 점, 셋째, 동삼성이 지니는 독자성을 활용하여 새롭게 근거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노력은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는 민족들과의 경쟁 끝에 번번이 좌절되었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만주족의 부흥 노력을 통해 종래 연구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진 청조 멸망 이후 만주족의 역량과 적극성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만주족이 혁명 이후 중국 내부의 한 종족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민족으로서 스스로를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부흥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만주족 개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정치적 구심점의 부재, 국가권력의 지원 미비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임을 밝혔다. 아울러 만주족의 적극적인 활동과 이를 가능하게 한 잠재적 역량은 중국 내부의 집권 세력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배제하는 이유가 된 것을 해명하였음에 그 의의를 둔다.

한편 만주국 건국 이후 국민당 정부에 반대하고 공산당에 찬동하였던 만주족과, 일본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항일에 나섰던 만주족,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민당 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이주한 만주족 역시 존재하였다. 이들의 활동에는 어떠한 명분과 목표가 존재하였는지, 그것이 본고에서 서술한 만주족의 움직임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1. 사료 및 자료집

『盛京時報』,『申報』,『大公報』,『京話日報』,『順川時報』,『時事新報』,『民國日報』,『民報』,『民權報』

『조선일보』,『동광』,『삼천리』

『大同報』,『政治周報』

『旗族』,『商學月刊』,『震旦』,『東方雜誌』,『滿鐵調査月報』,『民政部調査月報』

『政府公報』,『臨時公報』,『內閣官報』,『湖南政報』

愛新覺羅·載灃,『醇親王載灃日記』, 群衆出版社, 2014,

『鄭孝胥日記』, 北京 : 中華書局, 1993.

川島浪速 編,『肅親王』, 發行處 不詳, 大正3年.

金啓孮,『金啓孮談北京的滿族』, 北京 : 中華書局, 2009.

— ,『梅圓集:金啓孮先生八十五周歲自選集』, 哈爾濱 : 哈爾濱出版社, 2003.

定宜莊,『最後的記憶—十六位旗人婦女的口述曆史』,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9

레지널드 존스턴, 김성배 역,『자금성의 황혼』, 돌베개, 2008.

애신각라 부의, 이충양 역,『황제에서 시민으로』상·하, 문학과 비평, 1988.

エドガ-·スノ- 著, 梶穀善久 譯.『極東戰線』, 東京 : 築摩書房, 1973.

『大淸實錄宣統政紀』데이터베이스

『大淸律例』, 天津古籍出版社, 1995.

『大淸會典事例』, 北京: 中華書局, 1991.

鄂雨泰 等,『八旗通志』,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徐世昌 編, 李澍田 等 點校,『東三省政略』,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9.

中國地方志集成編輯工作委員會 編, 『中國地方志集成』 遼寧府縣志輯·黑龍江府縣志輯·吉林府縣志輯, 南京: 鳳凰出版社(原江蘇古籍出版社) ; 上海: 上海書店 ; 成都: 巴蜀書社, 2006.

延邊朝鮮族自治州土地志編纂委員會 編, 『延邊朝鮮族自治州土地志』,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2002.

王堯 主編, 『滿·錫伯·赫哲·鄂溫克·鄂倫春·朝鮮族文化志』, 上海人民出版社, 1998.

南滿鐵經濟調查會編,『滿洲農業資源調查報告』, 1934.

民族問題五種叢書遼寧省編輯委員會 編,『滿族社會歷史調查』, 沈陽 : 遼寧人民出版社, 1985.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北洋政府檔案·國會』第一冊, 中國檔案出版社, 2010.

遼寧省檔案館 編, 『奉系軍閥檔案史料彙編』, 江蘇古籍出版社·香港地平線出版社, 1990.

東北師範大學明清史研究所·中國第一歷史檔案館合 編, 『清代東北阿城漢文檔案選編』, 北京: 中華書局, 1994.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清代檔案史料總編』第八券, 北京 : 中華書局, 1982.

趙煥林·楊豊陌 主編,『興京旗人檔案史料』, 遼寧: 遼寧民族出版社, 2001.

遼寧省檔案館等 譯編,『三姓副都統衙門滿文檔案譯編』, 遼沈書社, 1984.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 編,『清代檔案史料叢編』, 中華出版, 1978.

— ,『清末籌備立憲檔案史料』, 中華書局, 1979.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檔案館, 「北洋政府內務部檔案」, 『經濟檔案函目彙編』第一冊, 1987.

中央民衆運動指導委員會編,『地方自治方案彙編』, 發行處 不詳, 1935

滿洲事情案內所 編,『滿洲國の現住民族』, 滿洲弘報協會, 康德5年.

『康德七年滿洲國臨時國勢調查報告』,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43,

殷夢霞·田奇 選編,『民國人口戶籍史料匯編』,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09.

李文海 主編, 夏明芳·黃興濤 副主編,『民國時期社會調查叢編』,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2004.

馬大正 主編,『民國邊政史料彙編』, 國家圖書館出版社, 2009.

吉林省圖書館偽滿洲國史料編委會編,『僞滿洲國史料』, 北京 :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制中心, 2002.

唐向榮,『灤縣文史資料 - 第7輯 辛亥灤州起義』,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河北省灤縣委員會, 1991.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天津市委員會文史資料研究委員會編, 『天津文史資料選輯』第44輯, 天津人民出版社, 1988년.

尚友倶樂部·廣瀨順晧·櫻井良樹編,『伊集院彥吉關係文書 - 第1卷 辛亥革命期』, 芙蓉書房出版, 1996.

『中國近代人物文集-伍廷芳集』, 中華書局, 1993.

『孫中山全集』, 北京 : 中華書局, 1981.

曹從坡·楊桐 編,『張謇全集』, 南京:江蘇古籍出版社, 1994.

駱寶善·劉路生 編,『袁世凱全集』, 河南 : 河南大學出版社, 2013.

張蓉初,『紅檔雜志有關中國交涉史料選譯』, 北京 : 三聯書店, 1957.

胡平生,『復辟運動史料』, 正中書局, 1992.

孫邦主 編,『僞滿人物』, 吉林人民出版社, 1993.

中央檔案館·中國第二曆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編,『偽滿傀儡政權』, 中華書局, 1994.

田邊種治郎發行兼編輯,『東三省官紳錄』, 東三省官紳錄刊行局, 1924.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民國叢書 第五編 : 83.歷史·地理類—馮玉祥,『我的生活』(上海教育書店1947年版影印)』, 上海 : 上海書店, 1996.

潘懋元·劉海峰 編,『中國近代教育史資料彙編 - 高等教育』, 上海教育出版社張國淦 編,『辛亥革命史料』, 文海出版社, 1956.

張傳璽 主編,『中國歷代契約會編考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日本外交文書選譯: 關於辛亥革命』,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0.
商務印書館編譯所編,『中華民國法令大全補編』, 發行處 不詳, 1917.
商務印書館編譯所編,『中華民國法令大全補編』, 發行處 不詳, 1917,
民初時期文獻編輯小組 編輯,『中華民國建國文獻:民初時期文獻』 第一輯, 台北 : 國史館, 1997
郭保琳等編,『東三省農林墾務調查書』, 發行處 不詳, 1915.
『各省士民維持優待淸室條件函稿』, 正誼書社 鉛印本, 1924.

JACAR(アジア歷史資料センター) 데이터베이스
南滿鐵臨時經濟調査委員會, 『吉林省における土地整理に關する法律』, 昭和4(1925).
滿洲國民政部土地局 編,『土地関係舊法規』, 1934.
滿洲帝國協和會 地籍整理周分會 編,『土地用語辭典』, 嚴南堂, 1939.
天海謙三郎, 「北支土地慣行資料(其二)」, 『支那土地問題に関する調査資料』, 南滿洲鉄道調査部, 昭和12年.
東洋協會,『滿蒙の米作と移住鮮農問題』 1927.10.
朝鮮及滿洲社, 「滿洲の財界と事業界」,『朝鮮及滿洲』 377, 1939.
朝鮮通信社, 「滿洲國土地制度」,『朝鮮通信』 109(2725), 1935.
朝鮮通信社, 「滿洲國土地制度確立」,『朝鮮通信』 129(3241), 1937.
德富正敬,『滿洲建國讀本』, 東京 : 日本電報通信社.
俞鹿年,『中國官制大辭典』, 中華書局, 2020.
申鉉武·王銳波 編,『中國政黨政團大觀』, 延邊大學出版社, 1988.
故宮博物院 編,『滿蒙漢合璧教科書 等三種』 第2冊, 海口 : 海南, 2001.

2. 연구서

1) 국문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김형종, 『淸末 新政期의 硏究 : 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 서울대출판부, 2002.

손춘일, 『"滿洲國"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硏究』, 백산자료원, 1999.

유용태, 『환호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2006.

윤휘탁, 『日帝下 滿洲國 硏究 : 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一潮閣, 1996.

— , 『滿洲國 :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013.

이명종,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한양대학교출판부, 2018.

이종민, 『흩어진 모래』, 산지니, 2013.

이훈, 『만주족 이야기 : 만주의 눈으로 청 제국사를 새로 읽다』, 너머북스, 2018.

한석정·노기식 共編,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2008.

한석정 외, 『근대 만주 자료의 탐색』, 동북아역사재단, 2009.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1999 (2007 개정).

— ,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2008.

— , 『만주 모던 :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2016.

유소맹 저, 이훈·이선애·김선민 공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고바야시 히데오 저, 임성모 역, 『만철 :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처럼, 2004.

나카미 다사오 등저, 박선영 역, 『만주란 무엇이었는가』, 소명, 2013.

레지널드 존스턴,

마크 C. 엘리엇 저, 이훈·김선민 공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야마무로 신이치 저, 윤대석 역, 『키메라 : 만주국의 초상』, 소명, 2009.

오카베 마키오 저, 최혜주 역,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 제국 일본의 교두보』, 어문학사, 2009.

요코야마 히로야키,『중화민족의 탄생』, 한울, 2012.
王柯 著, 김정희 譯,『민족과 국가: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동북아역사재단, 2007.
중화민국국민정부외교부 편, 박선영 역,『중일문제의 진상 : 국제연맹 조사단에 참여한 중국 대표가 제출한 29가지 진술(1932년 4월-8월)』, 동북아역사재단, 2009.
앤서니 스미스 著, 김인중 譯,『족류-상징주의와 민족주의』, 아카넷, 2016,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저, 양휘웅 역,『만주족의 역사 :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2013.
프래신짓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2) 중문

高全喜,『立憲時刻: 論《淸帝遜位詔書》』,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 ,『中國憲制史』第一卷, City University of HK Press, 2022.
關嘉祿, 佟永功 譯,『天聰九年檔』(天聰9年(1635) 十月庚寅), 天津古籍出版社, 1987.

戴迎華 著,『淸末民初旗民生存狀態硏究』, 人民出版社, 2010.
賴惠敏,『淸代的皇權與世家』,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2010.
— ,『乾隆皇帝的荷包』, 中華書局, 2016.
常書紅, 『辛亥革命前後的滿族硏究 : 以滿漢關系爲中心』,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謝彬,『民國政黨史』, 中華書局, 2007.
孫春日,『中國朝鮮族移民史』, 北京: 中華書局, 2009.
刁書仁,『東北旗地硏究』, 北京: 民族出版社, 1994.

楊國楨,『明淸土地契約文書硏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9.
楊餘鍊 等,『淸代東北史』, 瀋陽: 遼寧敎育出版社, 1991.

梁治平,『清代習慣法: 社會與國家』,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6.
吳廷玉·衣保中·陳玉峰·李帆,『清代滿洲土地制度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2.
烏廷玉·張雲樵·張占斌,『東北土地關係史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0.
王柯,「亦師亦友亦敵: 民族主義與近代中日關係」,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ress, 2020.
王慶祥,『毛澤東周恩來與溥儀』, 北京: 人民出版社, 1996.
— ,『溥儀與僞滿洲國』, 北京: 人民出版社, 2015.
王魁喜 外,『近代東北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48.
王革生,『清代東北土地制度史』,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1.
衣保中,『東北農業史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5.
衣保中 外,『清代滿洲土地制度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992.
楊餘練·王革生 外,『清代東北史』, 遼寧教育出版社, 1991.
李鳴,『明代土地法制研究』,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00.
張研,『清代經濟簡史』, 雲龍出版社, 2002.
張晉藩,『清代民法綜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8.
前南京國民政府司法行政府編,『民事習慣調査報告錄』, 北京: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5.
趙令志,『清前期八旗土地制度研究』, 北京: 民族出版社, 2001.
中國人民大學清史研究所·檔案系中國政治制度史教研室合編,『清代的旗地』, 北京: 中華書局, 1989.
陳端雲,『現代中國政府』, 吉林文史出版社, 1988.
滋下秀三 等著, 王亞新·梁治平 編,『明清時期的民事審判與民間契約』, 北京: 法律出版社, 1998.
買士毅 編著,『民國財政史』正編 上冊, 台灣商務印書館, 1962年.
林志宏, 『民國乃敵國也：政治文化轉型下的清遺民』, 台北: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2009.

3) 일문

広川佐保,『蒙地奉上:「滿州國」の土地政策』, 東京: 汲古書院, 2005.
仁井田陞,『補訂中國法制史研究: 土地法·取引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1.
周藤吉之,『清代滿洲土地政策の研究』, 東京: 河出書房, 1944.
天海謙三郎,『中國土地文書の研究』, 東京: 勁草書房, 1966.

4) 영문

Chen, Shuang, *State-Sponsored Inequality: The Banner System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Northeast China*,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17.

Christopher Isset, *State, Peasant, and Merchant in Qing Manchuria, 1644-1862*,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Edward J. M. Rhoads, *Manchus and Han: ethnic relations and political power in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1861-1928*, Seattle ; London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Enatsu, Yoshiki, *Banner Legacy: The Rise of the Fengtian Local Elite at the End of the Qing,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2004

Madeleine Zelin, Jonathan K. Ocko, and Robert Gardella ed., *Contract and Property in Early Moder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hilip Huang, *Civil Justice in China: Representation and Practice in the Qing*,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Shao Dan, *Remote Homeland, Recovered Borderland*, University Hawaii Press, 2011.

3. 연구 논문

1) 국문

강해수, 「“도의”에서 “광의 왕도”로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와 다치바나 시라키(橘樸)의 “왕도” 담론-」, 『일본공간』 13, 2013.

김기훈, 「만주국 시대 在滿 朝鮮農民의 經濟 狀況」, 『만주연구』 8, 2008.

김선민, 「청대 만주족 황실과 만주의 자연자원」, 『명청사연구』 46, 2016.

김수진, 「라오서의 『正紅旗下에 나타난 滿洲族旗人 의식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20, 2007.

— , 「旗人작가 穆儒丐 문학 연구 — ≪同命鴛鴦≫, ≪徐生自傳≫, ≪北京≫ 속에 새겨진 저장기억들」, 『중국어문논총』 48, 2011.

김택경, 「民國時期 步軍統領衙門의 존속과 폐지 -북경 경찰기구 통합의 관점에서-」, 『중국사연구』 119, 2019.

— , 「北洋政府시기 北京 경찰의 인원팽창과 그 함의」, 『동양사학연구』 119, 2019.

김형종, 「淸末 革命派의 ‘反滿’革命論과 ‘五族共和’論」, 『중국근현대사연구』 12, 2001.

— , 「1911年의 汪精衛 - 楊度와의 國事共濟會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문화』 48, 2010.

김희신, 「만주국 수립 이전 봉천의 상업과 중국 상인의 동향」, 『중국근현대사연구』 18, 2003.

— , 「민국초기 토지소유권 증명과 驗契」, 『중국근현대사연구』 60, 2013.

— , 「國民政府時期 ‘邊疆’ 知識人의 ‘民族’·‘國家’ 認識과 西康 建設 方案」, 『東洋史學硏究』 122, 2013.

— ,「중국 동북지역의 상업자본과 상점 네트워크 — 만주국 수립이전 봉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62, 2014.

석화정,「러일 비밀협약과 러시아의 몽골 정책」,『軍史』92, 2014,

손승회,「다치바나 시라키(橘樸: 1881~1945)와 滿洲國 建國 구상」,『동아인문학』28, 2014.

— ,「만주국의 중국적 관행의 제거와 변용 - 糧棧 폐지를 중심으로」,『東洋史學硏究』134, 2016.

손춘일,「滿洲國 성립 후 土地商租權 문제와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1932~1937)」,『아시아문화』13, 1997.

— ,「滿洲事變前 東亞勸業株式會社의 土地占有形態와 在滿韓人에 대한 中國當局의 土地政策」,『白山學報』51, 1998.

— ,「滿洲事變後 土地商租權登記와 在滿無籍韓人에 대한 就籍措置」,『白山學報』55, 2000.

신우철,「근대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35, 2007.

— ,「淸末 立憲君主制 憲法 小考」,『법사학연구』44, 2011, 101쪽.

안지나,「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만주연구』18, 2014.

유용태,「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동북아역사논총』23호, 2009.

유지원,「淸代 吉林烏拉의 형성과 漢人 移住에 따른 변화,『동북아역사논총』37호, 2012

윤욱,「젊은 滿洲親貴 集團의 정치적 지향과 좌절, 1900-1911」,『동양사학연구』제118집, 2012, 220-221쪽.

— ,「滿洲族의 孤城 琿春, 1911～1931: 琿春 滿洲族 엘리트의 鄕村支配의 지속과 변화」,『東洋史學硏究』132, 2015.

— ,「“二等公民” 擡頭 下의 琿春,」,『동양사학연구』 136, 2016.

— ,「中華民國 國民과 滿洲族 사이」,『역사학보』 234, 2017.

— ,「琿春 旗地의 소유와 운영, 1879-1931」,『동방학지』 184, 2018.

— ,「淸朝 下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역사와 경계』 106, 2018.

— ,「琿春 滿洲族의 沒落, 1931~1949 - 朝鮮族의 起를 兼論 -」,『역사와 세계』 59, 2019.

윤휘탁,「변지에서 내지로 - 중국인 이민과 만주(국)」,『중국사연구』 16, 2001.

— ,「민국시기(民國時期) 중국인(中國人)의 만주(滿洲) 이주(移住)와 귀향(歸鄕)」,『中國史硏究』 63, 2009.

— , 「논문(論文) : "복합민족국가(複合民族國家)"의 파탄; 만주국의 붕괴와 "만주국인(滿洲國人)"의 충돌·수난」,『中國史硏究』 78, 2012.

— ,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村落 실태와 농민생활」,『만주연구』 24, 2017.

이경숙,「만주국의 "국가교사론" 체제」,『한국교육사학』 33, 2011.

이병인,「國民黨政權의 公民觀과 ‘民族傳統’」,『중국근현대사연구』 35, 2007.

이지영,「淸末 新政期(1907~1911) 吉林省의 旗制 개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이훈,「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사총』 72, 2011.

장축예,「1920년대 남만주 일본 관할구역내 중국인의 교육권과 학교선택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정안기,「만주국기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鮮滿拓殖(주)」,『동북아역사논총』 31, 2011.

조세현,「淸末新政 시기 滿漢葛藤과 군주입헌론의 굴절 - 관제개혁에 따른 군주이미지의 변화에 주목하여」,『동북아문화연구』 23, 2010.

조정우, 「조선총독부 만주이민정책의 이면」, 『사회와 역사』 103, 2014.

— , 「만주의 재발명 - 제국일본의 북만주 공간표상과 투어리즘-」, 『사회와 역사』 107, 2015.

— , 「지역조사와 식민지의 경계지대 —- 1919년 전후 동척과 조선은행의 간도조사—」, 『만주연구』 26, 2018.

최덕규, 「러일의 내몽골 분할협약연구(1912): 제3차 러일협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5.

허혜윤, 「청대 토지 전매(典賣) 관행과 분쟁」, 전인갑 외, 『중국관행연구의 이론과 재구성』, 한국학술정보, 2012.

— , 「淸代의 土地典賣 관행과 법령: 乾隆18年 條例를 중심으로」, 『史叢』 76, 2012.

— , 「淸代 동북지역의 旗地 매매와 분쟁」, 『中央史論』 第37輯, 2013.

吳啟訥, 「漢人이 주체가 되는 중화민국에 직면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56, 2012.

張玉法, 「청말 혁명파의 혁명이론에 대한 견해 차이와 그 영향」, 『中國近現代史硏究』 第52輯, 2011.

2) 중문

薑曄, 「民國時期東北移民潮形成原因述論」, 『大連近代史硏究』 2011年 第1期.

耿常華, 『民初奉天全省官地淸丈局硏究(1912-1929)』,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高強, 「章炳麟出任東三省籌邊使始末」,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5券 2期, 2015.

高承龍,「僞滿洲國民族政策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高千舒,「民國初期奉天省旗民生存狀況研究(1911-1928)」,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劉潔·衣保中.「東北解放區的土地改革與新民主主義土地關系的建立」,『中共黨史研究』1998年 3期.

劉峰,「日本在僞滿統治中的"自治派"與"統制派"」,『世界曆史』2020年 01期.

劉平·孫昉,「溥儀小朝廷的政治史研究」,『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15年 3期.

劉含發,「満州移民の入植による現地中國農民の強制移住」,『現代社會文化研究』21, 2001.

賴惠敏,「從契約文書看清前期的旗地政策與典賣(1644-1820)」,『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32期, 1999.

淩鳳桐,「許蘭洲與畢桂芳之爭」,『齊齊哈爾文史資料』1986年 第3-4輯.

牟敏瑤,「三家子村滿族文化演變曆程概說」,『滿語研究』2020年 第2期.

範立君,「近代關內移民與中國東北區域文化的變遷」,『만주연구』10, 2010.

桑兵,「辛亥國事共濟會與國民會議」,『近代史研究』2015年 第2期.

— ,「袁世凱《請速定大計折》與清帝退位」,『近代史研究』2017年 6期.

— ,「政權鼎革與法統承繼——圍繞清帝退位的南北相爭」,『學術研究』2018年 1期.

常榮·衣保中,「清代吉林檔案文獻及其文化價值」,『長白學刊』1996年 5期.

舒暢·王國棟,「民國時期吉林禁煙與地方執政——『盛京時報』視野下的考察」,『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2020年 3期.

孫棫蔚,「恭親王溥偉在大連」,『大連文史資料』第5輯, 1988.

宋培軍,「袁世凱手批清帝辭位詔書的發現及其對清末民初國體因革的認知意義」,『文史哲』2019年 4期, 77쪽.

刁書仁,「乾嘉時期東北民典旗地整理論略」,『社會科學輯刊』1991年 6期.

楊念群, 「清帝遜位與民國初年統治合法性的闕失——兼談清末民初改制言論中傳統因素的作用」,『近代史研究』, 2012年 5期.

葉志如 編,「乾隆朝回贖民典旗地史料」(上·下),『歷史檔案』1991年 2·3期.

榮恒山,「奉天維城學校」,『遼寧文史資料選輯』第10輯, 中華書局, 1958.

嚴昌洪 外,「論民國時期的民族政策」『蘭州大學學報 (社會科學版)』, 第40券 第1期, 2012.

王慶祥,「溥儀與九一八事變」,『社會科學戰線』 1996年 2期.

— ,「僞滿時期日僞的邊境政策」,『社會科學戰線』 2004年 2期.

王立群,「北洋時期京直地區旗地莊頭考述」,『北京社會科學』 2012年 2期.

— ,「北洋政府時期京直地區旗地管理人員考述」,『滿族研究』 2013年 1期.

王翠榮, 「20世紀20年代東北新聞界對日本新聞侵略的抵制——以『東三省民報』與『盛京時報』筆戰爲中心」,『江西社會科學』 2019年 11期.

王宇昕, 「日本殖民政策與"滿洲共同體"認同的制造——基於『盛京時報』的考察」, 『日本侵華南京大屠殺研究』 2019年 1期.

李勤璞,「《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的翻譯頒行(上)」,『滿語研究』 2014年 01期.

李麗, 「族群記憶與潛話語的意義——穆儒丐"九·一八"前後的創作」, 『新文學史料』 2019.

衣保中,「清末遼寧地區農業經濟的近代化」.『遼寧師範大學學報』 1988年 2期.

— ,「民國時期八項旗租地的丈放」,『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3年 2期.

— ,「試論清末東北民族資本主義的發展」,『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93年 3期.

— ,「清代八項旗租地的形成、破壞及丈放」,『史學集刊』 1993年 4期.

— ,「日本移民與僞滿洲國的殖民地農業」,『東北亞論壇』 1996年 4期.

— ,「論民國時期東北民族資本的三種形態」,『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97年 5期.

衣保中·廉曉梅, 「日本移民侵略與東北殖民地土地占有關系」, 『北方文物』 1997年 3期.

張雲橋·張占斌, 「東北土地制度的探討」, 『松遼學刊(社會科學版)』 1986年 2期.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644-1911」,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趙書, 「北京城區滿族生活瑣記」, 『北京文史資料』 第55輯, 北京出版社, 2001.

趙誌強, 「滿洲族稱源自部落名稱——基於「滿文原檔」的考察」, 『紀念鄭天挺先生誕辰120周年暨第五屆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會議』, 南開大學, 2019年9月.

豐傑, 「論『肅忠親王遺集』的辛亥革命敘事」, 『南京曉莊學院學報』 2014年 2期.

項小玲, 「善耆與『肅忠親王遺集』」, 『滿族研究』 1997年 1期.

高承龍, 「僞滿洲國民族政策研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郭曉悅, 「僞滿時期東北農村土地關系與階級關系的特征分析」,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範立君, 「近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860-1931),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潘先林, 「略論南京臨時政府處理民族問題的政策及設想.」 『中國藏學』, 2008年 04期.

王立群, 「民國時期河北旗地變革研究(1912-1934)」, 首都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9.

王宇, 「從滿漢關系看善耆在辛亥前後的政治活動」,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李國棟, 「民國時期的民族問題與民國政府的民族政策研究」, 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李在全, 「九一八事變後國民政府爭取溥儀考實」, 『社會科學輯刊』 2021年 2期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644-1911」,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田寶翠,「清末奉天旗民生計問題研究」, 遼寧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錢翠霞,「清代肅親王世系研究」, 黑龍江大學 博士學位論文, 2018.

丁健,「辛亥革命時袁世凱出山問題的成因及真相考述」,『北京檔案』 2019年 4期.

趙英蘭,「清代東北人口與群體社會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趙誌強,「滿洲族稱源自部落名稱——基於「滿文原檔」的考察」,『紀念鄭天挺先生誕辰120周年暨第五屆明清史國際學術討論會會議』, 南開大學, 2019年 9月.

趙雲田,「清朝的理藩院」,『北京觀察』, 2013年 第5期.

朱文亮,「清末皇族內爭與袁世凱複出」,『歷史研究』 2017年 5期.

中國第一歷史檔案館,「溥儀出宮後圖謀恢復優待條件史料」,『歷史檔案』 2000年 01期.

林士鉉,「《滿蒙漢合璧教科書》與清末蒙古教育改革初探」,『輔仁歷史學報』 第三十二期, 2014.

林志宏,「王道樂土 - 清遺民的情感抵制和參與"滿洲國"」,『新史學』第18卷第3期, 2007.

— ,「北伐期間地方社會的革命政治化」,『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第36期, 2011.

— ,〈地方分權與「自治」——滿洲國的建立及日本支配〉, 黃自進·潘光哲主編,『近代中日關係史新論』, 新北市：稻鄉出版社, 2017.

袁公瑜,「溥儀「捐款濟貧」行為與「還政於清」意念之連繫(1923~1931)」,『清雲學報』第三十卷 第二期, 中華民國99年 4月.

全俊豪,『清末民初國體問題之討論(1906-1916)』, 東海大學 碩士論文, 2018.

— ,「北伐期間地方社會的革命政治化」,『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第36期, 2011.

— ,「地方分權與「自治」——滿洲國的建立及日本支配」, 黃自進·潘光哲 主編,『近代中日關係史新論』, 新北市：稻鄉出版社, 2017.

楊紅,「滿州族の経済生活 ： 愛新覚羅王族の後裔たる村の事例研究から」,『名古

屋大學人文科學研究』Vol. 36, 2007.
會田勉 著, 陳仲信 譯, 「川島浪速與“滿蒙獨立運動”」, 『近代史資料』 1982年 2期

3) 일문

兼橋正人·安冨歩, 「1940年國勢調査にみる「滿洲國」の実相」, 『アジア経済』 52巻 2號, 2011.
槻木瑞生, 「滿洲教育史概略 : その土地に生きた人の視點から」, 『News letter』 No. 24, 2012.
広川佐保, 「滿州國」初期における土地政策の立案とその展開」, 『一橋論叢』 Vol. 132, Issue. 6, 2004.
浜口裕子, 「日露戦爭直後の中國人留學生 - 振武學校8期生東北出身者の動向を中心として - 」, 『政治 · 経済 · 法律研究』 23, 2020
寺田浩明, 「清代土地法秩序における慣行の構造」, 『東洋史研究』48巻 2號, 1989.
山本義三, 「舊滿洲におけろ鄕村統治の形態」, 『滿鐵調査月報』11, 1941.
阿部由美子, 「張勲復辟と滿蒙王公の反応」, 『滿族史研究』 第6號, 2007.
— , 「辛亥革命後の清室優待條件體制の成立と崩壞 : 20世紀前半の華北 · 滿洲地域における滿洲族研究への新たな視座」, 『News letter』, No. 26, 2014.
— , 「中華民國北京政府期の清室優待條件下における北京旗人社會の一側面 : 護軍都護副使、古物陳列所所長 · 治格の經歷をてがかりに」, 『東洋史研究』 77, 2019.
岸本美緒, 「土地を賣ること, 人を賣ること-「所有」をめぐる比較の試み」, 三浦徹·岸本美緒·關本照夫 編, 『比較史のアジア 所有·契約·市場·公正』, 東京: 東京大學出

版會，2004.

於逢春，「「滿洲國」における滿洲族教育についての一考察 ： 奉天維城學校の研究」，『教育學研究紀要』Vol. 46，2000.

張琳，「中國東北地域における滿洲族の社會 ： 新賓滿族自治県の事例から」，『金沢大學文化資源學研究』Vol. 12，2013.

滋賀秀三，「法源としての經義と禮·および慣習」，『清代中國の法と裁判』，東京: 創文社，1984.

江夏由樹，「土地利權をめぐる中國‧日本の官民關係 ー 舊奉天の皇産をめぐって‧ー」，『アジア經濟』38-1，1997.

— ，「中國東北部（滿洲）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との比較検討」，『近代東アジア土地調査事業研究ニューズレター』，Vol. 6，2015.

Abstract

Restoration efforts and frustration of the Manchus after the fall of Qing dynasty, 1911-1937

Jeong Seryeon
Histor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fall of the Qing dynasty, the Manchus, who were the ruling class, now faced the need to redefine their posi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Qing Dynasty, they have formed a clan association called "Eight Banners (八旗)" centered on them, functioning as the foundation of society. However, in the process of losing power due to the revolution, the ethnic alliance also cracked as Han Chinese Eight Banners (漢軍八旗) and some Mongolian Banners (蒙古八旗) had escaped. In addi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national concept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and the expression of Han Chinese nationalism, the Manchus were either excluded or recognized as sub-members of the Chinese nation centered on the Han people. Accordingly, the Manchus escaped from the political clan alliance for their revival and sought to transform themselves as republicans. In addition, the Manchus had to prove that they had their own ethnicity against the claim that they had overcome the anti-Manchuism (排滿主義) and were assimilated into the Han. This was more important because it was the basis for demanding similar levels of rights to other ethnic groups. Under the new state system, this can be divided into activities such as adaptation to the republican people, securing national independence, and pursuing independent regime establishment. This study analyzes what the purpose of these activities was and where the difference originated from, or what the practical problems existed in the process.

Even in the revolution situation where the national system (國體) changes, the Manchus promulgated the Last Qing Emperor's Imperial Edicts of Abdication (清帝遜位詔書) and changed the form of peaceful regime change, expressing their willingness to exist as an equal people under the legality of the transfer of power. The criterion was the Articles of Favorable Treatment (優待條件) obtained in exchange for peaceful local transformation. The revolution, which began with armed conflict, agreed that both the revolutionary forces and the Qing dynasty wanted to avoid civil war and to preserve China's strong regions, and after various controversies, agreed to the abdication of the national system (國體)

and succeeded in peaceful transformation. Now, the Manchus have sought their own survival plans within the system based on the Articles of Favorable Treatment (優待條件). The Qing Royal Clan (清皇室), under the name of 'Little Court (小朝廷)', wanted to exist in the Republic of China and to play a certain role, and the Manchus also actively transformed into a citizen to lead a life. The warlord government tried to follow the Articles of Favorable Treatment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the Manchus from leaving, but intentionally excluded or delayed the Manchu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response, the Manchus formed various organizations and continued to secure independent seats based on the Manchus or Three Eastern Province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some cases, if necessary, they tried to secure common interests by combining with the Han and Mongolian peoples by utilizing the existing ethnic alliance, the Banner system. However, after Feng Yuxiang's (馮玉祥) rise to power, the preferential conditions were revised and the Kuomintang (國民黨) government showed little willingness to recover. This was regarded as a failure to the conditions of national transformation and a betrayal of mutual trust.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ruling forces on the harmony of the five tribes, which was advocated as the banner of the revolution, has also changed. In the case of the Beijing government, efforts were attempted to comply with the Five Nationalities at least as a justification, but the revolutionary forces were completely out of the Five Nationalities Republicanism after Zhang Xun's (張勳)

failed attempt to achieve the restoration (復辟). However, either way, the Manchus had been ignored or denied their national identity, claiming that they were assimilated into the Han. Accordingly, Manchurian organizations worked to obtain the same treatment as the Mongolians and the Tibetans(藏族) based on the harmony of the five tribes. However, in light of the modern national concept of blood ties and common regional foundations, or group residences as one of the main criter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an Chinese did not recognize the same level of suffrage and uniqueness as the Manchurian people recognized in Mongolians and the Tibetans. This is in line with the fact that even though the Huizu (回族), another member of the Five Nationalities Republicanism (五族共和), has secured a collective residence, it was not recognized for its strong character as a religious community. Accordingly, the Manchus sought to be recognized for their uniqueness by solidifying with the Hui clan if necessary. At the same time, the Manchus attempted to prove the need in the state and secure a stable means of living by exercising its characteristics as a group of armed forces since the Qing dynasty within the new country's military or police organizations. In addition, through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late Qing dynasty, the Manchus intended to create a foundation for self-reliance by honing new studies and production technologies. Although they often changed their names to Han Chinese surnames to avoid realistic discrimination, efforts to maintain the Manchu lineage through the compilation of family

genealogy continued.

Meanwhile,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there was also a movement outside the jurisdiction to establish an independent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the revolution, the Royal Clan Party (宗社黨, Zongshe dang) launch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ooperation with Japan and Mongolia, claiming that "Manchuria is the state of the Manchus (滿洲是滿洲人的滿洲)". The local government of Three Eastern Provinces (東三省) belonged to the Kuomintang government, but it was relatively independent when compared to other provinces in the jurisdiction. This served as a reason for the relatively large number of local Manchus to enter local power. On the one hand, they were also continuously establish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Japan, which led to the rapid departure of Three Eastern Provinces (東三省) and the joining of Manchoukuo (滿洲國)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九·一八事變). In addition, Puyi (溥儀), who moved to Tianjin after the abolition of Little Court (小朝廷) in the Forbidden City (紫禁城), also joined Manchuria in anger at the continued disregard and abandonment of the Kuomintang government for the demand for preferential conditions and recovery, and the center and justification of the new country were established.

However, the Three Eastern Provinces has long been a place where Manchus, Han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competed for each other's cause and interests und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nfrontation centered on China and Japan. During the Qing dynasty, the Manchus, who could not control the land as absent

landowners, gradually replaced the Han, Japanese, and Koreans. The Manchus maintained their position around the indigenous forces, but the instability was increasing as the scope of Japanese aggression expanded. Accordingly, it was expected that the Manchus would be able to newly establish itself as members of the Five Ethnics under One Union (五族協和) that realized royalism in a new country built in cooperation with Japan. However, the uniqu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nchurian people were concealed in official figures as the Manchurian and Han ethnic groups were mixed under the name of 'Manxi (滿係)'. In addition, the Manchus, who were pushed out of the continuing competition between ethnic groups, lost their basis of life and gradually lost their presence.

However, their revival efforts were not achieve as expected because first, the Manchus were unable to secure their own residence in the Eight Banner Garrisons (八旗駐防) since the Qing dynasty entered the Shanhaiguan (山海關). Second, the small adjustment, which should be the center of the nation, was separated from the general Manchus. Third, the efforts to secure a new base were repeatedly thwarted after competition with the surrounding people.

In this paper, the capabilities and activities of the Manchus are broadly examined after the collapse of the Qing dynasty, which is briefly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revival efforts of the Manchus. Through this, we confirm that the Manchurian people continued to strive and establish themselves as an independent nation, not only as a tribe within China after the revolution. We

reveal that the revival efforts did not achieve results because they faced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regional and political centers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state, not the individual Manchu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e active activities of the Manchurian people and the potential capabilities that enabled them, have been the reasons why the ruling forces in China continue to check and exclude them.

This study does not sufficiently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objective conditions in which the Chinese authorities strongly control access to the data of minorities today, and the data left by the Manchus themselves is insufficient. Still,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highlights the Manchurian competence and activism after the collapse of the Qing dynasty, which is briefly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into three categories: the Royal Clan (皇室), Qiren (旗人), Minren (民人), and the Royal Clan Party (宗社黨, Zongshe dang). Through this, we confirm the Manchus' efforts to establish themselves as an independent nation after the revolution, especially after the destruction of preferential conditions. The reconstruction efforts did not achieve the desired results for several reasons mentioned above. However, the active activities and potential capabilities of the Manchurian people are the reasons why the Beijing government and the Kuomintang government continue to check the Manchurian people and deny their uniqueness.

keywords : Manchus, Eight Banners (八旗), Last Qing Emperor's Imperial Edicts of Abdication (清帝遜位詔書), Articles of Favorable Treatment (優待條件), Manchukuo
Student Number : 2014-31192